



#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 프로세스 확립 방안

OSHRI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 프로세스 확립 방안

김명중·박선영·최돈승·정재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요약문

- 연구기간 2022년 01월 ~ 2022년 11월
- 핵심 단어 산재예방사업, 사업평가, 평가프로세스, 평가지표, 평가방법
- 연구과제명 산재예방사업 평가 프로세스 확립 방안

## 1. 연구배경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16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8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년),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21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22년) 등 잇달아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또한 2017년에는 '안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와 안전보건 공단은 적극적 산재예방을 위해 산재예방사업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음
- 사고사망만인을 절반 줄이기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위해 국회와 기재부 등에서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분석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의 결과 (중·장기적 성과와 영향)보다는 주로 집행현황(단기적 산출)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산재예방사업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외 선행 연구나 (질적 연구에 가까운) 연구자의 직·간접적 경험 혹은 통찰에 의존하고 있고, 평가시기·주체에 따라 상이한 기준들이 적용되어 일관성을

- 담보하지 못하고, 평가 결과의 시점 간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산재예방사업의 목적 및 질적 특성(기술지원, 재정지원, 안전문화 기반조성, 연구개발 등)에 따라 적합한 평가 방법론을 세분화하고, 사업평가 과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구축된 산재예방사업 평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산재예방사업 평가제도의 추진체계, 수행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제도화방안 모색 등 전반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산재예방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연구내용

### 1) 공공부문 사업평가 선행연구 및 관련 평가체계 검토

- 사업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업평가의 규격화·체계화를 위한 이론 검토
  - 심층사업평가의 개념, 목적, 성격, 유형, 절차, 방법론 등 정리
- 상위·유관기관 사업평가체계 및 유사선행연구 벤치마킹
  - 정부 경영평가(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지정기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안부) 등 유관 평가체계와 일관성 확보
  - 국가건강검진사업(국회예정처, 2021), 재난안전사업(행정연, 2020), 산재 예방사업 심층평가 I (OSHRI, 2012) 등 선행연구 체계 및 특성 분석

## 2)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제안

-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대분류 평가지표 구성
  - 계획-집행-성과-영향의 4단계 대분류 및 10대 구성요소 설정
- 사업특성에 따른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대입 및 최종 평가지표 도출
  - 사업기능(5), 공급서비스(2), 성과목표(7), 대상(3), 최종공급자(2)로 분류
  - 단계별 세부평가기준(사업 기능, 공급서비스 유형, 성과목표 기준, 사업 대상, 최종공급자를 기준으로 사업 특성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 산출(부록 참조)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전체 구성(안)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을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전체 구성(안)(계속)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지원절차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장비, 인력, 교육, 제도정착 등)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3) 산재예방사업 평가제도 운영방안 마련

□ 산재예방사업 평가의 설계 및 과정\* 구성

□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방안 제시

- 10개 기준\*\*의 결과활용 체크리스트 구성

- 사업평가보고서 (공통)목차 구성(안) 제안

□ 사업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규정(안) 제안

- 평가목적, 정의, 원칙,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관계부서 협조사항,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포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평가지침(안)   |  |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사업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평가"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하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br>2. "사업평가"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제3조 (사업평가의 원칙) ①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br>② 사업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br>③ 사업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br>④ 사업평가는 공단 사업의 성과 등의 품질 및 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
| 제4조 (사업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①○○○○○○○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사업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br>②○○○○○○○에서는 사업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사업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과정 : [준비] 후보선정→예비평가→내용정리→계획수립, [실행] 평가설계→자료분석→문제파악→결과작성→정책제언
- 10개 기준 : 적실성, 신뢰성, 타당성, 적시성, 실현 가능성과 의사소통, 평가방법, 이용자저항, 악용가능성, 개인적 요인

#### □ 제도화 운영방안 및 연구원 역할에 관한 제언

- ①규정 제·정비→②예산확보→③위원회구성→④평가수행→⑤결과환류
- 연구원: ④에서 평가수행, 인센티브 설계, 사례집발간, 전문 인력 확보, 담당자 교육, ⑤에서 활용도제고·지침개발·방법론고도화 연구수행 필요

### 3. 연구 활용방안

- 표준화 및 차별화된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도입으로 사업평가의 체계성과 일관성 및 결과의 비교 가능성 확보
  - 사업평가의 설계·과정 구성, 결과 활용, 제도화 운영방안 적용
- 사업평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제도화 운영 등 사업평가 프로세스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의 규격화·체계화로 사업성 개선 및 新사업 발굴 정책지원

###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연구위원 김명중
  - ☎ 052) 703. 0826
  - E-mail: junkim@kosha.or.kr



# 목 차

|  |           |
|--|-----------|
| <b>I. 서론</b> .....                     | <b>1</b>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3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6         |
| 1) 연구내용 및 범위 .....                     | 7         |
| 2) 연구방법 .....                          | 8         |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 9         |
| 1) 산재예방사업 평가프로세스 및 방법론의 비판적 검토 .....   | 9         |
| 2) 사업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프로세스 및 방법론 도출 ..... | 10        |
| 3) 사업평가의 제도화 방안 및 정책적 제언 .....         | 10        |
| <b>II.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이론적 논의</b> .....     | <b>11</b> |
| 1.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개념과 의미 .....             | 13        |
| 1)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개념 .....                 | 13        |
| 2)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의미 .....                 | 16        |
| 2. 사업평가의 목적과 성격 .....                  | 17        |
| 1) 사업평가의 목적 .....                      | 17        |
| 2) 사업평가의 성격 .....                      | 18        |
| 3.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유형 및 절차 .....            | 18        |

# 목 차

|                                   |           |
|-----------------------------------|-----------|
| 1) 사업평가의 유형 .....                 | 18        |
| 2) 사업평가의 절차 .....                 | 21        |
| 3) 소결 .....                       | 24        |
| 4. 공공사업의 평가 설계 .....              | 25        |
| 1) 평가 설계의 의의 .....                | 25        |
| 2) 평가 전략과 설계 유형 .....             | 25        |
| 5. 사업평가 방법론 검토 .....              | 27        |
| 1)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비교 .....       | 27        |
| 2) 정량적 분석방법의 종류 .....             | 28        |
| 3) 정성적 분석방법의 종류 .....             | 33        |
| <b>Ⅲ. 산재예방사업 관련 평가체계 검토 .....</b> | <b>37</b> |
| 1. 정부업무평가 체계 .....                | 39        |
|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 41        |
| 2) 지방자치단체 평가 .....                | 48        |
| 3) 공공기관 평가 .....                  | 49        |
| 2.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 51        |
|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 51        |
| 2) 조사의 주요내용 .....                 | 54        |

|   |           |
|---|-----------|
|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                  | 56        |
|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요 .....                    | 56        |
| 2) 평가 대상의 유형 .....                        | 56        |
| 3) 평가지표의 기본체계 .....                       | 57        |
|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                  | 62        |
| 1)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개요 .....                    | 62        |
| 2) 재난안전사업 평가방법 .....                      | 63        |
| 3)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구성 .....                   | 63        |
| 4)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선연구 수행 결과(행정연, 2020) .....  | 64        |
| 5.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                      | 68        |
| 1) 국가건강검진사업 개요 .....                      | 68        |
| 2) 건강검진사업 평가 개선연구 수행결과(국회예정처, 2021) ..... | 68        |
| 6. 산재예방사업 평가관련 연구 .....                   | 70        |
| 1)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연구 .....                   | 70        |
| 2) 기타 안전보건공단 평가연구보고서 .....                | 74        |
| 3) 요약 및 시사점 .....                         | 77        |
| <b>IV. 산재예방사업 현황분석 .....</b>              | <b>79</b> |
| 1. 산재예방사업 현황 .....                        | 81        |

# 목 차

|                          |            |
|--------------------------|------------|
| 1) 2022년 산재예방사업 현황       | 81         |
| 2) 산재예방사업 추진체계           | 89         |
| 2. 산재예방사업 구성 분석          | 91         |
| 1)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 91         |
| 2)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          | 102        |
| 3) 안전문화 기반조성 사업          | 132        |
| 4)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 143        |
| 3. 산재예방사업 투입·성과 분석       | 147        |
| 1) 자료 분석의 전제             | 147        |
| 2) 산재예방사업 기능별 사업 분포      | 148        |
| 3) 산재예방사업 투입·산출 분석       | 150        |
| <b>V.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구성</b> | <b>157</b> |
| 1. 산재예방사업 대분류 평가기준 도출    | 160        |
| 1) 선행연구 검토결과 종합          | 160        |
| 2) 대분류 평가기준 도출           | 163        |
| 2. 사업 특성 분류              | 164        |
| 1) 사업 기능별 분류             | 165        |
| 2) 공급 서비스 유형별 분류         | 166        |

|                                   |            |
|-----------------------------------|------------|
| 3) 사업의 성과목표 특성별 분류 .....          | 166        |
| 4) 사업 대상별 분류 .....                | 167        |
| 5) 최종 공급자별 분류 .....               | 167        |
| 6) 분류결과에 따른 사업 분포 .....           | 167        |
| 3. 사업별 세부 평가지표 구성 .....           | 175        |
| 1) 대분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 .....     | 175        |
| 2)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구성 .....           | 177        |
| 3) 개별사업 특성별 평가지표 구성기준 .....       | 179        |
| 4. 산재예방사업 평가 우선순위(필요성) 진단 .....   | 181        |
| 1) 평가 우선순위(필요성)의 판단기준(안) .....    | 181        |
| 2) 개별사업 평가 우선순위(필요성) 검토(안) .....  | 182        |
| <b>VI. 산재예방사업 평가제도 운영방안 .....</b> | <b>185</b> |
| 1. 사업평가 설계 .....                  | 187        |
| 1) 평가 설계의 요소 .....                | 187        |
| 2) 평가의 전략과 평가 설계 유형 .....         | 187        |
| 3) 성과관리제도와 사업평가 .....             | 189        |
| 2. 사업평가 과정 .....                  | 190        |
| 1) 사업평가 준비단계 .....                | 190        |

# 목 차

|                                   |            |
|-----------------------------------|------------|
| 3) 사업특성별 평가제도 적용구분 .....          | 191        |
| 3. 평가결과의 활용 .....                 | 194        |
| 1) 평가결과 활용의 정의 .....              | 194        |
| 2)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요인 .....          | 195        |
| 3) 산재예방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성 강화 방안 .....   | 196        |
| 4. 제도화를 위한 평가규정 제안(안) .....       | 198        |
| 1) 안전보건공단 사업평가규정 현황 .....         | 198        |
| 2) 유관기관 평가규정 사례 .....             | 207        |
| 3) 산재예방사업 평가지침(안) 제안 .....        | 218        |
| 5. 소결 .....                       | 220        |
| <b>VII. 결론 및 제언 .....</b>         | <b>223</b> |
| 1. 성공적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평가제도 확립방안 ..... | 225        |
| 1)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유형 다양화 .....      | 225        |
| 2) 사업평가도와 성과관리의 상보적 연계성 강화 .....  | 226        |
| 2. 사업평가의 제도화 및 운영에 관한 제언 .....    | 227        |
| 1) 평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정비 .....         | 227        |
| 2) 평가위원회의 구성: 사업별 전문가 확보 .....    | 227        |
| 3) 사업평가 예산 확보 .....               | 228        |

|                                |            |
|--------------------------------|------------|
| 4) 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       | 228        |
| 5)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마련 .....  | 229        |
|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 .....         | 229        |
| 1)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연구 수행 .....    | 229        |
| 2) 사업평가 방법의 고도화 연구 수행 .....    | 230        |
| 3) 사업평가관리시스템(PAMS) 구축·운영 ..... | 230        |
| <b>참고문헌 .....</b>              | <b>233</b> |
| <b>ABSTRACT .....</b>          | <b>237</b> |
| <b>부 록 .....</b>               | <b>241</b> |

# 표 목차

|  |    |
|--|----|
| 〈표 Ⅱ-1〉 사업평가와 유사개념의 비교 .....               | 15 |
| 〈표 Ⅱ-2〉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교 .....               | 20 |
| 〈표 Ⅱ-3〉 사업단계별 평가유형의 구분 .....               | 21 |
| 〈표 Ⅱ-4〉 평가전략과 평가설계유형 .....                 | 26 |
| 〈표 Ⅱ-5〉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비교 .....           | 27 |
| 〈표 Ⅱ-6〉 비용편익분석의 5단계 .....                  | 28 |
| 〈표 Ⅱ-7〉 공공부문 BSC의 주안점 .....                | 36 |
| 〈표 Ⅲ-1〉 특정평가 평가부문 .....                    | 42 |
| 〈표 Ⅲ-2〉 특정평가 주요 변경사항 .....                 | 43 |
| 〈표 Ⅲ-3〉 특정평가의 주요정책 부문(65점) 평가항목 .....      | 44 |
| 〈표 Ⅲ-4〉 특정평가의 규제혁신 부문(10점) 평가항목 .....      | 44 |
| 〈표 Ⅲ-5〉 특정평가의 정부혁신 부문(10점) 평가항목 .....      | 45 |
| 〈표 Ⅲ-6〉 특정평가의 정책소통 부문(15점) 평가항목 .....      | 46 |
| 〈표 Ⅲ-7〉 특정평가의 적극행정 부문 평가항목 .....           | 46 |
| 〈표 Ⅲ-8〉 자체평가 평가항목 .....                    | 47 |
| 〈표 Ⅲ-9〉 4대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 .....               | 50 |
| 〈표 Ⅲ-10〉 국내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 및 방법 .....     | 54 |
| 〈표 Ⅲ-11〉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구분(공기업) .....         | 56 |
| 〈표 Ⅲ-12〉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구분(준정부기관) .....       | 57 |
| 〈표 Ⅲ-13〉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 .....              | 58 |
| 〈표 Ⅲ-1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   | 60 |
| 〈표 Ⅲ-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평가 총괄요약표 .....       | 61 |
| 〈표 Ⅲ-16〉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의 구성 및 세부 평가 요소 ..... | 65 |

|   |     |
|---|-----|
| 〈표 Ⅲ-17〉 구성적 평가의 요소 .....                   | 65  |
| 〈표 Ⅲ-18〉 결과지향적 평가의 요소 .....                 | 66  |
| 〈표 Ⅲ-19〉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화 .....          | 67  |
| 〈표 Ⅲ-20〉 국가건강검진사업 분석대상 및 주요 내용 .....        | 69  |
| 〈표 Ⅲ-21〉 유럽위원회(2005)의 사업평가 척도기준 .....       | 70  |
| 〈표 Ⅲ-22〉 산재예방사업 평가단계별 평가관점 .....            | 72  |
| 〈표 Ⅲ-23〉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 | 73  |
| 〈표 Ⅲ-24〉 개별 산재예방사업 평가관련 선행연구 목록 .....       | 75  |
| 〈표 Ⅲ-25〉 산재예방사업별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공단 수행) .....  | 76  |
| 〈표 Ⅳ-1〉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 구조(1/3) .....         | 86  |
| 〈표 Ⅳ-2〉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 구조(2/3) .....         | 87  |
| 〈표 Ⅳ-3〉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 구조(3/3) .....         | 88  |
| 〈표 Ⅳ-4〉 2022년도 안전보건공단 사업추진 체계 .....         | 90  |
| 〈표 Ⅳ-5〉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개요 .....             | 92  |
| 〈표 Ⅳ-6〉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사업 개요 .....               | 95  |
| 〈표 Ⅳ-7〉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 개요 .....             | 96  |
| 〈표 Ⅳ-8〉 2022년 기준 분야별 민간재해예방기관 수 .....       | 110 |
| 〈표 Ⅳ-9〉 사업특성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분포 .....          | 148 |
| 〈표 Ⅳ-10〉 업종·대상·지원기준에 따른 사업분포 .....          | 149 |
| 〈표 Ⅳ-11〉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투입 예산 .....           | 150 |
| 〈표 Ⅳ-12〉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투입 예산 .....           | 151 |
| 〈표 Ⅳ-13〉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출(물량 달성도) .....      | 152 |
| 〈표 Ⅳ-14〉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별 투입(인력과 예산) .....      | 154 |

# 표 목차

|  |     |
|--|-----|
| 〈표 IV-15〉 사업목적 세분류별 투입(인력과 예산) .....       | 154 |
| 〈표 IV-16〉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별 산출(물량 달성도) .....    | 155 |
| 〈표 IV-17〉 사업목적 세분류별 산출(물량 달성도) .....       | 155 |
| 〈표 V-1〉 유럽위원회의(2005) 사업평가 기준 .....         | 160 |
| 〈표 V-2〉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의 평가지표 .....        | 161 |
| 〈표 V-3〉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5)의 평가단계 .....        | 162 |
| 〈표 V-4〉 행정연구원(2020)의 평가단계 .....            | 162 |
| 〈표 V-5〉 본 연구의 대분류 평가기준과 구성요소 .....         | 163 |
| 〈표 V-6〉 사업분류 접근방식 .....                    | 164 |
| 〈표 V-7〉 사업기능별 사업목록 .....                   | 168 |
| 〈표 V-8〉 공급 서비스별 사업목록 .....                 | 170 |
| 〈표 V-9〉 성과목표가 '기타'인 사업목록 .....             | 171 |
| 〈표 V-10〉 성과목표가 '재해감소'인 사업목록 .....          | 172 |
| 〈표 V-11〉 성과목표 '재해감소'와 '기타'를 제외한 사업목록 ..... | 173 |
| 〈표 V-12〉 사업대상 '사업장(근로자)' 제외 사업장 목록 .....   | 174 |
| 〈표 V-13〉 사업 최종수행자 '민간' 사업장 목록 .....        | 174 |
| 〈표 V-14〉 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 176 |
| 〈표 V-15〉 집행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 176 |
| 〈표 V-16〉 성과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 177 |
| 〈표 V-17〉 영향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 177 |
| 〈표 V-18〉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전체 구성(안) .....        | 178 |
| 〈표 V-19〉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            | 179 |
| 〈표 V-20〉 사업대상 분류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         | 180 |

|  |     |
|--|-----|
| 〈표 V-21〉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평가가능성 검토결과 .....        | 182 |
| 〈표 V-22〉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평가가능성 검토결과 ..... | 182 |
| 〈표 V-23〉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평가가능성 검토결과 .....        | 183 |
| 〈표 VI-1〉 평가 전략과 평가 설계 유형 .....               | 188 |
| 〈표 VI-2〉 사업특성별 평가유형의 구분 .....                | 193 |
| 〈표 VI-3〉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요인 .....               | 195 |
| 〈표 VI-4〉 평가결과보고서의 목차와 구성 .....               | 196 |
| 〈표 VI-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평가규칙 .....             | 199 |
| 〈표 VI-6〉 기재부 주관 경영평가 지표(안전보건공단) .....        | 206 |
| 〈표 VI-7〉 기재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 207 |
| 〈표 VI-8〉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 규정 .....               | 210 |
| 〈표 VI-9〉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 .....       | 215 |
| 〈표 VI-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평가지침(안) .....    | 218 |

# 그림목차

|                               |     |
|-------------------------------|-----|
|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 6   |
| [그림 II-1] DID 분석모형의 개념        | 32  |
| [그림 II-2] FGI의 진행절차           | 33  |
| [그림 II-3] AHP 분석의 진행절차        | 34  |
| [그림 II-4] 공공부문 BSC의 체계        | 36  |
| [그림 III-1] 정부업무평가 체계          | 40  |
| [그림 III-2] 정부업무평가(중앙행정기관) 체계도 | 41  |
| [그림 III-3] 정부업무평가(지방자치단체) 체계도 | 48  |
| [그림 III-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체계  | 48  |
| [그림 III-5]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체계도   | 49  |
| [그림 III-6] 재난안전사업평가 부처 예산별 분포 | 62  |
| [그림 III-7] 재난안전사업 평가방법        | 63  |
| [그림 III-8] 사업수행 로직에 관한 도식     | 71  |
| [그림 V-1] 산재예방사업의 가치사슬 구조      | 165 |
| [그림 VI-1] 성과평가체계              | 189 |
| [그림 VI-2] 사업평가의 준비단계          | 190 |
| [그림 VI-3] 사업평가의 실행단계          | 191 |
| [그림 VII-1] 성과관리 시스템의 프로세스     | 230 |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16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8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년),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21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22년) 등 잇달아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안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적극적 산재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사업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관련 인력 및 예산도 크게 확대하였다.<sup>1)</sup>

2017년 정부 주도의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에는 여러 차례 「산재 예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호 대상과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등 관행적인 문제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방식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확대가 높은 산재사고사망 수준의 원인이라 판단하여 2017년 범정부차원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업 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당시 발표된 안전보건정책의 주 목표는 사망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크게 4가지 전략(①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②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③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을

1) 1987년 공단 설립 당시 368명, 96억원 수준이었던 인력과 예산은 2022년 2,219명, 1조 2,940억원 수준으로 각각 약 6배, 13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이후 예산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6,450억 수준이었던 안전보건공단 예산은 2021년 1조 1,083억원 수준으로 약 72% 증가하였다.

기반으로 세부 정책들을 수립하여 수행해 왔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정책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렇듯 정부와 공단은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며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산재예방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사고사망만인을 절반 줄이기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2)</sup> 다시 말하면,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투입자원을 대폭 늘렸음에도 그 성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명확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산재예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존 전략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평가 자료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평가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의사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그간 진행된 사업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평가의 목적이 다소 불명확하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비하여 많은 정책보고서가 사업평가보다는 성과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산재예방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없어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류(feedback)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론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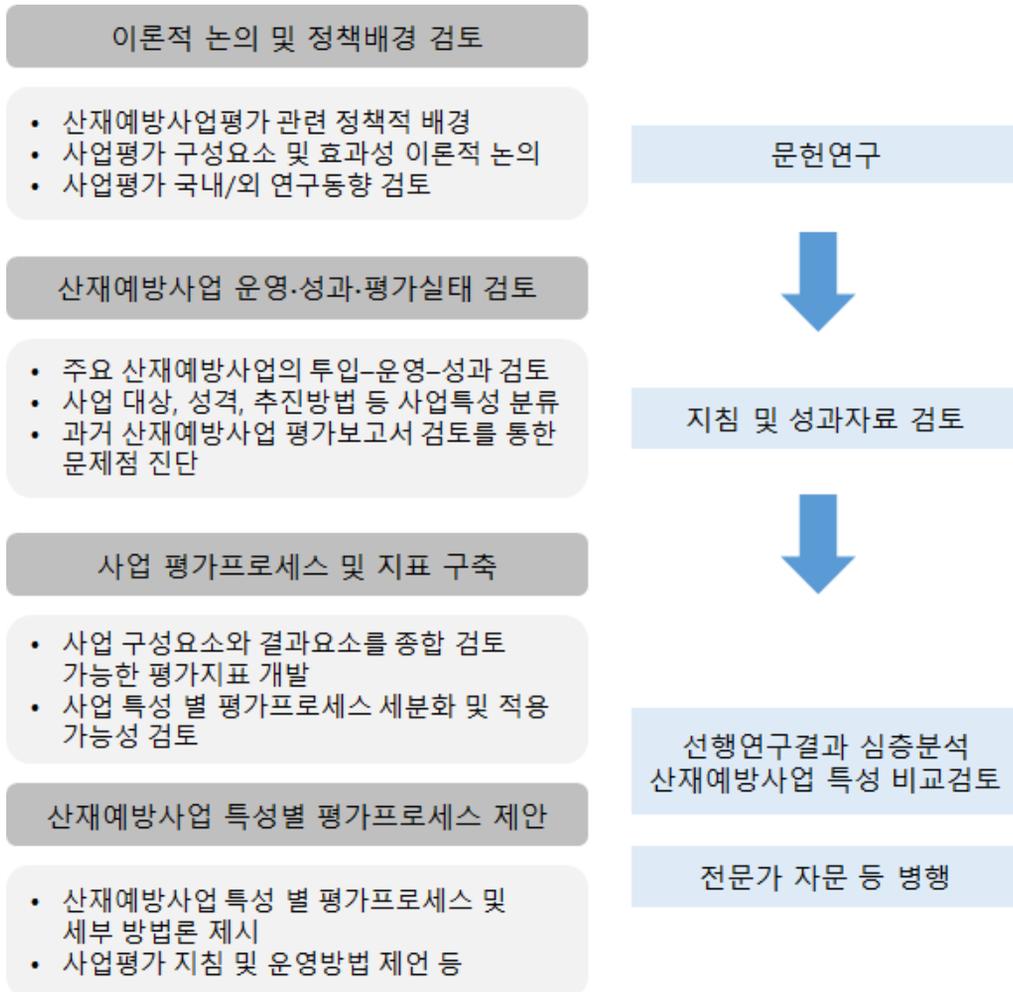
2)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 ‘사고사망만인을 절반 줄이기’ 정책의 목표는 5년 이내 사고사망만인율을 현재(2018년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으나, 2018년 산재사고사망만인율은 0.51‰, 2021년에는 0.43‰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산재예방사업의 변화 및 정책적 효과를 통해 산업현장이 보다 더 안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술한 사유들로 인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분석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평가는 주로 정책의 결과(중·장기적 성과와 영향)보다는 주로 집행현황(단기적 산출)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산재예방사업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외 선행 연구나 (질적 연구에 가까운) 연구자의 직·간접적 경험 혹은 통찰에 의존하고 있고, 평가 시기 및 주체에 따라 상이한 기준들이 적용되어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평가결과의 시점 간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더불어 관련 인력과 예산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 연구 프로세스를 마련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해 다양한 과학적 평가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기존 산재예방사업 평가 연구에 적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의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적(constructive) 평가와 결과적(conclusive) 평가 단위로 구분하고, 결과를 다시 산출(outputs)과 성과(outcomes), 그리고 영향(impacts) 등으로 세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산재예방사업의 목적 및 질적 특성(기술지원, 재정지원, 안전문화 기반조성, 연구개발 등)에 따라 적합한 평가 방법론을 세분화하고, 사업평가 과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축된 산재예방사업 평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산재예방사업 평가 제도의 추진체계, 수행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제도화방안 모색 등 전반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산재예방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향후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표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해 다양한 과학적 평가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기존 산재예방사업 평가 연구에 적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한 ①이론적 논의 및 정책배경 검토, ②산재예방사업 운영·성과·평가실태 검토, ③사업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개발, ④평가의 계획, 수행, 적용 및 환류 계획을 포함하는 평가프로세스 제안 과정을 수행한다.

## 1) 연구내용 및 범위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여러 정책분야의 정책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정책 효과의 개념, 평가모형, 효과성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업평가 관련 연구의 비교검토 및 최근 동향 정리를 위해 ①정부 및 사업평가 전문수행기관에서 발간하는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 ②국내·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사업)평가보고서의 사업특성별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방법론 비교검토, ③정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논문의 이론 및 실증연구결과 정리를 진행하고, 정책(사업)의 구체적 효과측정을 위한 정량·정성적 분석방법론 적용을 위해 ④사업 구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장·단기 및 직·간접 효과성, 규모의 적정성과 경제성(효율성) 등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사회과학분야 방법론 검토를 수행한다.

둘째, 산재예방사업의 현황 및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산재예방사업평가가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사업의 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행 산재예방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평가제도 설계를 위한 쟁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검토 등 ①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실태 분석(평가목표, 평가운영 및 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방향을 설정하며, ②증장기계획 및 세부 사업별 추진지침 검토를 통해 사업의 대상과 성격 및 추진방법 등 사업구조의 특성

분류, ③주요 산재예방사업의 투입(예산, 인력 등), 과정(사업수행 방식, 연차별 개선 등) 및 성과(목표물량 달성 등) 검토 등 산재예방사업의 구성적 특성과 투입(input), 과정(process) 및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산재예방사업의 구성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를 구축하고, 특히 산재예방사업의 목적과 특성(기술지원, 재정지원, 안전문화 기반조성, 연구개발 등)에 따른 평가 방법론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정책평가 지침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업의 구성평가 요소로는 ①사업목표의 명확성과 내용의 연계성, ②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과 관리 효율성, ③사업의 목표와 구성 간 일관성, ④사업 관계자(수행자, 수혜자, 주요 이해관계자 등) 유인 일치성 등이 포함되며, 사업의 결과평가 요소로는 ①재해율의 감소나 사업장의 고용 및 생산성 증대 등 직·간접 효과, ②사업 수행에 의한 산업·지역 간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효과, ③사업 관계자의 안전 인식 제고 효과, ④사업추진 체계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넷째,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제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목표, 평가대상, 평가추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제안한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개념적 범위 및 평가목적, 평가 시 고려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과학 분야(정책학·행정학·경제학 등) 이론 및 계량분석모형을 검토하고 사업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공단을 포함한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평가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의 현황분석

및 특성분류를 위해 산재예방사업추진지침 및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 등 주요 산재 DB(database)를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평가 프로세스의 타당성 및 개선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최근 정책사업의 평가 기조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정책의 궁극적인 효과를 달성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재예방사업 평가는 정책의 결과(중·장기적 성과와 영향)보다는 주로 집행현황(단기적 산출)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재예방사업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예방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의 발굴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 효율성 위주 평가제도를 넘어 사업 전반의 효과성 검증 관점에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산재예방사업 평가프로세스 및 방법론의 비판적 검토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사업이 발생시킨 성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많은 보고 서들은 성과측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간목표의 부재, 평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진의 선택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재예방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함께 활용한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검토하여 산재예방사업의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2) 사업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프로세스 및 방법론 도출

기존의 선행연구 및 공단수행 성과평가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도출한 사업 평가 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평가지표와 방법론, 그리고 평가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때, 사업별로 목표, 성과 및 수행 상 특성이 다를 것이므로 주요 사업의 특성별로 바람직한 평가지표와 프로세스, 그리고 적용 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적당하고 효과적인 사업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3) 사업평가의 제도화 방안 및 정책적 제언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사업별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업평가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평가 제도의 바람직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 정책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근거기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재예방 사업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심층적인 평가프로세스를 설계하여 현행 단위사업 심층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평가의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II.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이론적 논의





## Ⅱ.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이론적 논의

### 1.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개념과 의미

#### 1)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개념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성과관리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심사 분석 - 정책 평가(기관평가) - 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이광희·윤수재, 2012). 성과관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시행하고 산출물을 평가하여 목표한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 시스템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단어의 조합을 우선 살펴보면 ‘성과’와 ‘관리’가 개념적으로 합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리에 성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성과측정, 직무성과계약, 성과급 등과 같은 제도들을 성과관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과관리를 폭넓게 정의할 경우 평가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수준에서의 성과관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과관리에서는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과평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성과감독(performance monitoring)과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가 있다. ‘감독’이란 사전에 설정한 목표들에 비해 얼마나 달성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보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과 감독’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와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산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과에 대한 감독(monitoring)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투입과 산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평가’는 단순히 모니터링으로부터 수집된 결과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의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노화준, 2015). 따라서 사업평가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사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그 성공요인(혹은 실패요인)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 평가는 어떤 사업의 가치(worthwhileness)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Suchman, 1967),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성과를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더 광범위한 범주의 정보를 검토하여야 하며, 투입과 산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만, 사업평가는 성과감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사업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가 있다. 사업평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Wholey, 1998; Perrin, 1999).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관점도 있다. 두 개념을 구분하는 관점에서는 사업을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보고 사업평가와 정책평가가 서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정길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사업을 정책의 하위수단으로 보고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정책평가는 여러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달성하려는 보다 상위의 목표가 있다고 보는 한편, 사업은 정책의 하위수준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평가의 유형이나 절차와 같은 논의에서는 사업평가와 정책평가가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을 차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의 수준을 결정하여 평가의 목적과 정책적 활용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표 II-1〉 사업평가와 유사개념의 비교

| 성과감독   | 사업평가  | 정책평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li> <li>산출 및 결과물을 확인하고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 점검</li> <li>관리자들에게 조기경보를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li> <li>투입과 산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li> <li>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성 심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li> <li>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평가를 실시</li> <li>의사결정체계에 대한 환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li> </ul>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치적 고려, 사업의 복잡성, 공공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국가는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그 시급성 및 중요성 등에 따라 복잡한 목표와 성과 기준이 설정된다. 더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도 포함하여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재무적 성과를 가장 우선하는 민간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할 때, 목표가 단순하고 명확한 성과의 측정수단이 존재한다면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사업들은 대부분 복잡한 목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보고서의 분량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설득할 것인지에 할애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해 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적용되는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2)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의미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사업<sup>1)</sup>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을 포함하므로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예컨대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①공공부문이 수행하는 활동들은 바람직한지, ②올바른 대상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③공공부문의 개입 정도는 적절한 수준인지, ④해당 사업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사업들을 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대변한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사업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의 결과를 금전적인 가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성과에 대한 측정이 용이한 반면,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는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복잡하고 활동의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시민 모두의 이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사업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해당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Scriven, 1967; Weiss, 1998; Fitzpatrick et al., 2010), 종합해보면 “① 원하는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② 구체적인 일정을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③ 정부자원을 투입하는 ④ 일련의 활동에 대해 ⑤ 일정한 기준에 통해 ⑥ 체계적으로 ⑦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준, 2005).

1) 공공부문의 사업(program)은 단위사업(project)의 상위개념이자 정책(policy)의 하위개념으로 정책, 계획, 업무, 제도 등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이용준, 2005).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유사한 용어들을 ‘사업’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 2. 사업평가의 목적과 성격

### 1) 사업평가의 목적

사업평가는 사업집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평가 대상자,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집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므로 사업평가의 목적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선행연구들에 따라 대부분 다음과 같이 3가지 범주로 사업평가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노화준, 2015).

첫째, 사업평가는 지식 축적을 통한 학습(learning)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현재 해당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이나 정책 수립에 응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게 된다.

둘째, 사업평가는 사업관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사업평가의 활용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면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적절한 것인지,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한편, 평가결과를 활용자가 사업관리자인 경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정보들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때 성공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나 변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책임성의 확보이다.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은 위 2가지 목적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사업평가를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나 관리자들에 책임을 제고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보게 된다. 이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평가의 목적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사업평가의 성격

논의를 위해 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노화준, 2015). 첫째, 사업평가는 일반적인 분석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행정적으로 계획한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에 국한한다. 둘째, 사업평가는 정책의 순환(cycle)과정에서 투입, 산출, 결과 및 그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셋째, 사업평가는 회고적 활동(retrospective activity)이다. 넷째, 사업평가는 단순히 사업의 영향만을 사정(assessment)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성취 여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의 적실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치기준까지 평가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평가는 공공간여(public intervention)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평가지표(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3.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유형 및 절차

### 1) 사업평가의 유형

#### (1) 평가대상에 따른 구분

평가의 대상에 따라서 총괄평가, 과정평가, 종합평가, 통합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총괄평가는 특정 사업의 실시로 기대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발생한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업의 효과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 계량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총괄평가를 실시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 평가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총괄평가는 사업의 성공 및 실패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료 이후 이루어진다. 둘째, 부분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업 실시로 인한 전반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사업의 전반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업 실시로 초래된 효과 외에도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영향도 분석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보다는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괄평가의 결과인 사업의 성패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사업의 성패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인과적인 연쇄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활동이다. 과정평가는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자가 집행 절차를 개선하거나 품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평가는 총괄평가와 마찬가지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과정에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사업의 설계나 집행절차의 수정 및 보완 목적에서 실시된다면 집행과정에서 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즉 과정평가는 사업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분석으로 기술적·귀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업을 통한 산출 및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평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사업 실태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집합적인 평가기술로 평가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평가연구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차적인 자료수집 없이 기존에 수행된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활용한다. 종합평가는 사업을 조정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통합평가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를 통합한 것이며, 주로 사후평가 방식을 취한다. 통합평가는 총괄평가를 통해 사업의 제반 영향에 대해 분석한 다음 과정평가를 활용하여 사업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2) 평가주체에 따른 구분

사업평가는 평가자에 따라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눌 수 있다. 내부평가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이지만 외부평가는 조직의 외부기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내부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체평가가 있는데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기반성적인 과정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하며 엄밀하게 내부평가와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내부평가는 평가의 초점이 조직의 외부가 아닌 관리자, 집행담당 및 사업 참여자들의 이슈와 관심사에 맞춰진다. 그리고 외부평가의 평가자들이 대상 사업이나 조직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내부평가의 평가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내부평가의 장점으로는 조직과 사업에 대한 숙지도, 조직의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조직의 학습역량을 배양해주고,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 결과를 더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평가는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신뢰도와 객관성, 평가전문성의 폭과 깊이에서 강점이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표 II-2〉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교

| 내부평가  | 외부평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과 사업에 대한 숙지도 우수</li> <li>• 조직의 의사결정체계 이해도 우수</li> <li>• 결과에 대한 조직의 학습기회 제공</li> <li>• 분명하고도 빈번한 의사전달 우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도와 객관성의 우수</li> <li>• 평가전문성의 폭과 깊이의 우수</li> <li>• 외부사업에 대한 지식의 우수</li> </ul> |

\* 출처: Fitzpatrick et al.,(2010)

## (3) 단계에 따른 구분

사업평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따라서 사전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평가(ex ante evaluation)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이나

필요성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의 민간개입이 필요한지,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경제성을 비교하고 대안들 간의 비교를 검토하게 된다.

과정평가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절차적 준수 여부, 계획대비 집행의 정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과정평가에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추진된 사업의 경로를 일관된 시각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평가 자료의 일관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결과평가는 사후평가라고도 하며 사업 종료 후 효과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주로 평가한다. 효과성은 사업의 목표달성도,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하는 효율성, 이해관계자 간에 고르게 성과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표 II-3〉 사업단계별 평가유형의 구분

| 사전평가   | 과정평가   | 결과평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 타당성</li> <li>• 경제적 타당성</li> <li>• 사회적 합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이 원래의 설계대로 운영되는가</li> <li>• 계획에서 의도한 목표치를 달성하는가?</li> <li>• 초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달성 여부</li> <li>• 영향력 평가</li> <li>• 후속사업 환류</li> </ul> |

## 2) 사업평가의 절차

사업평가는 그 유형이나 결과의 활용목적,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절차가 크게 달라질 경우 평가과정에서 상호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평가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비효율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절차는 ① 이해관계자들의 식별과 평가계획의 수립, ② 사업에 대한 기술, ③ 평가질문의 작성과 평가 설계, ④ 자료의 수집, ⑤ 자료의 분석과 해석, ⑥ 보고서의 작성과 의사전달로 이루어진다.

### (1) 이해관계자들의 식별과 평가계획의 수립

사업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며, 평가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상호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용가능한 정보와 지식에 한계가 있어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2) 사업에 대한 기술

올바른 사업평가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하위수단과 같이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의 목표는 개념적으로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를 위해 규정하는 사업의 목표가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SMART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SMART 원칙이란 목표가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현실적이고(Realistic), 기한이 있어야(Time-based) 한다는 것이다(Rubin, 2002). 사업의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가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갈등이 표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기술에는 투입자원(inputs), 활동, 산출(outputs), 주요 고객, 산출결과(outcomes) 등이 포함된다. 이때 산출결과는 단기, 중기 장기의 산출결과로 구분될 수 있다.

## (3) 평가질문의 작성과 평가 설계

평가질문은 목적에 따라서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①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② 나는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 ③ 누가 더 좋아졌는가?

- ④ 사업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 ⑤ 의도하지 않은 산출결과들은 없는가?
- ⑥ 사업을 둘러싼 상황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 (4)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평가를 위한 자료에는 정성적인 자료(qualitative data)와 정량적인 자료(quantitative data)가 있다. 정성적인 자료는 관찰, 인터뷰, 선행연구의 검토, 사진 등을 포함한다. 정량적인 자료는 보고서, 설문조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집한 숫자로 된 자료(numerical data)를 의미한다.

#### (5) 자료의 분석과 해석

자료 분석은 평가 설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설계에 따라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다. 각종 통계적인 방법이나 모델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 목적에 따른 정보들을 산출하게 되며, 평가자들의 창의적이고 효율적 자료처리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을 명시하고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객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 (6) 보고서의 작성과 의사전달

보고서는 행동 지향적으로 연구설계나 분석보다 발견된 내용들과 건의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며,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전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사업평가에 따른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과학적인 분석을 강조한

나머지 평가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결과 및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 3) 소결

사업평가는 기존 연구에서 성과관리, 성과측정 및 감독, 정책평가 등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를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투입과 산출 요인들 간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장기적인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성과감독이나 정책평가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사업평가는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의 축적, 사업관리의 개선, 책임성의 확보라는 3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사업평가는 일반적인 분석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 또는 행정적으로 계획한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에 국한한다. 둘째, 사업평가는 정책의 순환(cycle)과정에서 집행, 산출, 산출결과 및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사업평가는 회고적 활동(retrospective activity)이다. 넷째, 사업평가는 단순히 사업의 영향만을 사정(assessment)하지 않고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성취여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의 적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제안한다. 다섯째, 사업평가는 공공관여(public intervention)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평가지표(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총괄평가, 과정평가, 종합평가, 통합평가가 있으며, 평가주체에 따라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마지막으로 평가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나눌 수 있다.

사업평가의 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즉 ①이해관계자들의 식별과

평가계획의 수립, ②사업에 대한 기술, ③평가질문의 작성과 평가설계, ④평가 자료의 수집, ⑤자료의 분석과 해석, ⑥보고서의 작성과 의사소통이다.

## 4. 공공사업의 평가 설계

### 1) 평가 설계의 의의

평가 설계의 기본 요소들은 ①획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②정보의 출처, ③무작위 표본추출, ④정보 수집의 방법, ④정보 수집의 시기와 횟수, ⑤ 정보 수집의 시기와 횟수, ⑥ 정책집행 대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인과관계 추론, ⑦ 분석계획 등이 있다. 평가 설계란 평가연구에서 탐구할 질문들을 정의하고 제기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방법론적 전략을 발전 시키고 자료수집과정에서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들과 장애요인들을 예견하고 기술하는 자료수집계획을 작성하며 평가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답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분석계획을 작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평가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 필수적인 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평가의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목적이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식과 학습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구조와 환경으로 사업의 행정적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이슈들에 대한 평가질문이나 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셋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하여 시간을 비롯한 투입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2) 평가 전략과 설계 유형

평가 전략은 평가를 위해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위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의미하는데 표본조사, 사례연구, 현장실험, 이용 가능한 기존자료의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 중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일정시점에서 여러 하위집단들을 동시에 조사하는 횡단면적 연구와 추출된 표본집단을 여러 시점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연구 등이 있다. 표본집단에 대해 특정 평가기준에 따라서 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규범적 연구도 실시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 복잡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기술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살펴본 규범적 연구도 사례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현장실험의 유형으로는 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과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시계열적 분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한 기존자료의 조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이미 발표된 기존자료나 정보들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 종합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2차 자료의 분석과 메타분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II-4〉 평가전략과 평가설계유형

| 평가전략     | 평가설계유형   |
|----------|--|
| 표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면적(corss-sectional) 연구</li> <li>• 패널(panel) 연구</li> <li>• 평가기준에 근거한 규범적 연구</li> </ul>       |
| 사례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사례(single case) 연구</li> <li>• 다중사례(multiple case) 연구</li> <li>• 평가기준에 토대를 둔 사례연구</li> </ul> |
| 현장실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에 의한 연구</li> <li>• 사업의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연구(시계열 분석 등)</li> </ul>                    |
| 기존자료의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자료의 분석, 메타분석</li> </ul>  |

출처: 노화준(2015), 저자 재구성

## 5. 사업평가 방법론 검토

### 1)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비교

사업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크게 양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정량적 분석과 질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산출에 관련된 자료로 사업의 비용, 서비스의 양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표 II-5〉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비교

| 구분 | 정량적 분석          | 정성적 분석         |
|----|-----------------|----------------|
| 초점 | 공급자 중심          | 소비자 중심         |
| 목적 | 능률성·효과성         | 대응성·형평성        |
| 지향 | 산출지향            | 영향지향           |
| 장점 | 계량화 용이          | 사업의 배분적 성과 측정  |
|    | 자료의 접근가능성이 높음   | 외부적 시각을 제공     |
|    | 보편적으로 용인된 기준    | 대안적 시민참여       |
|    | 결과 해석이 용이함      | 민주주의 규범에 적합    |
| 단점 | 자료처리상 왜곡 가능성    | 인지 및 평가기준상의 문제 |
|    | 자료수집상 한계(이용가능성) | 산출 서비스와의 관련 미약 |
|    | 공급자의 관심(목표)에 치중 | 정책결정에 대한 도움 미약 |
|    | 시간경화에 따른 지표 변경  | 태도의 결정요인들이 불명확 |

출처: 문신용·윤기찬(2008), pp.58-59.

정량적분석 방법론은 정보의 계량화에 의해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를 수집 및 적용할 때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절차적 합리성과 기계적 능률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고객이나 수혜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정성적 분석은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량적

분석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에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주관적 평가에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 문제와 방법론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2) 정량적 분석방법의 종류

### (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업의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그 대안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비교하는 접근방법으로 이윤창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에 적합하며, 새로운 대안 제시나 사후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화폐가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형성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 간의 효용비교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미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과 비용의 비율(B/C ratio)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II-6〉 비용편익분석의 5단계

| 단계 |      | 내용   |
|----|------|--|
| 1  | 대상정의 | 전문가 혹은 실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예산·환경 제약을 고려하여 공간 및 시간 범위를 설정  |
| 2  | 체계수립 | 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을 구분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항목화하고, 항목평가, 계량분석 범위, 분석구조, 민감도 분석 및 수집대상 자료를 결정                                   |
| 3  | 자료수집 | 분석체계를 수립할 때 결정한 항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
| 4  | 분석수행 | 비용/편익을 구분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수준에서 보완   |
| 5  | 대안선택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안을 결정 |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경제성평가의 편익과 비용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변수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기도 한다.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이 갖는 불확실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 및 최종 판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 (2) 1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차 자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수집하는 자료를 의미하며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의미한다.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화하여 수집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정량적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우선 기술적 통계분석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표본집단에 따라 사업의 성과나 만족도의 평균과 분산, 최소값, 최대값 등을 도출하여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다. 상관계수는 -1와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준다. 다변량 분석은 변수가 2개 이상인 통계분석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상관분석(multiple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다변량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평가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적 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 등을 사용한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1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계량적 방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귀분석은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시차변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회귀분석의 유의한 결과를 인과적 해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논리모형 등을 통해 사업의 투입과 산출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통계적 결과를 해석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3) 2차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2차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횡단면 분석, 패널 분석, 시계열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로 목표와 관련된 성과 변수들을 설정하고, 사업의 투입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반영하여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2차 자료는 주로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하므로 자료 자체의 특성상 객관성을 가지지만 변수의 선택이나 모형 설계에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변수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횡단면 분석(cross sectional data analysis)은 동일 시점에서 다양한 개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주로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최소자승법은 선형회귀모형으로 선형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데 P-value에 의해서 결과의 유의성을 파악한다. 종속변수의 결과가 상한과 하한이 없는 연속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이항 혹은 다항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를 사업의 만족도로 할 경우 만족여부 혹은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변수를 이항형이나 다항형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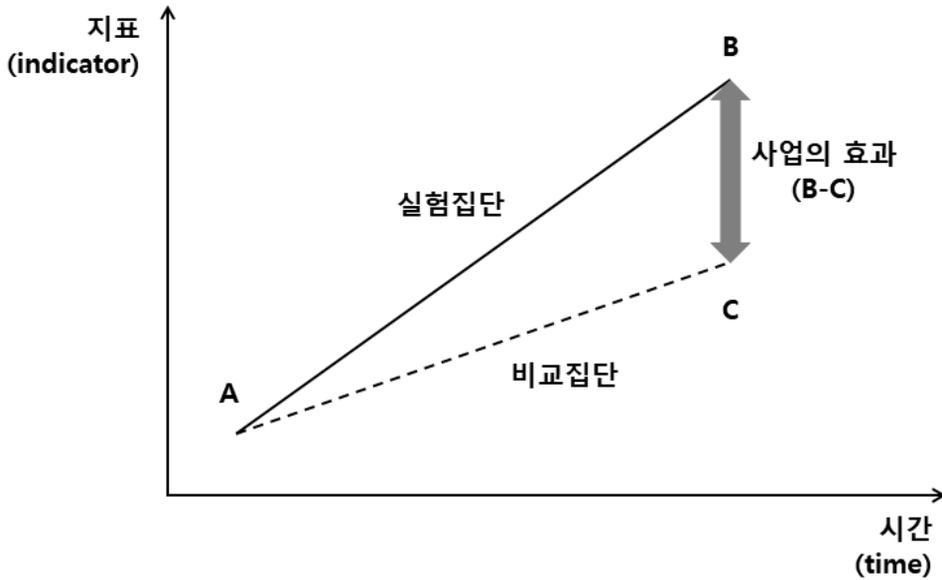
패널 분석(panel data analysis)은 횡단면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모두 갖춘 패널자료를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한다. 패널개체의 특성을 고정된 상수로 볼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지만 시간가변적인(time-varying) 특성을 가지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다. 두 모형의 적합성은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으로 주로 이중차분(DID, 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을 사용한다. DID 분석은 사업평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별도로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panel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은 회귀식을 연립하여 일반화 모형을 구축하고 사업의 시행(독립변수)과 성과(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여러 방정식을 연립하기 때문에 일반화 모형이라고 표현하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독립변수 충격에 따른 종속변수 변화를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다변량으로 확장한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 그리고 시간가변 이분산 가정의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모형 등이 있다. 일변량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AR(AutoRegressive)모형과 MA(Moving average)모형이 있으며, 두 모형을 동시에 적용한 ARMA모형과 ARIMA모형 등이 있다. 단일변수에 시계열분석은 주로 사업 시작 시점 기준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는지, 추세 흐름이 달라졌는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세 흐름이 기존과 달라진 이유가 반드시 사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 인과관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VAR모형은 충격반응함수(IRF:Impulse Response Function)와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정량적 충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그랜저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해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시계열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제한적이다.

#### (4)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어떤 사업이 시행되어 특정 집단에 적용되는 경우  $t=1$  시점에서는 모든 표본 집단이 해당 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t=2$  시점에서 사업의 적용을 받은 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DID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림 II-1] DID 분석모형의 개념

이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t=2$  시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성과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모형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t=1$ 시점과  $t=2$ 시점의 시점간 비교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동일한 집단에 대해 사업의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방법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까지 추정치에 포함하게 되어 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관측치를 모두 포함한 2시점 패널 데이터로 모형을 구성해야 한다. 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와 시점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의 상호작용변수의 계수를 추정하는데 해당 추정계수는 실험집단의 시점 간 평균 차이에서 비교집단의 시점 간 평균 차이를 빼준 값이기 때문에 사업의 순수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추정량을 DID 추정량이라고 한다.

### 3) 정성적 분석방법의 종류

#### (1) 면접법: 심층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

면접법은 조사원과 응답자들이 대면을 통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면접법은 높은 응답률, 내면적인 정보수집,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원에 따라 오차 가능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면접법 중에서 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는 사업에 대해 조사자와 응답자가 정해진 형식이나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비표준화면접법(non-standardized interview)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탐색적 조사에 많이 이용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조사원의 능력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 변화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조사원이 특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순서는 결정되어 있지만 질문의 깊이나 순서를 조절할 수 없는 준표준화면접법(semi-standardized interview)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DI와 마찬가지로 조사원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편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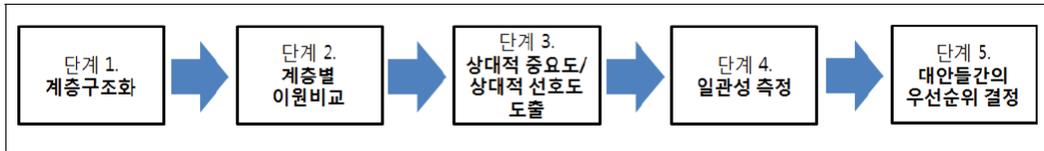


[그림 II-2] FGI의 진행절차

#### (2) 계층분석모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모형은 의사결정 목표나 평가 기준이 다수거나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 원인과 세부 요인으로 분해하고 요인들 간의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한다. AHP분석은 분석결과와 특성상 공공부문의 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산출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 II-3] AHP 분석의 진행절차

AHP분석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원리를 가진다.

- ①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 현상문제의 구조화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여 효과적 사고 가능
- ②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 평가항목의 관계를 인식하고 유사 항목의 짝을 특정 기준으로 비교하여 요인들 간 선호도 판단
- ③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 판단기준의 수준(level)이 동질성을 갖도록 묶고, 관계의 강약을 일관성 있게 구성(이행성)

### (3)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Kaplan과 Norton(1992)은 영리조직을 위해 BSC를 만들었지만 공공 및 비영리부문으로도 효과적으로 이전되어 실행되고 있다. BSC는 조직의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계량 지표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표들은 조직의 미션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동인들과 결과를 내부와 외부에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BSC는 성과측정시스템, 전략관리시스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성과측정시스템으로서의 BSC는 기본적으로 재무적 성과지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전략적 틀을 제공해준다.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목표 고객은 누구이며, 전달해야 하는 가치명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의할 수 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탁월한 주요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또한 고객만족과 기업의 가치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수반한다.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들은 다른 관점들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동인으로서 본질적으로 BSC의 기반이 된다.

BSC는 성과관리의 도구에서 ‘전략관리시스템’으로 진화해왔다. 많은 조직들이 단기적 관점에서의 활동과 전략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BSC를 사용하면서 전략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BSC는 조직의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가지 관점별로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전환하여 조직의 하부단위까지 구성원들의 활동이 전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가치창출활동을 구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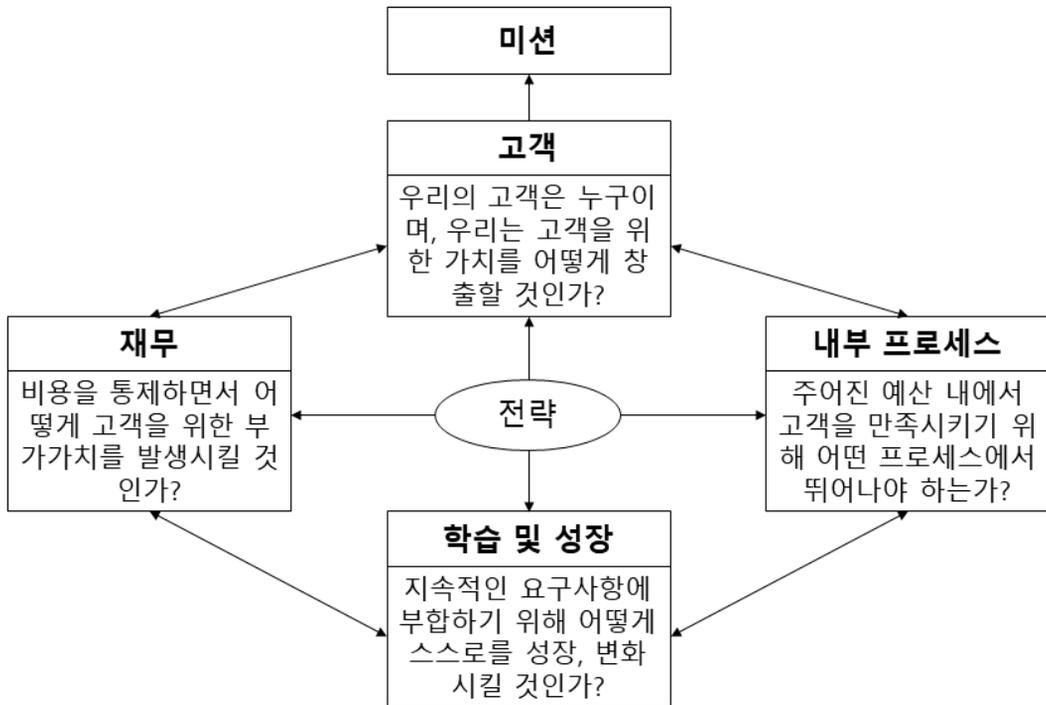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BSC는 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막연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의 영역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성과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BSC는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재무적 측면은 목표가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한 제약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이 되는 납세자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는지로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 및 성장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II-7〉 공공부문 BSC의 주안점

| BSC관점   | BSC 측정의 주안점        |                   |         |
|---------|--------------------|-------------------|---------|
|         | 운영수준               | 관리수준              | 전략수준    |
| 재무      | 비용                 | 효율적 자원 수준         | 임무 완수   |
| 고객      | 국민정서 파악            | 고객 목표 성취          | 고객 주제   |
| 경영과정    | 효율적 자원 할당          | 사업과정 향상           | 과정의 효율성 |
| 학습 및 성장 | 공공부문 인력 자질 향상 및 교육 | 정보기술 생산성 및 활용도 향상 | 지식관리    |



[그림 II-4] 공공부문 BSC의 체계

### Ⅲ. 산재예방사업 관련 평가체계 검토





### Ⅲ. 산재예방사업 관련 평가체계 검토

본 장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평가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업무평가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기준, 국가건강검진 사업 평가, 안전보건공단 및 유사기관의 사업평가보고서 및 지침 등 관련 평가 체계들을 검토하여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 1. 정부업무평가 체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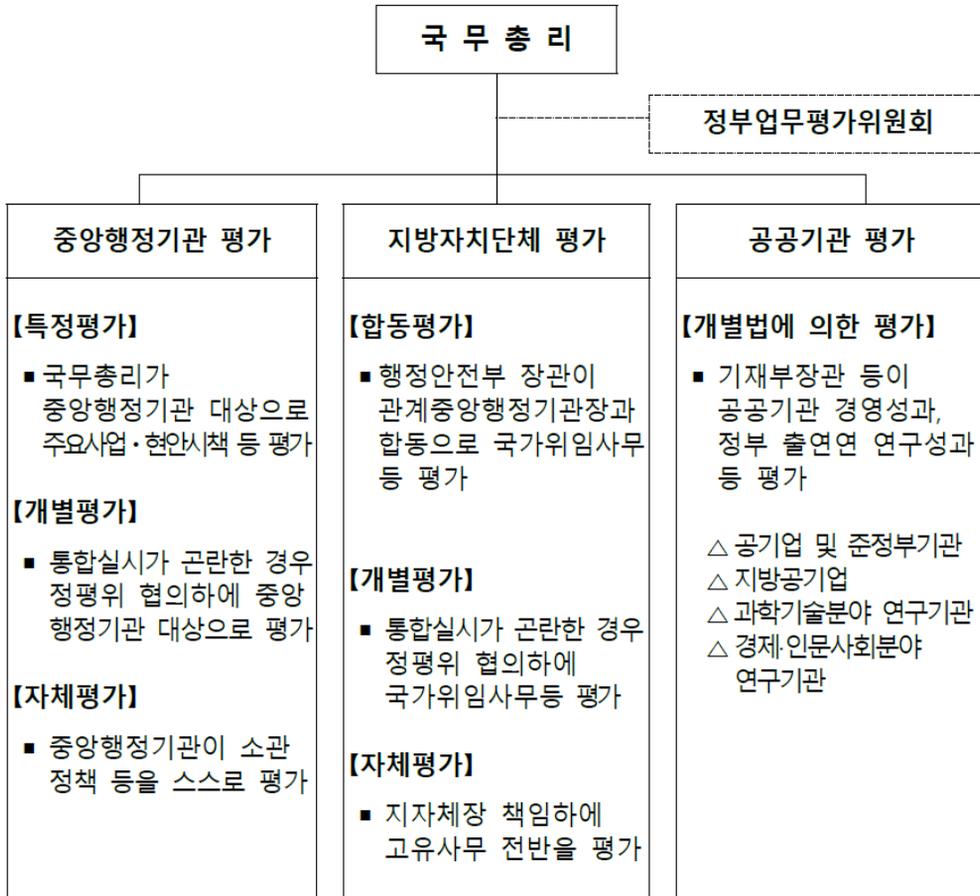
공공부문의 사업특성별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때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과 현안시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실시하며,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협의하에 중앙행정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개별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임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하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하거나 통합실시가 어려운 경우 개별평가를 실시한다.

1)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Ⅲ-1] 정부업무평가 체계

출처: 국무조정실(2022), 2022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이와 같이 정부의 업무평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관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여

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대상             | 평가유형                      | 평가부문                        | 근거법률    | 평가주관    |       |
|----------------|---------------------------|-----------------------------|---------|---------|-------|
| 중앙<br>행정<br>기관 | 특정평가<br>(45개)             | 주요정책, 규제혁신,<br>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 정부업무평가법 | 국조실 등   |       |
|                | 자체평가<br>(46개)<br>* 45+국조실 | 주요정책(성과관리)                  | 정부업무평가법 | 국조실     |       |
|                |                           | 재정<br>사업                    | 일반재정사업  | 국가재정법   | 기재부   |
|                |                           |                             | R&D평가   | 연구성과평가법 | 과기정통부 |
| 행정<br>관리<br>역량 | 재난안전                      | 재난안전법                       | 행안부     |         |       |
|                |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법                     | 균형위     |         |       |
|                | 조직                        |                             | 행안부     |         |       |
|                | 인사                        | 정부업무평가법                     | 인사처     |         |       |
|                | 정보화                       |                             | 행안부     |         |       |
|                | 개별평가                      | 개별근거법률                      | 주관부처    |         |       |

[그림 Ⅲ-2] 정부업무평가(중앙행정기관) 체계도

#### (1) 특정평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 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부문별 평가를 수행하여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기관이 국정과제 추진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정책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한다.

특정평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을 부문별로 평가하며, 적극행정의 경우 가점으로 3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평가부문의 점수는

〈표 III-1〉과 같다. 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표 III-1〉 특정평가 평가부문

| 구분    | 주요정책 | 규제혁신 | 정부혁신 | 정책소통 | 적극행정(가점) |
|-------|------|------|------|------|----------|
| 총100점 | 65점  | 10점  | 10점  | 15점  | 3점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의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정평가 평가부문 중 주요정책은 총 65점으로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주요정책 외에 각 기관의 국정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 및 성과도 평가에 반영한다. 주요 정책 부문에서는 올해 역점 추진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정책별 정책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단과 일반국민이 평가한다.

〈표 Ⅲ-2〉 특정평가 주요 변경사항

| 부문           | 2021년 시행계획   | 2022년 시행계획   |
|--------------|--|--|
| 주요정책         | <b>【65점】</b> * '21년 일자리·국정과제<br>■ 이행노력(25%)<br>■ 목표 달성도(25%)<br>■ 정책효과(35%)<br>■ 국민만족도(15%)    | <b>【65점】</b><br>■ 이행노력(25%)<br>■ 목표 달성도(25%)<br>■ 정책효과(35%)<br>■ 국민만족도(15%)                      |
| 규제혁신         | <b>【10점】</b><br>■ 규제혁신 노력·성과(60%)<br>■ 규제혁신 제도 운영(30%)<br>■ 규제혁신 국민체감도(10%)                    | <b>【10점】</b><br>■ 핵심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60%)<br>■ <b>규제 전주기 관리(20%)</b><br>■ 규제혁신 <b>소통</b> 및 체감도(20%) |
| 정부혁신         | <b>【10점】</b><br>■ 기관의 혁신역량(10%)<br>■ 혁신성과(75%)<br>■ 국민체감도(15%)                                 | <b>【10점】</b><br>■ 혁신역량(10%)<br>■ 혁신성과(75%)<br>■ 국민체감도(15%)                                       |
| 정책소통         | <b>【15점】</b><br>■ 정책소통 활동(14%)<br>■ 정책소통 성과(63%)<br>■ 정책소통 체감도(23%)                            | <b>【15점】</b><br>■ 정책소통 활동(12%)<br>■ 정책소통 성과(68%)<br>■ 체감도(20%)                                   |
| 적극행정<br>(가점) | <b>【3점】</b><br>■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8%)<br>■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32%)<br>■ 적극행정 추진성과(30%)<br>■ 적극행정 체감도(30%) | <b>【3점】</b><br>-<br>■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30%)<br>■ 적극행정 추진성과(40%)<br>■ 적극행정 체감도(30%)                    |

〈표 III-3〉 특정평가의 주요정책 부문(65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정        | 비중  |
|--------|---|-----------|-----|
| 이행노력   | ·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br>- 기관장 노력, 분기 점검결과, 입법노력, 갈등관리 등 | 정량/<br>정성 | 25% |
| 목표 달성도 | · 사전에 설정된 연간 목표치 달성여부<br>-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등 | 정량/<br>정성 | 25% |
| 정책 효과  | ·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br>- 당초 의도한 효과, 장기적 효과 등                     | 정성        | 35% |
| 국민 만족도 | · 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br>(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 정성        | 15% |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중 규제혁신은 총 10점으로 규제혁신 플랫폼 추진 및 기업활동·국민생활 분야 핵심규제 개선에 대한 성과 평가로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혁신을 평가할 때는 부처의 노력 및 성과, 국민·기업의 체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절대평가를 확대하여 피평가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표 III-4〉 특정평가의 규제혁신 부문(10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정        | 비중  |
|------------------|--|-----------|-----|
| 핵심분야<br>규제혁신     | · 분야별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br>- 기관의 과제발굴 노력 및 개선 여부 등<br>· 분야별 규제혁신 효과<br>- 규제혁신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등 | 정성/<br>정량 | 60% |
| 규제<br>전주기 관리     | · 규제비용 감축 등 규제품질 관리 노력 및 성과  |           | 20% |
| 규제혁신<br>소통 및 체감도 | · 국민소통 노력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 20% |

규제혁신을 평가하기 방법으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한다.

- 정성평가: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 정량평가: 규제혁신 실적치, 달성률, 이행률 등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20명 내외 구성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중 정부혁신은 총 10점으로 정부혁신 역점분야 중심으로 혁신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가시적인 정부혁신 성과에 집중한다. 정부혁신 가치를 공직사회에 내재화하기 위해 기관의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주체는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

〈표 Ⅲ-5〉 특정평가의 정부혁신 부문(10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정        | 비중  |
|-------|--|-----------|-----|
| 혁신역량  |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 정성        | 10% |
| 혁신성과  | · 참여와 협력성과<br>- 국민참여, 부처 간 협업 등<br>·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혁신성과<br>- 디지털 기반 서비스, 선제·포용적 서비스 등<br>· 일하는 방식 혁신성과<br>- 디지털·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조직문화 혁신 등 | 정량/<br>정성 | 75% |
| 국민체감도 | · 국민평가단·일반국민 체감도 평가  | 정성        | 15% |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중 정책소통은 총 15점으로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범정부 소통 협력과 외신 소통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온라인 기반 소통 활동 확대와 국민 체감도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표 III-6〉 특정평가의 정책소통 부문(15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정        | 비중  |
|---------|---|-----------|-----|
| 정책소통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협업 활동</li> <li>· 보유자원(부처 보유매체 등) 활용</li> </ul>           | 정량/<br>정성 | 12% |
| 정책소통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내·외신) 및 온라인 소통성과</li> <li>· 주요 정책 및 기관장 소통성과</li> </ul> |           | 68% |
| 체감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만족도</li> <li>· 온라인 체감도</li> </ul>                        |           | 20% |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중 적극행정은 가점 3점으로 일선 현장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및 추진성과, 국민·공무원의 체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의 간소화 및 단순 정량지표 축소를 통해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표 III-7〉 특정평가의 적극행정 부문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정        | 비중  |
|-------------|--|-----------|-----|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기관장 이행 노력도</li> <li>·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제도 활용 실적</li> <li>· 우수공무원(직원) 선발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실적</li> <li>·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실적</li> </ul> | 정량/<br>정성 | 30% |
| 적극행정 추진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실적 제출, 우수사례 성과</li> </ul>   | 정량/<br>정성 | 40% |
| 적극행정 체감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li> </ul>  | 정량        | 30% |

## (2) 개별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의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평가의 남설 방지,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운영 적절성 확보 등을 통해 평가부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3) 자체평가

자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기관장 책임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자체평가와 국정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범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자체평가 과제에 포함한다. 자체평가는 주요 정책 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등급제)를 적용하고 기관별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부문별 평가 총괄기관에서 점검하도록 한다.

자체평가의 결과는 정책개선·조직관리·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인사와 연계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표 Ⅲ-8〉 자체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총괄기관  |       |
|----------|-----------------------|---|-------|
| 주요정책     |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국조실   |       |
| 재정<br>사업 | 일반<br>재정              |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br>*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은 제외 | 기재부   |
|          | R&D                   | ·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과기정통부 |
|          | 재난<br>안전              | · 재난안전사업  | 행안부   |
|          | 균형<br>발전              | · 균형발전세부사업  | 균형위   |
| 행정관리역량   |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 행안부<br>인사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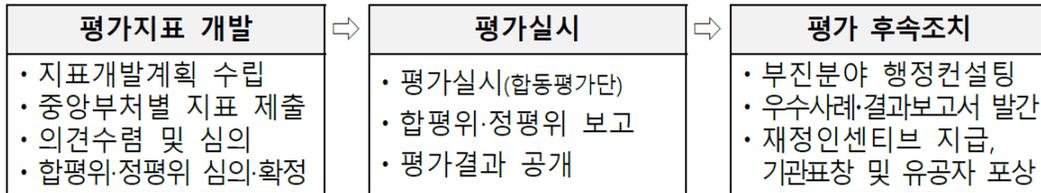
## 2) 지방자치단체 평가

| 대상             | 평가유형 | 평가부문            | 근거법률    | 평가주관  |
|----------------|------|-----------------|---------|-------|
| 지방<br>자치<br>단체 | 합동평가 | 26개 기관, 116개 지표 | 정부업무평가법 | 행안부 등 |
|                |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 정부업무평가법 | 지자체장  |
|                | 개별평가 |                 | 개별근거법률  | 주관부처  |

[그림 III-3] 정부업무평가(지방자치단체) 체계도

###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가 있다. 합동평가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및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에서 실시한다.



[그림 III-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체계

합동평가는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다. 합동평가의 결과는 우수 광역지자체 선정,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등에 활용한다.

한편,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평가를 받는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합동평가에 통합 및 간소화하지만 업무특성이나 평가시기 등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한다. 개별평가의 평가주체는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평가대상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이 된다.

### (2)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고유사무(전략사업 등)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2/3 이상이 참여하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 3) 공공기관 평가

| 대상                  | 평가유형                    | 평가부문                     | 근거법률                          | 평가주관  |
|---------------------|-------------------------|--------------------------|-------------------------------|-------|
| 공공<br>기관            | 공기업(36개)<br>준정부기관(94개)  |                          | 공공기관운영법                       | 기재부   |
|                     |                         | 기금(존치평가 18개, 자산운용평가 33개) | 국가재정법                         | 기재부   |
|                     | 과학기술분야<br>연구기관<br>(47개) | 과기연 소관(25개)              | 과학기술기본법<br>과기출연기관법<br>연구성과평가법 | 과기연   |
|                     |                         | 과기정통부 산하(16개)            |                               | 과기정통부 |
|                     |                         | 해수부 산하(3개)               |                               | 해수부   |
|                     |                         | 원안위 산하(2개)               |                               | 원안위   |
| 방사청 산하(1개)          | 방사청                     |                          |                               |       |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                         | 정부출연기관법                  | 경인사연                          |       |
| 지방공기업(257개)         |                         | 지방공기업법                   | 행안부                           |       |

[그림 Ⅲ-5]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체계도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책임 강화,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고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4대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표 Ⅲ-9〉 4대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

| 평가대상                | 주관기관               | 근거법률                          |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30개)   | 기재부 장관             | 공공기관운영법                       |
| 지방공기업(257개)         | 행안부 장관<br>시·도지사    | 지방공기업법                        |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47개)    | 과기연 등<br>(주관기관평가)  | 과학기술기본법<br>과기출연기관법<br>연구성과평가법 |
|                     | 과기정통부 장관<br>(상위평가) |                               |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 경인사연               | 정부출연기관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기재부 장관이 주관기관이 되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평가는 조직의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주요 사업은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관리는 총 45점, 주요 사업이 총 55점의 점수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2.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sup>2)</sup>

###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장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은 공공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적정 사업시기 및 사업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우선 사업계획이 법적·정책적 부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공성과 수익성의 2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3.22>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2)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 참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 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7.9)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18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분석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조사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공공기관의 영업비밀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원칙)

-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일반적으로 AHP가 0.5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 ① 국내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적 타당성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비용-편익(B/C) 비율’로 평가하며, 정책적 타당성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일관성 및 추진의지’, ‘환경성’, ‘지역균형발전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주) 비용편익(B/C) 분석 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사회적 할인율을 준용한다.
- ② 국내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한다. 재무성 평가는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을 활용하며, 재무안정성은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 재원조달 위험’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주) 수익성 지수(PI) 분석 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4.5%로 한다  
(주)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70%, 수익성 3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 조사의 주요내용

공공성 평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적 타당성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비용/편익비율로 평가하며, 정책적 타당성은 기관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일관성 및 추진의지, 환경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효과분석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수익성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의 재무성을 위주로 하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AHP 수행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비중은 공공성 70%, 수익성 30%를 적용하지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표 III-10〉 국내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 및 방법

| 구분  | 평가항목   |                            | 평가방법  |  |
|-----|--------|----------------------------|---|--|
| 공공성 | 경제성    | 비용/편익(B/C)분석               |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비용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  |
|     | 정책성    | 필수 평가항목                    | 기관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이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     |        |                            | 국가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상위 및 관련 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
|     |        |                            |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추진의지 등  |
|     |        |                            | 사업의 준비 정도   |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자료 수준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   |
|     | 환경성 검토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피해저감 방안 등 |   |  |

| 구분      |        | 평가항목               |  | 평가방법   |
|---------|--------|--------------------|--|--|
|         |        | 지역균형발전 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         |        |                    | 지역낙후도  | 해당 지역의 낙후도지수 활용  |
|         |        | 고용 효과              | 고용유발효과   |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
|         |        |                    | 고용의 질 개선효과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고용의 질 개선효과 고려                                  |
|         |        | 선택평가항목             |  | 경제성과 수익성 평가에서 정량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     |
| 사업의 재무성 | 수익성지수  |                    | 수익성 지수(PI)가 1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
| 수익성     | 재무 안정성 |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  | 공공기관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수익성, 차입금 상환능력 및 재무레버리지 등을 평가             |
|         |        |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  | 공공기관 및 타 출자자의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을 평가                              |
|         |        |                    |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  | 해당 사업의 추정 부채상환계수(DSCR)로 평가                                 |
|         |        |                    | 국고 지방비 등 재정지원 적정성  |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 및 요건 등을 검토                             |
|         |        | 운영기간 중 추가 재원 조달 위험 | 추가 재원조달 필요성 및 조달 가능성                                       | 운영기간 중 단순 부채상환계수(DSCR)의 적정 수준 달성 여부 및 추가 재원조달 금액의 정도 등을 평가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8)

###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2) 평가 대상의 유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경영실적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및 산업별·기능별·규모별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표 III-11〉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구분(공기업)

| 유형  |          | 유형구분 기준   |
|-----|----------|---|
| 공기업 | SOC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     | 에너지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자원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     | 산업진흥·서비스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 산업 진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출처: 기획재정부(2015)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표 Ⅲ-12〉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구분(준정부기관)

| 유형        |           | 유형구분 기준  |   |
|-----------|-----------|--|---|
| 준정부<br>기관 | 기금관리형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
|           | 위탁<br>집행형 | SOC<br>안전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자원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           |           | 산업<br>진흥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위탁 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소형기관은 제외) 중 특정 산업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           |           | 복리<br>증진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소형기관은 제외) 중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           | 중소형       | 중형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하여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기관) 중 정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관(2021년 9월말 기준) |
| 소형        |           |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하여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기관) 중 정원이 200인 미만인 기관(2021년 9월말 기준) |   |

출처: 기획재정부(2015)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 3) 평가지표의 기본체계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 의 2개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3〉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

| 평가범주 | 주요 평가내용   |
|------|---|
| 경영관리 |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
| 주요사업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출처: 기획재정부(2015)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 속하므로, 유형별 평가지표의 구성과 가중치는 위탁집행 준정부기관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경영관리-경영전략 및 리더십

- ① 전략기획 및 혁신: 기관의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② 국민소통: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점검·평가

#### 나. 경영관리-사회적 가치 구현

- ①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평가
-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
- ③ 안전 및 환경: 산업재해 및 사이버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④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

- ⑤ 윤리경영: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

다. 경영관리-조직·인사·재무관리

- ① 조직·인사 일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
-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효율성 등을 평가

라. 경영관리-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①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② 총인건비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
- ③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마. 주요사업-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
- ②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평가

경영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어있는 지표들은 경영평가의 관점에서 수립된 지표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평가 측면에서 크게 준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주요사업의 범주에 속해있는 2가지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마)의 ①은 (1)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2)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이나 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 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으로 세분되어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평가에서 산출이나 결과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은 크게 (1)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2)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3)주요 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지, 그리고 (4)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지의 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주요사업 평가에서 사업의 추진계획(물량) 달성도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이나 환류개선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표 III-1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 범주           | 평가지표               | 계   | 비계량  | 계량   |
|--------------|--------------------|-----|------|------|
| 경영관리<br>(45) |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 9.5 | 8    | 1.5  |
|              | - 전략기획 및 혁신        | 7   | 7    |      |
|              | - 국민소통             | 2.5 | 1    | 1.5  |
|              | 2. 사회적 가치 구현       | 23  | 12   | 11   |
|              | - 일자리 창출           | 5   | 3    | 2    |
|              |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3   | 2    | 1    |
|              | - 안전 및 환경          | 5   | 1    | 4    |
|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5   | 2    | 3    |
|              | - 윤리경영             | 5   | 4    | 1    |
|              | 3. 조직·인사·재물관리      | 4   | 4    |      |
|              | - 조직·인사 일반         | 2   | 2    |      |
|              | - 재무예산 운영·성과       | 2   | 2    |      |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8.5 | 3.5  | 5    |
|              | - 보수 및 복리후생        | 3.5 | 1.5  | 2    |
|              | - 총인건비관리           | 3   |      | 3    |
| - 노사관계       | 2                  | 2   |      |      |
|              | 소계                 | 45  | 27.5 | 17.5 |
| 주요사업<br>(5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 55  | 24   | 31   |
|              | 소계                 | 55  | 24   | 31   |
|              | 합계                 | 100 | 51.5 | 48.5 |

출처: 기획재정부(2015)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표 Ⅲ-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평가 총괄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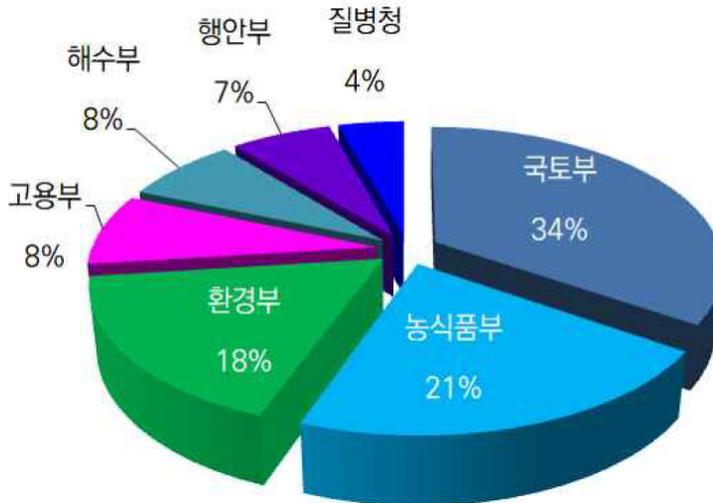
| 범주           | 평가지표                                  | 가중치  |     | 합계  |
|--------------|---------------------------------------|------|-----|-----|
|              |                                       | 비계량  | 계량  |     |
| 경영관리<br>(45) |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      |     | 9.5 |
|              | - 전략기획 및 혁신                           | 7    |     |     |
|              | - 국민소통                                | 1    | 1.5 |     |
|              | <b>2. 사회적 가치 구현</b>                   |      |     | 23  |
|              | - 일자리 창출                              | 3    | 2   |     |
|              |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1    | 1   |     |
|              | - 안전 및 환경                             | 1    | 4   |     |
|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3    | 3   |     |
|              | - 윤리경영                                | 4    | 1   |     |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      |     | 4   |
|              | - 조직·인사 일반                            | 2    |     |     |
|              | - 재무예산 운영·성과                          | 2    |     |     |
|              | <b>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b>                 |      |     | 8.5 |
|              | - 보수 및 복리후생                           | 1.5  | 2   |     |
| - 총인건비관리     |                                       | 3    |     |     |
| - 노사관계       | 2                                     |      |     |     |
| 경영관리 소계      | 27.5                                  | 17.5 | 45  |     |
| 주요사업<br>(55) | <b>1. 사고·사망재해 예방</b>                  |      |     | 34  |
|              | - 사고·사망재해 감소                          |      | 15  |     |
|              | - 안전보건공생협력 확대                         |      | 3   |     |
|              |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확대                      |      | 3   |     |
|              | - 사고·사망재해 예방 성과관리                     | 13   |     |     |
|              | <b>2.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b>                 |      |     | 11  |
|              | -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사후관리                    |      | 4   |     |
|              | -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      | 3   |     |
|              | -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성과관리                    | 4    |     |     |
|              | <b>3. 안전문화 확산사업</b>                   |      |     | 5   |
|              | -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      | 3   |     |
|              | - 안전문화 확산사업 성과관리                      | 2    |     |     |
|              | <b>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b> | 5    |     | 5   |
| 주요사업 소계      | 24                                    | 31   | 55  |     |
| 합계           | 51.5                                  | 48.5 | 100 |     |

출처: 기획재정부(2015)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 1)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되며,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목표 달성도 등 사업평가를 통해 재난·안전 계획과 예산, 평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재난안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나, 2022년에는 성과관리대상 354개 사업 중 △10억원 미만(56), △3년 연속 평가 우수(2), △국가 안보 보안(3), △예비비에 준하는 사업(6), △단순 유지보수(1), △종료 사업(1) 등 97개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하여 총 27개 부처, 257개 사업(13.9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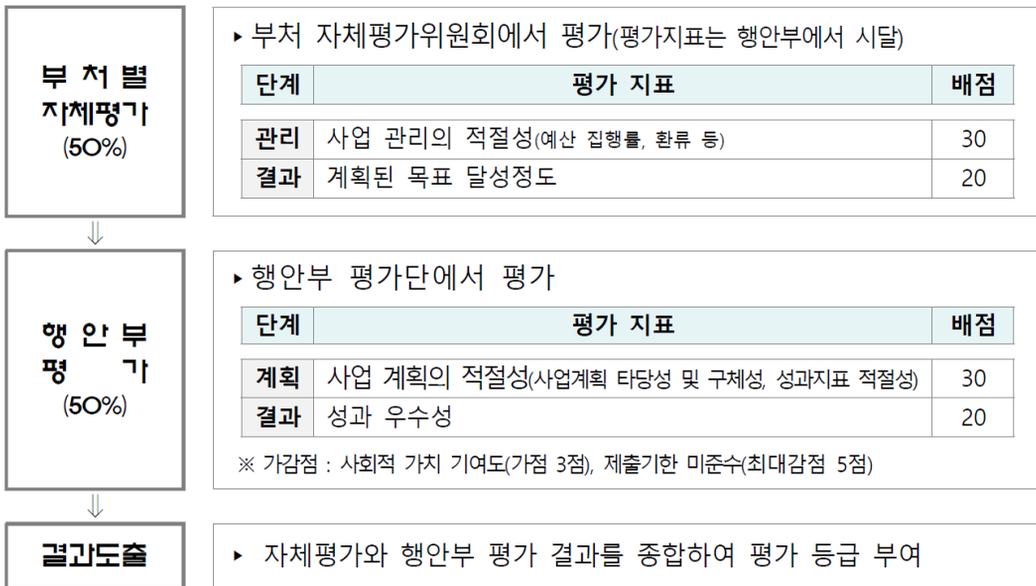


[그림 III-6] 재난안전사업평가 부처 예산별 분포

출처: 행정안전부(2022)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 2) 재난안전사업 평가방법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성과목표지표 등의 적절성과 예방 및 피해 저감 등 성과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며,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와 행정안전부 평가단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데, 각 부처 내 사업 간에는 상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을 배정한다.



[그림 Ⅲ-7] 재난안전사업 평가방법

출처: 행정안전부(2022)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 3)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는 ①예산집행률, ②외부 지적사항 반영, 제도개선 등 환류, ③사업 결과의 우수성, ④사업계획의 적절성, ⑤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⑥사업성과의 우수성으로 구성된다. 예산집행률은 예산집행률과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도로 구성되며, 사업기간 내 계획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 지적사항 반영, 제도개선 등 환류 항목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여부와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구축되어있는지 여부,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실적 및 개선대책 수립 여부로 구분하여 합산된다. 사업결과의 우수성은 직전 회계연도 성과지표·목표치 달성 정도로 판단하며, 사업 계획의 적절성은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국정과제의 근거 및 목표달성과 사업내용이 얼마나 잘 연계되어있는지 여부로 측정하게 된다.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은 설정된 목표가 사업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으며, 지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의 우수성은 (1)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효과, (2) 국민 불안 요인을 얼마나 해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국민체감도, (3)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등을 개선한 실적, (4)기능의 탁월한 개선이나 새로운 방법 활용, 이해관계자 협력제고, 예산 절감 등 혁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 4)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선연구 수행 결과(행정연, 2020)

행정연구원(2020)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0조의3(예비타당성조사)에 따라 수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 및 평가 대상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모형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은 구성적 평가(constructive assessment)와 결과지향적 평가(conclusive assessment)로 구분하였는데, 구성적 평가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구성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 평가인 반면 결과지향적 평가는 사업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인과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표 Ⅲ-16〉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의 구성 및 세부 평가 요소

| 평가 모형 구성                               |                 | 세부 평가 요소           |
|--|-----------------|--------------------|
| 구성적 평가<br>(constructive<br>assessment) | 사업기획 분석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 연계성 |
|  | 성과에 대한 기초 정보 분석 | 성과정보 관리            |
|  | 사업집행과정 분석       | 사업 디자인 적절성(논리모형)   |
|  | 이해관계자 분석        | 사업관계자 합의형성/의견수렴    |
| 결과지향적 평가<br>(conclusive<br>assessment) | 이론 기반 평가 방법 설계  | 효과 매커니즘 탐색         |
|  | 효과 인과성 분석       | 정량적 효과 분석          |
|  | 효과 발생 요인 탐색     | 정성적 효과 분석          |

출처: 행정연구원(2020)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구성적 평가는 사업기획 분석, 성과정보 분석, 사업집행과정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17〉 구성적 평가의 요소

| 구성적 평가       |   |   |
|--------------|---|---|
| 사업기획<br>분석   | <b>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 연계성</b><br>사업목표의 SMART 원칙 적용여부 검토<br>사업내용이 목표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업목표가 SMART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
|              |   | 사업내용과 구성요소가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잘 구성되었는가?                              |
| 성과정보<br>분석   | <b>성과정보 관리</b><br>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br>평가역량을 가졌는지 여부                       | 사업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
|              |   | 성과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가?  |
| 사업집행<br>과정분석 | <b>사업 디자인 적절성</b><br>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사업 목표-구성<br>요소 일관성 확인하고 취약요인 발견            |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논리모형을 잘 설정하였는가?                                       |
| 이해관계<br>분석   | <b>사업관계자 합의 형성/의견수렴</b><br>사업관계자와 평가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br>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사업관계자 범위 파악, 이해관계자와 평가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출처: 행정연구원(2020)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사업기획 분석은 사업목표의 명확성을 SMART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 내용이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한다. 또한 성과정보의 분석은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한편, 사업집행과정 분석에서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잘 설정하였는지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분석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평가목표와 자료수집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평가한다.

결과지향적 평가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량적 분석으로는 재해저감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며, 정성적 분석으로는 인식제고(안전성 상승, 사회적 파급성, 경제적 파급성), 사업만족도(적절성, 만족도)로 측정하여 평가한다.

〈표 III-18〉 결과지향적 평가의 요소

| 결과지향적 평가     |  |  |
|--------------|--|--|
| 이론기반 평가방법 설계 | <b>효과 매커니즘 탐색</b><br>집행과정에서 사업의 효과가 어떤 범위,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본 사업수단 이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색) |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의 개념화 효과 측정 방법론 탐색 (선행연구 분석, 관련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등) |
| 효과 인과성 분석    | <b>정량적 효과분석</b><br>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적절한 정량분석 방법 사용하여 변화 측정하고 있는가  | 재난피해저감효과 (직접, 간접)<br>경제적 효과 (외부, 파급)                               |
| 효과 발생 요인 탐색  | <b>정성적 효과 분석</b><br>추가적인 정성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발생 요인들을 탐색하고 있는가  | 인식 제고효과<br>사업만족도 상승 효과   |

출처: 행정연구원(2020)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재난안전사업을 사고유형별 분류가 아닌 정책활동의 측면에서 사업의 속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9〉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화

| 유형                             | 세부 유형                  | 내용  | 효과에 대한 정의  |
|--------------------------------|------------------------|---|--|
| 재난안전<br>시설·장비<br>사업<br>(H/W사업) | 정비, 기능<br>강화           |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시설 정비 또는<br>기능 강화 (주로 계속 사업)                 | 재난 피해 미발생 시설 안전성<br>강화, 사고발생 감소  |
|                                | 건설, 신축                 | 일정 기간 내 완료하는 시설 사업<br>(복구 사업 포함)                        | 효과 정의 불명확<br>공정율만 점검   |
|                                | 유지관리                   |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개보수)                                       | 자연재해 피해예방, 시설 안전성<br>강화, 안전사고 발생 감소, 수해자<br>만족 증가                        |
|                                | 장비 구입,<br>구축, 운영       | 관측(감시, 예측) 설비 및 일반 장비<br>구입, 구축 및 운영                    | 장비구입을 통해 생산한 관측<br>정보의 정확도, 시스템 사용자<br>및 국민 만족도                          |
|                                | 용품/설비<br>보급, 확충        | 안전강화를 위한 용품, 설비 보급 및<br>확충(화재, 범죄, 환경오염 예방 시<br>설 등 포함) | 사고 인명피해 감소<br>사고발생 감소<br>안전에 대한 국민만족도 증가                                 |
|                                | 정보시스템<br>구축, 운영        | 재난안전정보 구축 및 공개 등  | 안전정보 정확성 증가<br>안전에 대한 국민만족도 증가   |
| 재난안전<br>관리사업<br>(S/W사업)        | 안전<br>모니터링             | 안전실태 모니터링 및 감독<br>(점검, 인증, 감독 등)                        | 사고 감소, 사고피해 감소<br>안전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가                                       |
|                                | 교육훈련,<br>인력양성          | 재난안전관리 인적 자원 양성   | 업무역량 강화, 교육효과성 향상,<br>고객 만족도 향상, 안전에 대한<br>국민 만족도 향상                     |
|                                | 보험·비용                  | 보험 및 대책비 등 비용지급유형 사업                                    | 피해복구 대응시간 단축   |
|                                | 홍보,행사,<br>서비스 등        | 재난안전 의식 개선 활동<br>(직접적 안전관리보다 간접적 효과)                    | 수해자 만족도<br>수해자 변화  |
|                                | 자료 조사,<br>연구,<br>분석·제공 | 안전제도, 기준 등의 설계, 수정·보완<br>등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               | 정보에 대한 만족도<br>자료 및 정보 품질도  |
|                                | 기타<br>재난안전관<br>리 활동    | 구급구조/응급 활동, 안전강화 지원<br>및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 재난 안전<br>관리 활동   | 사고 대응시간 단축<br>사고 구조실적 증가<br>사고 감소, 인명피해 감소<br>안전관리 이행비율 증가<br>수해자 만족도 증가 |
| 조직 운영<br>사업                    | 전담부서<br>운영             | 독립 조직이 아닌 재난안전관리 조직<br>(부서) 구축 및 운영                     | 교육 및 정보 만족도<br>인식 개선, 인명피해 감소  |
|                                | 기관 운영                  | 독립 조직(기관) 운영  | 사고감소<br>사망자 수 감소   |

출처: 행정연구원(2020)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 5.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sup>3)</sup>

### 1) 국가건강검진사업 개요

정부는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51년 학생 건강검진, 1953년 근로자 건강검진이 도입된 이후 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등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진항목도 심뇌혈관질환과 암질환까지 포함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연간 지출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하는데 향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정책적으로 점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 2) 건강검진사업 평가 개선연구 수행결과(국회예정처, 2021)

국회예산정책처(2021)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현황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현황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연혁과 종류, 추진체계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 정부계획, 그리고 건강검진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 및 재정규모에 대해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에서는 검진설계(검진항목, 검진주기 등), 대상자 관리, 검진기관 관리, 사후관리,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검진으로 우리나라는 「건강검진기본법」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암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3) 김태은(2021),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표 Ⅲ-20〉 국가건강검진사업 분석대상 및 주요 내용

| 분석 대상   | 주요 분석 내용   |
|---------|--|
| 검진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검진항목은 없는가?</li> <li>- 검진대상자에 필요한 검진항목으로 구성되었는가?</li> </ul> </li> <li>· 검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주기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개인의 건강관리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li> </ul> </li> </ul>  |
| 대상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미수검자는 얼마나 되는가?</li> </ul> </li> <li>· 사각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검진이 필요하나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는 없는가?</li> </ul> </li> </ul>   |
| 검진기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li> </ul> </li> <li>· 민간건강검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건강검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부의 관리체계는 어떠한가?</li> </ul> </li> <li>· 검진전문기관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만 전문으로 실시하는 검진전문기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li> </ul> </li> </ul>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는가?</li> <li>- 수검자는 검진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li> </ul> </li> <li>· 검진결과의 접근성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검진결과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li> </ul> </li> </ul>  |
| 추진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체계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영유아 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만 별도로 운영·관리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가?</li> </ul> </li> </ul>   |

국민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①개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검진 설계 필요, ②검진 사각지대 관리 필요, ③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검진기관 관리 강화 필요, ④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등과 같이 사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6. 산재예방사업 평가관련 연구

### 1)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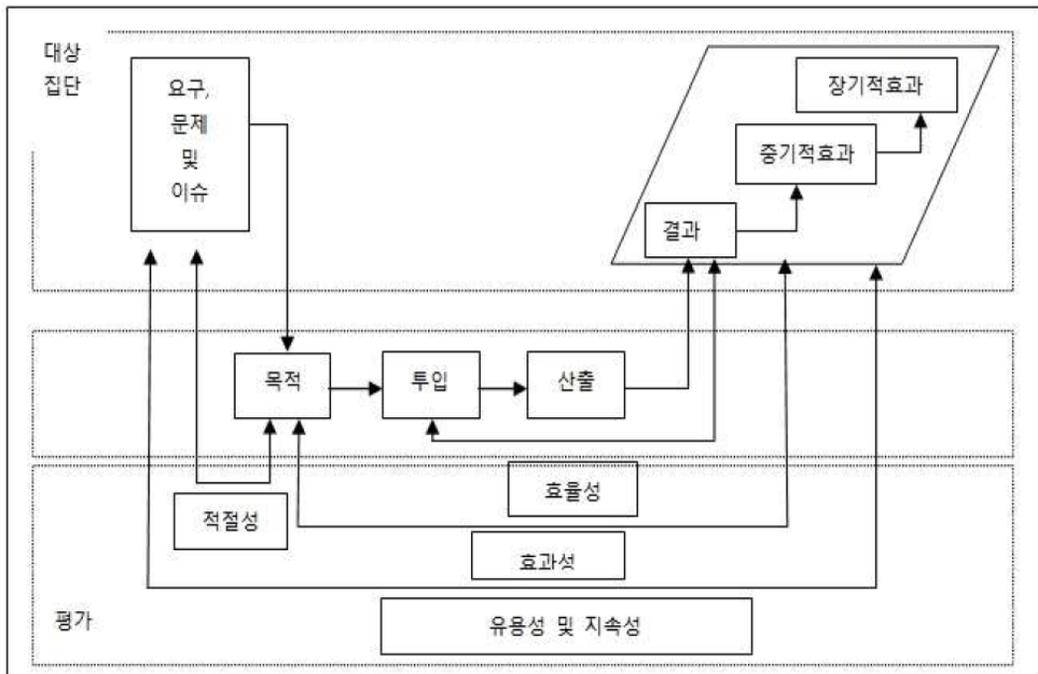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에서는 2012년 기준 공단이 직접 혹은 위탁한 산재예방사업 25개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사업 평가를 위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05)의 평가지표 중에서 국내 고용보험사업 평가에 사용되었던 6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는데, 먼저 유럽위원회(2005)에서 제시한 기간별 평가이슈와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III-21〉 유럽위원회(2005)의 사업평가 척도기준

| 평가이슈                         | 정의   | 사전 | 중간 | 사후 |
|------------------------------|--|----|----|----|
| 적절성<br>(relevance)           | 중재의 목적이 요구문제나 시사된 이슈에 적절한 정도                     | ○  | ○  |    |
| 일치성<br>(coherence)           | 사업로직이 모순되지 않거나 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들과 모순되지 않는 정도 | ○  |    |    |
| 경제성<br>(economy)             | 자원이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적절한 양과 질로 이용될 수 있는 정도     | ○  | ○  | ○  |
| 효과성<br>(effectiveness)       | 설정된 목적이 성취되는 정도                                  | ○  | ○  | ○  |
| 효율성<br>(efficiency)          |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성취되는 정도                       | ○  | ○  | ○  |
| 지속성<br>(sustainability)      | 긍정적인 효과가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정도                     |    |    | ○  |
| 유용성<br>(utility)             | 효과가 요구문제와 제기된 이슈에 상응하는 정도                        |    |    | ○  |
| 일관성<br>(consistency)         | 다른 경제, 사회 또는 정책분야로 긍정적/부정적 일출효과가 최대화/최소화되는 정도    | ○  | ○  | ○  |
| 분배효과<br>(allocative effects) | 정책의 불균형적 부정적/긍정적 분배효과가 최소화/최대화되는 정도              | ○  | ○  | ○  |
| 수용가능성<br>(acceptability)     | Stakeholders가 일반적으로 정책 및 제안되거나 채택된 특수도구를 수용하는 정도 | ○  | ○  | ○  |

출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I」

과거의 평가는 Black box model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투입(inputs)에 대한 산출(outputs)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을 때 수행 직후 그 나타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lack box evaluation model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과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의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수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소위 중재와 결과 사이에 black box를 여는 차원의 평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은 사업수행 로직에 관한 요소와 개념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평가의 기본적인 이슈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식적으로 그 정의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



[그림 III-8] 사업수행 로직에 관한 도식

출처: European Commission(2005)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유럽위원회(2005)가 제시한 평가지표와 국내 고용보험사업 평가에 사용되었던 평가지표들을 혼합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지표를 최종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 ① 적절성(relevance): 사업 목표의 사업수요 충족성과 사업의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② 효율성(efficiency): 투입요소(inputs)가 산출(outputs)과 중간결과(result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 검토
- ③ 일관성(consistency): 사업의 계획 및 목표와 일치하게 사업이 수행되는 정도 검토
- ④ 효용성(efficacy): 사업의 대상자가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검토
- ⑤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 결과(impacts)가 사업의 일반 및 특정 목표 (장·단기) 달성에 기여한 정도 검토
- ⑥ 지속성(sustainability):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종료 후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의 지속성 검토

〈표 III-22〉 산재예방사업 평가단계별 평가관점

| 국가   | 평가관점 |     |     |     |     |     |
|------|------|-----|-----|-----|-----|-----|
|      | 적절성  | 효율성 | 효과성 | 효용성 | 일관성 | 지속성 |
| 계획단계 | ○    |     |     |     |     |     |
| 집행단계 |      | ○   |     |     | ○   |     |
| 성과단계 |      |     | ○   | ○   |     | ○   |

출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I

평가단계에 따라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관계자, 전문가, 사업대상 등의 조사와 산업재해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표 Ⅲ-23〉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 단계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평가내용 세부   | 방법   |
|----|-------|-------------|---|--|
| 계획 | 적절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br>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도출<br>matrix map                                |
|    |       | 성과목표 부합성    | 사업목표 설정의 합당성 및 구체성<br>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
|    |       |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br>대상 사업장 선정의 적합성<br>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br>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br>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br>사업성과 지표 평가방법의 적절성 |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
| 집행 | 효율성   | 제도 인지도      | 실시 및 미실시 사업장의 인지도   | 설문 조사  |
|    |       | 예산의 효율성     | 예산 규모의 적정성  |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
|    |       | 사업 진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br>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br>사업수행 실태 모니터링  |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
|    | 일관성   |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 | 사업 수행의 일치성  |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
| 성과 | 효과성   | 사업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에 따른 달성도(수행실적)  | 실태 조사 및 보고서를 통해<br>수행기관 및 대상사업장 조사                           |
|    |       | 사업의 유용성     | 사업의 장단기효과(재해감소, 파급효과 등 포함)  | 실태 조사 및 보고서를 통해<br>수행기관 및 대상사업장 조사<br>산재자료                   |
|    | 효용성   | 사업 만족도      | 수혜자 만족도<br>경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만족도  |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
|    | 지속성   | 사업 효과의 지속성  | 효과의 지속성(장비, 인력, 교육, 제도정착 등)   | 실태 조사 및 설문 조사<br>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
|    |       | 사업의 지속성     | 과거 시행된 사업평가<br>제반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지속<br>가능성   | 과거 자료 분석<br>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br>보고서 및 산재자료이용<br>관계자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출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I

## 2) 기타 안전보건공단 평가연구보고서

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평가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책평가는 크게 투입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그리고 영향평가로 구분해볼 수 있다.

-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 투입된 정책노력의 정도(인력, 예산 등)
-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 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 : 정책으로 인한 단기·장기적 산출과 성과
-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 정책으로 발생한 부수효과와 파급효과

한편, 산재예방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과거 14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주로 정책 집행과정을 검토하는 과정 평가와 정책수혜대상의 참여도 증대, 수혜 정도, 만족도 증가, 산업재해 감소 등을 검토하는 결과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재예방사업 시행에 의한 투입, 과정, 결과, 영향 평가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개별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세부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 프로세스의 도입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효율성 평가(비용편익 분석 등)의 고도화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 수행에 의한 직접 성과 외에도,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에는 생산이나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파급효과 검토의 병행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다각적인 정책·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목표달성도(goal attainment) 조사, 논리모형 기반의 포괄적 검토, 실험설계 기반의 무작위 대조군 평가, 수혜자 추적조사(만족도 조사, 인식 개선 등), 사업 효과의 비시장가치 평가(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의 검토 및 적용이 요구된다.

〈표 Ⅲ-24〉 개별 산재예방사업 평가관련 선행연구 목록

| 연번 |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수행기관)   |
|----|--|
| 1  |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클린사업장 조성사업<br>(2008, 한국개발연구원)                                     |
| 2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연구<br>(2014, 한국노동연구원)                                       |
| 3  |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br>(2018, 부산가톨릭대학교)                              |
| 4  |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br>(2019, 동아대학교)                                 |
| 5  |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br>(2020, 경성대학교)                                 |
| 6  | 2021년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br>(2021, 부산가톨릭대학교)  |
| 7  |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 - 평가지표 개발<br>(20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8  |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Ⅱ - 산업보건분야(근골격계질환, 건강센터 등)<br>(201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9  |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Ⅲ - 산업보건분야(특검, 측정 비용지원 사업 등)<br>(201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10 |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Ⅳ - 교육 및 홍보사업<br>(201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1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성재해예방 사업 평가<br>(2016, 한국노동연구원)                                    |
| 12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합리적 작업환경측정<br>수수료 설정에 관한 연구<br>(2018, 한국산업정보연구소) |
| 13 | 건강디딤돌 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br>(2019, 부산가톨릭대학교)                                       |
| 14 | 건강 디딤돌 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br>(2020, 한국산업정보연구소)                                  |

〈표 III-25〉 산재예방사업별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공단 수행)

| 사업                                | 효과(성과)의 정의   |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
| 클린<br>사업장<br>조성<br><br>시설<br>용자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감소(재해율, 재해자, 사고사망만인율)</li> <li>· 고용증대</li> <li>· 수혜사업장 만족도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사업장 산업재해 및 고용증가분석(DID분석)</li> <li>· 비용편익 및 순현재가치 분석</li> <li>·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재해율, 재해자)</li> <li>· 고용증가율</li> <li>· B/C ratio, NPV</li> <li>· 사업 만족도</li> </ul>   |
| 안전<br>투자<br>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감소</li> <li>·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li> <li>· 생산성 증가, 비용절감</li> <li>· 고용 및 매출액 증가</li> <li>· 수혜사업장 만족도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사업장 산업재해 및 고용증가분석</li> <li>· 비용편익 및 순현재가치 분석</li> <li>· 생산성, 매출액, 만족도 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예산, 지원조건 타당성)</li> <li>· 과정(사업운용 적정성, 만족도, 청렴도)</li> <li>· 산출(재해감소율, 안전관리 체계구축)</li> <li>· 결과(생산성 증가율, 비용절감)</li> <li>· 영향(고용증가율, 매출액 증가율)</li> </ul> |
| 패트롤<br>현장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감소(사고사망만인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사업장 산업재해변화(DID분석) 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사망만인율 감소</li> </ul>  |
| 위험성<br>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순응도(규제의 인식, 인정, 준수)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설문조사</li> <li>· 비용편익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순응도(인식, 인정, 준수)</li> <li>· B/C ratio</li> </ul>  |
| 소규모<br>기술지원<br>(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재해율, 사고 재해율, 질병재해율, 사망 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사망만인율) 감소</li> <li>· 수혜 사업장/기관 만족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사업장 산업재해변화(DID분석) 분석</li> <li>· 성향점수매칭(PSM)</li> <li>· 사업장 설문조사</li> <li>· 비용편익 및 순현재가치 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재해율, 사고재해율, 질병재해율, 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사망만인율)</li> <li>· B/C ratio, NPV</li> <li>· 사업 만족도</li> </ul>  |
| 디딤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측정과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의 참여 증대 및 사고확률 감소</li> <li>· 수혜사업장/근로자/기관 만족도 상승</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측정의 건수, 참여율, 사고확률 분석</li> <li>· 사업장 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율</li> <li>· 사고확률</li> <li>· 사업 만족도</li> </ul>  |
| 근로자<br>건강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센터의 자발적 방문</li> <li>· 방문근로자 건강상태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근로자 설문조사</li> <li>· 비용편익분석</li> <li>· 정책결정자, 공급자, 사업 수혜자 FGI</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참여율 및 건강 개선</li> <li>· B/C ratio</li> </ul>  |

### 3)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평가지침 구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인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I」과, 그밖에 안전보건공단 본부의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로 수행한 사업평가연구보고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큰 틀에서의 사업평가 체계와 방향은 정부의 평가체계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겠지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들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자면 사업의 특성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사업의 평가를 살펴보면 우선 재난사고 유형과 사업 속성별 유형, 사업개수 및 예산의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시설 측면은 하드웨어로 관리 측면은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여 사업내용에 맞게 성과를 정의하고 있다. 이때,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적 평가와 결과 지향적 평가를 구분하고 있는데 구성적 평가는 대부분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반면, 결과 지향적 평가는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방법론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계획과 집행 단계에서의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과차원에서의 평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린 사업장 조성이나 시설용자지원은 재해율 및 재해자수, 고용증가율, 순현재가치, 사업 만족도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반면, 패트롤 현장점검의 경우 사고 사망만인율의 감소 정도가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재해감소나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같은 산재예방의 효과 외에 고용증가율이나 사업의 만족도, 생산성 증가율 등이 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산재예방사업의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우선 구성적 평가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성적 평가에서는 사업기획, 성과정보, 집행과정, 이해관계자 등 계획과 집행 단계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산재예방사업의 단계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적 평가보다 결과지향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개별 평가항목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 전반적인 사업의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평가항목 간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사업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내용에서 최종목표와 관련성이 높은 중간목표들을 선정하여 성과의 측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정보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 IV. 산재예방사업 현황분석





## IV. 산재예방사업 현황분석

### 1. 산재예방사업 현황

#### 1) 2022년 산재예방사업 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산재예방사업은 2022년 기준 약 1조 2천여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4개의 단위 사업과 11개의 세부 사업, 36개의 내역 사업, 그리고 58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2022년도 사업계획추진지침 사업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현행 산재예방사업은 크게 ①안전보건 재정지원, ②안전보건 기술지원, ③안전문화 기반조성, 그리고 ④안전보건 연구개발 등 4가지 단위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기준에서 분류된 산재예방사업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단위로 살펴보면, 먼저 ①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은 ①클린사업장 조성지원과 ②산재예방시설 용자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되고,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크게 1.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과 2.안전투자 혁신사업, 3.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4.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의 4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내내역사업 기준으로 보면 (1)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사망사고 고위험시설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지원을 위해 2021년보다 254.5억원 증가한 1,197.07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2021년 시작한 (2)안전투자 혁신사업(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위험기계기구와 공정개선을 위해 3,271억원을, (3)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는 (1)과 (2)의 사업 진행 후 사후관리를 위해 4.046억원을 투입, 그리고 (4)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에는 사후기술지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335.7억원 증가한 총 3,563.28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②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③업종별 재해예방과 ④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⑤유해작업환경 개선, ⑥근로자 건강보호, ⑦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의 5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 ③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다시 내역사업 기준으로 5.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6.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7.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8.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구성되는데, 내역사업 5.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은 패트롤 현장점검과 산업안전 현안 적시대응, 사고조사, 패트롤카 운영,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내역사업 (5)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14,218백만원) 사업과 (6)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12,630백만원), (7)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443백만원), (8)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704백만원), (9)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1,223백만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 6.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의 내내역사업 (10)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은 (초)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끼임, 화학, 추락 등 예방지원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사고사망 예방지원을 포함하여 총 45,023백만원을 투입한다. 내역사업 7.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는 5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11)공정 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에는 위험경보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90백만원, (12) 중소 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사업에는 500백만원, (3)안전보건 종합진단은 500백만원, (1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에 720백만원, (15)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에 86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내역사업 8.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총 6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16)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 총 2,632백만원을, (17)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KOSHA-MS 인증)사업 역시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 지원하며 총 2,124백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18)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는 531백만원을, (19)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은 207백만원, (20)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893백만원, 민간기관 위탁으로 수행되는 (2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는 총 2,240개소에 대해 5,800백만원, 마지막으로 (22)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은 내역사업 5.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의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세부사업 ④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내역사업 기준으로 9.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10.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11.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2.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로 구성되는데, 내내역사업 기준 (2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은 총 56,030건 3,863백만원, (24)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은 총 6,795건 3,013백만원, (25)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은 총 1,050건 239백만원, 그리고 (265)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는 33,700건에 대해 총 74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세부사업 ⑤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은 4개 내역사업과 10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 13.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로 대표되는 내내역사업인 (27)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27,089백만원) 및 (28)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30,888백만원)과 더불어 (29)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사업(715백만원), 그리고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2,669백만원)과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와 개선지원(4,890백만원)을 포함하는 (30)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역사업 14.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은 내내역사업 (31)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3,276백만원)으로 구성되며, 내역사업 15.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는 (32)전자산업 e-SAMS 운영(914백만원), (33)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300백만원), (34) 소규모 석면해체 작업 모니터링(724백만원), (35)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1,413백만원)로 구성,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16.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은 자율보건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기술지원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원하는 (36)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6,300백만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 ⑥근로자 건강보호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8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각 내역사업에 각 1개의 내내역사업이 대응된다. 내역사업 17.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사업은 내내역사업 (37)번에 해당하며 2022년 20,45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역사업 18.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은 내내역사업 (38)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질식재해예방 현장지원과 고독성 TOP10물질 집중관리,

그리고 산업보건 현황 적시대응 사업이 포함된다. 19.직업병 역학조사 정도관리는 직업병으로 추정되는 질병 발생 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역학조사(1,755백만원)와 더불어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기관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수행(1,133백만원)하는 사업으로 내내역사업(39)에 대응된다.

내역사업 20.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사업은 내내역사업 (40)번에 대응되며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932백만원)와 흡입독성시험 및 평가(2,008백만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내역사업 21.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은 내내역사업 (41)번에 해당되며,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안착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목적으로 감정노동 고위험업종 약 2,000개소의 지원을 위해 약 39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민간위탁사업이다. 내역사업 22.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는 내내역사업 (42)와 연결되는 수시 사업이며 (1,892백만원), 23.옥외근로자 마스크지원은 (43)번에 해당하며 마스크 약 285만개를 지원(2,527백만원)한다. 마지막으로 내내역사업 (44)에 대응되는 24.직업성 질병 감시 및 지원 사업은 약 7,36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부사업 ⑦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는 내역사업 25번과 내내역사업 (45)에 대응되며 예산규모는 약 405백만원이다.

③안전문화 기반조성사업은 안전문화 교육과 콘텐츠 개발, 안전문화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⑧안전보건 문화정착과 ⑨산재예방 시설건립, 그리고 ⑩안전보건 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3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 ⑧안전보건 문화정착사업은 총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역사업 26.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사업은 다시 내내역사업 기준 3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46)안전보건교육 사업은 패트를 현장점검과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정·정책교육, 기본교육으로 구성되며 연간 총 6,19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47)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사업은 약 130,000명을 대상으로 약 6,235백만원의 예산을, (48)안전보건콘텐츠 개발 사업은 총 614종의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3,5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역사업 27.전문교육과정 운영사업은 내내역사업(49)이며, 직무·성능검사 교육, 특정교육, 전문화교육,

전문역량향상 교육, 이러닝 교육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4,09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역사업 28.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컨설팅,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포함하는 (50)안전문화사업(1,116백만원)과 추락·끼임 예방 집중홍보, 이슈 대응 및 산재취약계층 홍보, 온라인 및 내부매체 홍보, 지역특성화 홍보를 포함하는 (51)홍보사업(5,884백만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내역사업 29.민간 재해예방 활동지원의 (52)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은 연간 총 2,30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사업 ⑨산재예방시설건립에서는 2022년도에 30.여수 안전체험교육장 신축, 31.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 32.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사업이 진행중이며, 각각 내내역사업 (53)~(55)에 대응되고,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14,403백만원, 4,843백만원, 3,760백만원이다. 세부사업 ⑩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 내역사업 33(내내역사업 56)에 대응되며, 고객중심의 산재예방 정보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운영(1,187백만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개선(3,560백만원), 그리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1,117)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④안전보건 연구개발 사업은 세부사업 ⑩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와 국제협력사업, 그리고 산업재해 통계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응되는 내내역사업도 3개 사업으로 동일하다. 내역사업 34.산업안전보건연구(내내역사업 57)에서는 연 66건의 산업안전보건연구 수행(3,969백만원)과 5회의 안전보건국제학술지(SH@W) 발간(297백만원) 사업을 진행하며, 35.국제협력사업(내내역사업 58)은 국외 유관 기관과의 기술협력(730백만원),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동반성장 지원(730백만원), 국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교류 활성화(188백만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36.산업재해통계(내내역사업 59)는 산업재해 현황통계의 분석과 제공, 특성화된 사고사망자 DB 구축과 분석, 산업재해통계 이용자 중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산업재해통계 활요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약 76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표 IV-1〉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 구조(1/3)

| 단위사업<br>(4개)      | 세부사업<br>(11개)   | 내역사업<br>(36개)             | 내내역사업<br>(59개)  |
|-------------------|-----------------|---------------------------|---|
| ①<br>안전보건<br>재정지원 | ① 클린사업장<br>조성지원 | 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                   |                 | 2. 안전투자혁신사업               | (2) 안전투자혁신사업  |
|                   | ② 산재예방시설<br>용자  | 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br>사업수행경비 | (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br>사업수행경비  |
|                   |                 | 4. 산재예방시설 용자              | (4) 산재예방시설용자  |
| ②<br>안전보건<br>기술지원 | ③ 업종별<br>재해예방   | 5. 사고성재해<br>집중관리(공단)      | (5)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br>(6)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br>(7)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br>(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br>(9)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                   |                 | 6. 사고성재해<br>집중관리(위탁)      | (10)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                   |                 | 7.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1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br>(12) 중·소규모 사업장<br>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                   |                 |                           | (13) 안전보건종합진단<br>(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br>안전진단  |
|                   |                 |                           | (15)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                   |                 | 8. 자율안전관리<br>체계구축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br>(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br>(18)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
|                   |                 |                           | (19)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
|                   |                 |                           | (20)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                   |                 |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                 |                           | (22)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표 IV-2〉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 구조(2/3)

| 단위사업<br>(4개)      | 세부사업<br>(11개)                | 내역사업<br>(36개)               | 내내역사업<br>(59개)                |                       |
|-------------------|------------------------------|-----------------------------|-------------------------------|-----------------------|
| ②<br>안전보건<br>기술지원 | ④ 안전인증 및<br>안전검사             | 9.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2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
|                   |                              | 10.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24)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
|                   |                              | 11.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 (25)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                       |
|                   |                              | 12.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 (2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                       |
|                   | ⑤ 유해작업<br>환경개선               | 13. 작업환경측정 및<br>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 (27)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                   |                              |                             |                               | (28)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                   |                              | 14.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 (29)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
|                   |                              |                             |                               | (30)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                   |                              |                             |                               | (31)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
|                   | 15. 유해작업환경<br>개선 및 평가        |                             | (32) 전자산업 e-SAMS 운영           |                       |
|                   |                              | (33)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                       |
| ⑥ 근로자<br>건강보호     | 1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br>기술지도(위탁) |                             | (34) 소규모 석면해체 작업 모니터링         |                       |
|                   |                              |                             | (35)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
|                   |                              |                             | (3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br>기술지도(위탁) |                       |
|                   |                              | 17. 근로자 건강센터                | (37) 근로자건강센터                  |                       |
|                   |                              | 18.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38)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
|                   |                              | 19. 직업병 역학조사 정도관리           | (39)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
|                   |                              | 20.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40)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
|                   |                              | 2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            |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             |                       |
| ⑦ 원하청 산재<br>통합관리  | 25.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                             | (42)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                       |
|                   |                              |                             |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
|                   |                              | (44)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                       |
|                   |                              | (4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                               |                       |

〈표 IV-3〉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 구조(3/3)

| 단위사업<br>(4개)      | 세부사업<br>(11개)       | 내역사업<br>(36개)             | 내내역사업<br>(59개)   |               |
|-------------------|---------------------|---------------------------|--|---------------|
| ③<br>안전문화<br>기반조성 | ⑧ 안전보건<br>문화정착      | 26. 안전보건교육 및<br>미디어개발     | (46) 안전보건교육<br>(47)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br>비용지원<br>(48) 안전보건콘텐츠 개발 |               |
|                   |                     | 27. 전문교육과정 운영             | (49) 전문교육과정 운영   |               |
|                   |                     | 28.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 (50) 안전문화사업<br>(51) 홍보사업                                     |               |
|                   |                     | 29.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           | (52)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
|                   | ⑨ 산재예방<br>시설건립      | 3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 (53)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               |
|                   |                     | 31. 노후안전체험교육장<br>시설개선     | (54)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               |
|                   |                     | 32. 익산 안전체험교육장<br>시설개선    | (55)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               |
|                   | ⑩ 안전보건관리<br>정보시스템운영 | 33. 안전보건관리<br>정보시스템운영     | (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               |
|                   | ④<br>안전보건<br>연구개발   | ⑪ 안전보건<br>연구 개발<br>및 국제협력 | 34. 산업안전보건연구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                   |                     |                           | 35. 국제협력사업   | (58) 국제협력사업   |
| 36. 산업재해통계        |                     |                           | (59) 산업재해통계  |               |

## 2) 산재예방사업 추진체계

2022년도 산재예방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사고사망만인율 0.3‰ 진입’과 ‘자율안전관리체계의 기반 마련’을 주요 추진목표로 하여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사고사망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의 균형있는 추진’, ‘모든 국민이 안전한 권리를 누리도록 취약계층 안전보건 지원 강화’, ‘위드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미래 안전보건 인프라 강화’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응하는 4대 세부 추진과제는 ①사고사망 감축 실행체계 고도화, ②뉴노멀 안전보건생태계 구축, ③취약계층 안전보건 격차 완화, ④미래 안전보건 인프라 강화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의 ‘사고사망 감축 실행체계 고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사업의 현장작동성 강화’, ‘민간위탁사업 전면개편’, ‘일터에서의 안전관행 개선’을, ②의 ‘뉴노멀 안전보건생태계 구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지원’, ‘중대재해 조사 지원체계 강화’, ‘공공 및 민간재해예방 역할 강화’를, ③의 ‘취약계층 안전보건 격차 완화’ 과제에서는 ‘중·소기업 親안전화 지원 강화’, ‘소외계층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산재 취약계층 교육·콘텐츠 강화’를, 마지막으로 ④의 ‘미래 안전보건 인프라 강화’ 과제에서는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서비스 구축’, ‘위험 산업별 미래대응 인프라 확충’, ‘산업보건서비스 기반 강화’의 세부 실천과제들로 구성된다.

〈표 IV-4〉 2022년도 안전보건공단 사업추진 체계

**추진 목표**

**사고사망만인을 0.3‰ 진입 + 자율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

※ <'21> 820명대, 0.43‰ → <'22> 730명대, 0.39‰ → <'23> 620명대, 0.33‰

**추진 전략**

- 사고사망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의 균형있는 추진
- 모든 국민이 안전한 권리를 누리도록 취약계층 안전보건 지원 강화
- 워드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미래 안전보건 인프라 강화

**4대 중점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 사고사망 감축 가속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지원   |   |
|---|---|
| <p><b>1</b> 사고사망 감축 실행체계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핵심사업의 현장작동성 강화</li> <li>② 민간위탁사업 전면개편</li> <li>③ 일터에서의 안전관행 개선</li> </ul>           | <p><b>2</b> 뉴노멀 안전보건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지원</li> <li>② 중대재해 조사지원체계 강화</li> <li>③ 공공 및 민간재해예방 역할 강화</li> </ul> |
| 취약계층 포용과 디지털 안전보건시대로의 대전환   |   |
| <p><b>3</b> 취약계층 안전보건 격차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기업 親안전화 지원 강화</li> <li>② 소외계층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li> <li>③ 산재 취약계층 교육·콘텐츠 강화</li> </ul> | <p><b>4</b> 미래 안전보건 인프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서비스 구축</li> <li>② 위험산업별 미래대응 인프라 확충</li> <li>③ 산업보건서비스 기반 강화</li> </ul>  |

**이행 기반 강화**

| 협업 확대  | 혁신 선도   | 전문성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공공·민간 협력 강화</li> <li>• 사업 간 연계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 사업설계</li> <li>• 수행방식·프로세스 혁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의 산재사고조사 전문가</li> <li>• 안전보건 종합 컨설턴트</li> </ul> |

## 2. 산재예방사업 구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구축된 기본 평가지표에 포함될 세부 항목들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산재예방사업을 대상과 목적, 예산, 물량 등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의 수행 목적은 무엇인지, 설정한 (계량, 비계량)성과목표는 어떠한지, 사업의 대상이 누구이며, 소요되는 예산과 연간 계획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사업특성 분류를 수행하였다.

### 1)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수시 15,100개소(1,197.07억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에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표 IV-5〉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개요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
| 사망<br>사고<br>등<br>고위험<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li> <li>▶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li> <li>※ 고시개정시 지게차 포함 예정</li> <li>▶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li> <li>▶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기존방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li> <li>※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li> <li>·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li> <li>·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li> <li>·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li> </ul> </li> <li>▶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트론펙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Q-pass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사업장 당 70만원 까지(1회)</li> <li>▶ 지원비율 : 사업장 당 투자금액의 70%</li> </ul>   |

- ① **사업목적:** 고위험현장에 대한 감독 및 기술지원과 연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② **성과목표:** 지원사업장의 중상해사고 재해율 최근 4년간 평균치의 10% 감소
-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 사고사망 등 고위험 제조·서비스업종(건설업 본사 포함)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1)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3)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 미만), (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50인 미만 건설업본사)이다.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48,240백만원(수시 6,200개소)

지급금액과 지급조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급금액의 경우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단, Quick-pass의 경우에는 사업장당 최대 70만원,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기 지급 보조금을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 가능한데, 단,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사업 구분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최초지원 사업장 지급불가) (2)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 (3)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 (4)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 건수 상위 7개 업종<sup>1)</sup>)이다. 또한, 보조비율과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보조비율의 경우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으로 하는데, 공단본부에서 별도 선정한 대상 품목에 한한다. 또한 지급조건의 경우에는 안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관련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적정판정)할 시에 지급이 가능하다.

#### ⑤ 대상품목: 사망사고 예방품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설비

지급대상설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2)태양광 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3)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4)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감독 및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5)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1) ①화학비료제조업(20903), ②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③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④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⑤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⑥각종 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⑦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19종) 등이다. 여기서 19종은 ①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②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작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③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④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⑤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방호덮개, 울, 롤러기안전장치, 컨베이어 안전장치), ⑥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혹)), ⑦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주요구조부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⑧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⑨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동시설치 조건), ⑩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⑪ 추락 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⑫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⑬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⑭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⑮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⑯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⑰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⑲ 사회적 이슈품목 등이며, 여기에는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 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등) 및 한랭재난대책예방설비(온풍기 등) 등이 포함된다.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표 IV-6〉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사업 개요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
| 추락<br>방지<br>안전<br>시설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br>건설현장 | ▶ 시스템비계, 안전방<br>망 및 사다리형 작<br>업발판 등을 임대설<br>치·구입하고자 하<br>는 경우 |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br>※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br>까지<br>*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2개소를<br>1개소로 산정하되 고용부고시·공단<br>규칙개정 시 변동가능 |
|                      |                        |   |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br>※ 단, 공사금액 3억원미만(65%), 20<br>억원미만(60%), 시스템비계, 수직보호<br>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① **사업목적:** 건설현장 추락사망 감축을 위한 안전시설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본 사업의 목적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② **성과목표:** 지원사업장 중상해사고 재해율 최근 4년 평균의 10% 하향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 건설현장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이며, 여기서 전문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로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지원 제외 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된다.

**4 사업물량 및 조건:** 71,467백만원(수시 8,900개소)

지원 조건의 경우, 시스템비계와 수직보호망의 경우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건표는 본부 별도 시달)하고,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를 지원한다. 여기서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보조지원은 설치·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보조지원 가능하며,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의 경우 공단 지원금액에서 도급내역에 포함된 강관비계 금액, 안전방망 금액을 차감 후 지원한다.

**5 대상품목:**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본 사업의 지원대상품목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 여기에는 시스템비계와 안전방망, 그리고 사다리형 작업발판이 포함된다.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표 IV-7〉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 개요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
| 산업<br>단지<br>산재<br>예방<br>시설<br>설치 |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                                  |                                 |   |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1 사업목적:**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

본 사업의 목적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예방 시설(안전보건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② **성과목표:** (구체적인 명시 없음) 산재예방 및 일자리 창출

③ **사업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본 사업의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이 된다. 여기서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참여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완납사업장이어야 한다.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

본 사업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되, 설치비용 외 건축비·관리비·운영비는 보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지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이상(5년)으로 적정 유지·관리하는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여부 결정(투자계획 확인 시 운영방법 및 설치장소 확인)한다. (3)산재 예방시설 설치 공간은 신청인이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하며, 신청인의 소유건물 등을 설치공간으로 제공한 경우, 현재 시세기준으로 사후 관리기간(5년)에 해당하는 월세를 신청인 부담금(매칭비용)으로 인정(전세의 경우 주변의 월세 시세 인정)한다. (4) 신청인 자가소유의 설치공간을 제공한 경우 또는 소유주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5년간 해당 건물(토지)의 사용에 관해 소유주와 협의된 것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시설(물품) 설치 및 지원 장소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심사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한다. (5)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투자된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이외의 장소\*(공간)의 경우라도 지원 가능한데, 특정 사업장내에 설치하더라도 타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산업단지 경계(도로 건너편 등)를 벗어나더라도 산업단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6)지급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지급 가능한데, 단,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보험기간은 투자완료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한다(투자완료일이 연기되는 경우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 제출). (7)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비투자기간은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하며, 단, 투자지연 등으로 기간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가능하다.

지급한도는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이며, 신청 산업단지에서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지급금액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지급품목에 대한 조달가격(조달수수료 포함), 온라인 조회가격, 원가계산표준서 또는 비교견적금액(3개소 이상, 최저금액 제시 업체 선정) 등 제출하면 보조금 지급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투자완료 확인 시)된다. (1)전체 지급품목에 대한 총 소요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전체 지급품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보조지급 금액을 정산한다. (2) 전체 지급품목에 대한 총 소요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품목 조달가격(조달 수수료 포함) 또는 온라인 조회가격(보조지급금액 산정기준 참조)으로 산정하되, 조달가격이나 온라인 가격이 조회도지 않는 경우 실거래 가격자료로 산정한다. (3) 주문제작 형태의 지급품목은 원가계산서 검토금액 또는 낙찰금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보조금 지급금액 산정 시 부가세는 제외하며, 개별 사업장이 설치공간을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관리·운영하는 권한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임하여야 한다.

**5 대상품목:**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록·샤워·세탁시설 등)

본 사업의 지급대상품목은 (1)안전보건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이며, 안전보건도서 등 관련자료, 자료게시대, 책장, 상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냉난방기(단품) 등이 포함된다. (2)안전보건 교육시설로 빔프로젝트, 모니터, 방송장비, 책상, 의자, DVD·CD 등 교육교재, 교육용 컴퓨터, 체험교육 설비, VR 등 가상체험 설비, 냉난방기(단품) 등이 포함된다. (3)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로 헬스장, 탁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수영장,

에어로빅실 등, 냉난방기(단품) 등이며, (4)목욕·샤워시설, 오염물 세척 등을 위한 세탁시설 등이 있다.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품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 후 본부로 공문 요청하면 본부 품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 나. 안전투자혁신사업

**① 사업목적:** 미인증, 노후 위험기계(9종) 교체 및 고위험 3대 업종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사고사망 감축 기여

본 사업의 목적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미 확보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화되거나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정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며, 추진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고용노동부고시(산재예방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이다.

**② 성과목표:** 지원대상 사업장 최근 4년간 평균 사고사망자수 10% 감소

**③ 사업대상:** 위험기계(9종) 소유·사용사업장, 뿌리공정 및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제조업종

위험기계 교체사업의 대상은 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 보유 사업장이 되며, 여기서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 6종은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이다. 또한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일 경우,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 고소작업대로 신규 교체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위험공정 개선사업의 경우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과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뿌리공정 보유사업장의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사업장을,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의 사업장이 된다.

**4 사업물량 및 조건:** 3,271억원(수시 5,857개소·대)

위험기계 교체사업의 지급조건은 사업대상 조건에 비례하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당 사업 신청년도에 용자금 또는 보조금 지급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비율은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한다.

위험공정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지급조건은 역시 사업대상 조건과 동일하나. 지원대상 뿌리기술(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휴대용·이동식 기계·기구 등),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핸드리프트, 적재대, 공구대(공구함), 작업대, 이동대차 등 단품 기계·기구류 등), 그리고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 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비율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총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5 대상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 위험공정개선

위험기계 교체사업 중 (1)이동식 크레인은 '09.9.30일 까지 생산된 기계에 대해 '20.12.31까지 해당 위험기계를 소유한 사업주에 한정하여 '카고형'으로 지원하며, (2) 고소작업대는 '09.6.30일 까지 생산된 기계를 '20.12.31까지 해당 위험기계를 소유한 사업주에 한정하여 '차량탑재형'으로 지원한다. (3)리프트의 경우 권동식, 유압식, 윈치식 리프트 사용 사업장에 대해 '유압식'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4)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은 '91.12.31. 까지 생산된 기계 사용 사업장에 대해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리기를 제공한다. 한편, 위험공정 개선사업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품목은 없으며,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와 더불어 개선사항, 소요예산, 도면 등을 명시 하도록 되어있다.

## (2) 산재예방시설 용자

### 다. 산재예방시설용자

① **사업목적:** 자금여력 부족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용자금지원  
본 사업의 목적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규칙)이다.

② **성과목표:** 지원대상 중상해재해율 최근 4년간 실적평균의 10% 하향

③ **사업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예방 목적의 법인 또는 민간기관  
용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과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며, “용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사고사망 다발 고위험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한편, 용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이 불가한데,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563.28억원(수시 2,020개소)

지원금액의 경우,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이며, 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지원조건은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⑤ **대상품목:**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교체, 방호조치 등

지원대상 설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이며,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포함되는 옵션사항 등은 지원 가능하다. 주요 설비로는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

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이 있으며 사망사고 다발 10대 위험설비(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프레스, 공작기계)와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설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며, 그 외 지원설비 해당 여부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명시된 품목을 준용한다.

## 2)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

### (1)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가.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본 사업의 목적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현장 및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패트롤 현장점검

① **사업목적:**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작업·기계설비에 대한 불시점검 (Patrol)을 통하여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작업·기계설비에 대한 상시 순찰 및 불시점검(Patrol)을 통하여 불량현장은 반드시 개선시킨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② **성과목표:**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전년대비 15% 하향

③ **사업대상:**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50인 미만 전체 제조업 사업장 등

본 사업의 대상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전체 제조업 사업장으로 하되, 지자체의 안전점검, 기술지도 등 실시(지킴이 순찰 및 민간위탁 포함)

사업장(현장) 중에서 불량 사업장은 포함하고, 지방관서와 안전보안관,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 요청받은 위험현장의 경우에는 50억 이상도 패트롤 현장점검이 가능하다.

**④ 사업물량 및 조건:** 70,000회(통합 7,175백만원)

본 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및 지역별 취약업종으로 사업물량을 통합 관리하되 건설업을 60%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⑤ 대상품목:**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추락 등 사망위험요인

패트롤 현장점검 기술지원 서비스의 제공 품목은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므로 다소 포괄적이거나, 업종별 핵심 점검사항(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추락)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사망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 점검(패트롤 현장 점검 실행계획 등 활용, 별도 시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락과 관련해서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방망, 개구부덮개 설치, 그리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상작업의 경우 끼임, 위험기계의 방호조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를, 유지·보수 등 비정형작업의 경우에는 끼임 위험기계의 운전정지, LOTO(Lock Out:잠금장치/Tag Out: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감시자) 배치 여부 등, 보호구와 관련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착용 및 상시관리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산업안전현안 적시대응**

**① 사업목적:** 기획점검, 지역특화사업, 조선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산업안전현안 적시대응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 ① 기획점검: 첨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기반 점검 및 공정개선, 사고발생 및 신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사고사망 감축 기여
- ② 지역특화사업: 지역별 산재취약 사업장 및 노동부 등 유관기관 점검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경영체계 구축

- ③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기술지도: 선박건조 및 수리사업장에 사업장 규모 및 작업특성별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및 사고사망 재해 감소에 기여
- ④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지자체-고용노동부와 산재예방 활동 협업을 통한 사고사망자수 감소에 기여

## 2] 성과목표:

- ① 기획점검: 점검사업장의 점검후 사고사망만인율 20% 감소
- ② 지역특화사업: 핵심 취약직업·취약직종(가맹본부, 택배업, 퀵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항만하역업, 임업 등 사고사망자수 20% 감소
- ③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기술지도: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사고사망자 20% 감소
- ④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발주·수행 사고사망 20% 감소

## 3] 사업대상:

- ① 기획점검: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등 보유사업장
- ② 지역특화사업: 노동부 등 유관기관 점검·조사 등 요청사업장, 취약직종·작업(가맹본부, 택배업, 퀵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항만하역, 임업 등
- ③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기술지도: 조선업체 (완성배 및 블록, 수리조선 및 출장수리 사업장)
- ④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발주공사·수행사업

## 4] 사업물량 및 조건: 12,000회 (통합 7,175백만원)

- ① 기획점검: 2,500회,
- ② 지역특화사업: 9,000회,
- ③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기술지도: 500회
- ④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수시

## 5] 대상품목:

- ① 기획점검: 산업용 로봇 사용공정에 대한 방호장치(안전스위치, 이네이블,

방호대책, 안전센서, 안전제어시스템, 안전PLC 등), 교시작업, 정비·보수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

- ② 지역특화사업: 사망사고 취약분야 지역특화(지역특화 기술지도, 유관기관 지원), 산업안전 현안 적시대응(특고종사자 등 산재취약업종 집중관리, 항만패트롤 등)
- ③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기술지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원청 및 협력사 수준평가, 완성배 사업장 기술지도, 블록사업장 기술지도, 수리조선소 및 출장수리사업장 패트롤), 조선업 직종별 안전관리 모델 개발, 조선업 안전보건 파트너십 강화 등
- ④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총괄운영팀 구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순찰·점검 추진, 지자체 공무원 안전교육, 안전보안관 교육, 산업재해 현황제공 등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고조사

① **사업목적:** 사고원인조사, 사고정밀조사, 반복사고 재발방지 기획조사로 구분하여 사고원인 도출 및 예방대책 제시

② **성과목표:**

- ① 원인조사: 법·제도 및 사업수행 방식 개선 20건 또는 전년대비 20% 상향
- ② 정밀조사: 사고조사 결과 정보 공유 : 6건
- ③ 재발방지 기획조사: 기획조사 결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및 사업수행 방식 개선방안 발굴 20건 또는 전년대비 20% 상향

③ **사업대상:**

- ① 원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정의에 따른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정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 조사 요청하는 재해
- ② 정밀조사: 중요사고(2명 이상 사망, 사망 1명 포함 3명 이상 사상사고) 및 사고 심각성, 사회적 관심 등이 높은 사망사고(붕괴, 화재폭발, 기계설비사고 중 심각성 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

- ③ 재발방지 기획조사: 사고 모니터링 결과, 중대재해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여 같은 유형으로 반복되는 사고, 환경변화·신기술 도입에 따른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수시 선정

**4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793건), 5,068백만원

- ① 원인조사: 수시(750건)
- ② 정밀조사: 수시(40건)
- ③ 재발방지 기획조사: 3건

**5 대상품목:**

- ① 원인조사: 중대재해 원인조사 지원, 사고정보 공유, 재해조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중대재해조사 ERP 사용 및 고도화
- ② 정밀조사: 사고정밀조사, 과학적 사고조사 기반구축, 사고조사 관련 세미나 및 사례발표, 사고사례집 제작·보급
- ③ 재발방지 기획조사: 실태조사 및 심층분석(사고발생 사업장, 동종업종 사업장, 유사현장, 업종 및 지역 협의회, 유관기관 등 실태조사를 통한 사고의 심층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현장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고조사 결과 환류(재해조사의견서 문서 본문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중앙사고조사단으로 제출)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패트롤카 운영**

- 1 사업목적: 기술사업 효과성 극대화, 상시점검을 통한 가시성 향상, 안전에 대한 의무감 향상, 사고사망감축 및 현장 작동성 제고
- 2 성과목표: 연평균 운영률 70% 이상 수준 관리
- 3 사업대상: 사망사고 예방 집중패트롤, 연중 상시순찰, 지자체 협업강화, 재정 지원사업장 발굴지원, 안전캠페인 등 행사지원
- 4 사업물량 및 조건: 287대(5,068백만원)
- 5 대상품목: (1)안전보건 재정지원(클린,용자,안전투자), (2)위험성평가, (3)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패트롤 현장점검, 산업안전 현안 적시

대응(기획점검), 산업안전 현안 적시대응(지역특화 사업 등)), (4)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5)중·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6)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7)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8)PSM 심사확인, (9)화학사고 위험경보제, (10)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11)고독성 Top 집중관리, (12)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 (13)질식재해예방 현장지원, (14)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인증, 안전검사, (15)중대재해 조사, (16)건설 현장 드론 안전보건점검 확대 사업에 폭넓게 적용

####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① **사업목적:** 건설공사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위험도 예측”기능을 통해 “고위험 현장 및 작업(공정)을 추출”하여 적기 기술지원 및 경보 발송 등 산재 예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② **성과목표:**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고위험 사업장 검색 및 추출 기능 구현
- ③ **사업대상:** 공사 진행 중인 전국 건설현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식(1,486백만원)
- ⑤ **대상품목:**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발(건설정보 통합DB 구축, 정보시스템 개선, 건설현장 종합모니터링 기능 구현 및 시스템 구축, 적기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건설안전보건 APP 개발

- ① **사업목적:** APP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건설현장 직종별 근로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상황을 분석하여 근로자에게 위험경보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
- ② **성과목표:** 건설안전보건 APP 개발 및 기능구현
- ③ **사업대상:** 120억 이상 건설현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건설안전보건 APP 개발 1식(489백만원)

- ⑤ **대상품목:** 근로자의 위치, 직종 및 현장의 작업상황(공정율, 주작업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설안전보건 APP개발, GIS기반 건설현장 통합관계 플랫폼 연동, 서비스제공(직종 및 작업별 자료, 날씨정보 등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송부,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

#### 나.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① **사업목적:**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건설업과 조선업부분 반복 순찰 활동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사망재해 감축에 기여

- ①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건설업 실무경력을 갖춘 만 55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반복 순찰활동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사망재해 감축에 기여
- ①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조선업 안전보건 지식·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활용하여 사고사망비율이 높은 완성배·블록업체의 협력업체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수리조선 사업장의 불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활동 향상을 통한 재해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 ①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대상 건설현장 사고사망만인율 70% 이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전체 건설현장 대비)
- ①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사고사망자 20% 감소

#### ③ 사업대상:

- ①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열악한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
- ①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완성배·블록제작 사업장의 협력업체 및 수리조선(출장수리)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400명 채용, 순찰 118,700회, 12,630백만원

- ①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330명, (순찰·모니터링) 100,000회
- ①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70명, (순찰) 18,700회

### ⑤ 대상품목:

- ①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중소규모 건설현장 순찰, 위험상황신고 지원 순찰,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순찰, 재정사업 시스템비계 설치확인 지원 병행순찰, (모니터링) 방지계획서 대상현장 확인 모니터링, 지붕공사·달비계작업 현장 집중 순찰
- ①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관할지역 내 사업장의 3대 사고사망 및 화재·폭발에 대한 집중 현장순찰

#### 다. 건설안전지표 산정

- ① **사업목적:** 공사 발주기관, 지자체, 건설 업체의 재현현황 및 산재예방 노력도 등을 파악·통보하여 사전재해예방 활동 강화
- ② **성과목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경영목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산업재해 감소 목표를 반영토록 유도
- ③ **사업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대상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건설안전지표 산정 4식, 443백만원
  - (1) 공공기관(339개사)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정
  - (2) 광역·기초지자체(245단체) 발주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감소율 산정
  - (3) 종합건설업체 1,000개사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 및 별표 1의 종합공사 시공업종(약 13,000개사) 및 전문공사 시공 업종 (약 57,000개사)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통보
- ⑤ **대상품목:**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정,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감소율 산정,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종합심사낙찰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통보

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① **사업목적:**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행 실태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에 제공되는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향상을 유도
- ② **성과목표:** '22년 사고사망만인율 0.27‰(505명) 달성에 기여
- ③ **사업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민간재해예방 전문기관

〈표 IV-8〉 2022년 기준 분야별 민간재해예방기관 수

| 분 야 |                | 기관수   | 법적 근거(시행규칙)           |
|-----|----------------|-------|-----------------------|
| 안전  | 안전관리전문기관       | 142개소 | 산안법 제21조(시행규칙 제17조)   |
|     | 안전인증기관         | 4개소   | 산안법 제88조(시행규칙 제118조)  |
|     | 안전검사기관         | 3개소   | 산안법 제96조(시행규칙 제129조)  |
|     | 자율안전검사기관       | 24개소  | 산안법 제100조(시행규칙 제134조) |
|     | 안전보건진단기관       | 33개소  | 산안법 제48조(시행규칙 제58조)   |
| 보건  | 보건관리전문기관       | 130개소 | 산안법 제21조(시행규칙 제17조)   |
|     | 작업환경측정기관       | 185개소 | 산안법 제126조(시행규칙 제191조) |
| 건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157개소 | 산안법 제74조(시행규칙 제91조)   |
| 교육  | 직무교육기관         | 29개소  | 산안법 제33조(시행규칙 제32조)   |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171개소 | 산안법 제33조(시행규칙 제32조)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73개소  | 산안법 제33조(시행규칙 제32조)   |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식(951개소), 704백만원
- ⑤ **대상품목:**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무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평가계획 공고, 평가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평가반 구성 및 워크숍, 평가실시(기관 방문 평가, 기술지원 사업장 현장 작동성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보고,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시스템 관리·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우수기관 유공자 포상

## 마.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① 사업목적:

- ① 빅데이터 산재예방 시스템 개발: 산재예방사업의 의사결정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구축
- ②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 중대재해조사의견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산재예방 사업에 활용
- ③ 빅데이터 운영기반 마련: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과학적인 산재예방 정책 지원 및 빅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 ② 성과목표:

- ① 빅데이터 산재예방 시스템 개발: 고위험 사업장 자동 선정, 인공지능 스마트 검색 시스템 개발
- ②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 의견서 디지털화, 전산시스템 구축
- ③ 빅데이터 운영기반 마련: 수요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 구축

### ③ 사업대상:

- ① 빅데이터 산재예방 시스템 개발: 안전보건공단 데이터베이스
- ②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 2016년 이후 작성된 조사의견서 전체
- ③ 빅데이터 운영기반 마련: 안전보건공단 운영플랫폼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식, 1,223백만원

- ① 빅데이터 산재예방 시스템개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시스템개발 1식
- ②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 재해조사의견서 활용시스템 구축 1식
- ③ 빅데이터 운영기반 마련: 수시

### ⑤ 대상품목:

- ① 빅데이터 산재예방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운영기반 마련 고위험사업장 자동 선정 모델 개발, 스마트 검색 모델 개발, 공단 시스템, 고용노동부 노사누리 등과 연계를 위한 ISP 추진, 방향성 검증을 위한 의견 수렴
- ②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 본격 추진,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활용 전산 시스템 설계·구축
- ③ 빅데이터분석 운영 기반 마련: 내·외부 데이터 수집·정제·연계, 빅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 (2) 사고성재해 집중관리(민간위탁)

본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장(서비스업 포함)의 사고사망 직접원인(끼임, 화학, 추락 등)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사망을 예방하는 데 있다.

### 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소규모 사업장 끼임사고 등 예방지원

- ① **사업목적:**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 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도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최근 4년 평균의 10% 하향
-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임업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95,000회(32,000개소), (통합 45,023백만원)
- ⑤ **대상품목:** 민간재해예방기관(수행기관) 선정, 사업장 선정 및 배정, 기술지도 수행인력 관리, 사업장 지도사항(기술지도의 내용과 방법, 교육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개선관리),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수수료 지급

####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지도

- ① **사업목적:**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관리

- 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 재해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기술지도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10% 감소(최근 4년 평균 대비)
  -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 제조업(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 제외)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0,000회(10,000개소), (통합 45,023백만원)
  - ⑤ **대상품목:** 민간재해예방기관(수행기관) 선정, 사업장 선정 및 배정, 기술지도 수행인력 관리, 사업장 지도사항(기술지도의 내용과 방법, 교육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개선관리),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수수료 지급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초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지원

- ① **사업목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추락사고 예방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지도대상군에서 추락 사고사망자 전년대비 12% 감소
- ③ **사업대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산재미가입 현장 포함)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40,000회(100,000개소) (통합 45,023백만원, 수수료 규모 21,000백만원)
- ⑤ **대상품목:** 민간재해예방기관(수행기관) 선정, 사업장 선정 및 배정, 기술지도 수행인력 관리, 사업장 지도사항(기술지도의 내용과 방법, 교육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개선관리),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수수료 지급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소규모 서비스업 사고사망 예방지원

- ① **사업목적:**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수준이 높은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을 집중 지도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기술지도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10% 감소(최근 4년 평균대비)
-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 서비스업(건물관리업 및 음식업)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62,500회(25,000개소) (통합 45,023백만원, 수수료규모 3,750백만원)

- ⑤ **대상품목:** 민간재해예방기관(수행기관) 선정, 사업장 선정 및 배정, 기술지도 수행인력 관리, 사업장 지도사항(기술지도의 내용과 방법, 교육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개선관리),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수수료 지급

### (3)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① **사업목적:**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이전·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 20% 감소
- ③ **사업대상:**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8개 업종 및 51종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600건(594백만원)
- ⑤ **대상품목:** 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기술지원, M등급 사업장 기술지도, 사고결과분석(CA), 대형 화학사고 대응 집중 기술지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고도화 및 작동성 강화,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사업장 파악·관리 및 신산업·신기술 대응,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전문성 향상, 중대산업사고 원인조사,

#### 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① **사업목적:** PSM 사업장의 정비·보수 등 위험징후를 3개월 주기로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수준별 3단계(관심·주의·경계) 위험경보를 발령하여 체계적인 등급별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화학사고 등 대형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 ② **성과목표:** 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 전년대비 20% 하향
- ③ **사업대상:** PSM 확인이 완료된 단위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000회(396백만원)
- ⑤ **대상품목:** 위험정보 수집, 징후 분석, 컨설팅, 경보등급 확정, 경보 발령, 등급별 사후관리, 경보 등급 조정, 돌발 위험작업 위험경보제, 안전투자 지원사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연계, 빅데이터 구축

#### 다. 중소기업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① **사업목적:**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대상 제외) 및 누출·화재·폭발 사고 다발 반응기 등 공정 설비 또는 유사 공정 보유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맞춤형 기술지도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
- ② **성과목표:** 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20% 감소
- ③ **사업대상:**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대상 제외) 중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000개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000개소 병행 실시) (50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현장 위험요인 개선 확인(화재·폭발·누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방안 이행 현황 파악, 현장 위험요인 개선 확인(화재·폭발·누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위험요인추가 개선 방안 및 최종 결과 설명(강평)

#### 라. 안전보건종합진단

- ①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명령진단 또는 사업주 자율적 진단요청에 의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유해위험성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로 산업재해 예방
- ② **성과목표:** 시스템진단 정착 노력도(선진분석기법 및 인력양성)
- ③ **사업대상:**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 명령진단 및 자율신청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150건) (500백만원)

- ⑤ **대상품목:** 공정, 설비중심 기술적 진단과 더불어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진단 수행

마.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① **사업목적:**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검사수행 사업장의 사고사망자수 전년대비 20% 하향
- ③ **사업대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소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268건(72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설치검사(가동 전), 정기검사(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 대상은 1년, 비대상은 2년), 수시검사(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안전진단(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실시)

바.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① **사업목적:** 화학설비의 노후화 징후 등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 유도 및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② **성과목표:** 비파괴검사장비(PAUT), 부식위험성평가 프로그램(RBI, KOSHA-CRA) 활용도(사업물량 대비 10% 이상)
- ③ **사업대상:**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설립 후 20년 이상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69개소(868백만원)
- ⑤ **대상품목:**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기술지원(사업장 방문을 통해 건전성 관리체계, 손상관리 등에 대한 현장 및 관리서류 확인 후 기술지원 보고서 작성·발송),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 (4)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제조업 등

- ① **사업목적:**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종)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사전에 작성·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시운전 단계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 확보
- ② **성과목표:** 심사·확인사업장 평균 사고재해율 수준관리(제조업 대비 40%)
- ③ **사업대상:** 법 시행령 제42조 1항 및 2호에 따른 13개 업종 또는 5종 설비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8,000회) (통합 2,632백만원)
- ⑤ **대상품목:** 계획서 접수/심사·확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건설업

- ① **사업목적:** 계획서 대상 현장의 착공 전 심사 및 시공 중 이행 확인을 통한 대형사고 위험작업 집중관리 및 시스템 비계 지원 연계를 통한 계획서 현장 사망사고 감소
- ② **성과목표:** 계획서 확인 현장 직전 3개년도 평균 사망자수 대비 10% 감소
- ③ **사업대상:**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건설공사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0,000회 (통합 2,632백만원)
- ⑤ **대상품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과 「심사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심사·확인 실시

##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① **사업목적:** 기존 KOSHA 18001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운 인증체계로 인증전환을 통한 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사업장의 인증신청을 심사하여 「KOSHA MS」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

- ② **성과목표:** 인증 사업장 중상해 재해자수 20% 감소
- ③ **사업대상:** 인증심사를 요청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240건(통합 2,124백만원)
- ⑤ **대상품목:** (신규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 심사 수행, (사후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 및 적용을 위한 중점 심사 수행, (연장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중점 심사 수행, (전환심사) KOSHA 18001 인증사업장의 KOSHA-MS 인증사업장 전환하는 심사 수행, 컨설팅 비용 지원

#### 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 ① **사업목적:** 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협력업체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지원
- ② **성과목표:** 신규 참여 모기업 20% 향상 및 협력업체 사고사망 15% 감소
- ③ **사업대상:** 5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모기업(건설·조선업 제외) 및 사내·외 협력업체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900개소(531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컨설팅, 공생협력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

#### 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

- ①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분야 및 경영관리분야 지침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국내·외 안전보건 기술기준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수준 높은 자율안전보건 활동 여건조성에 기여
- ② **성과목표:** 기술·경영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 100건

- ③ **사업대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사항 및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적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침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00건(207백만원)
- ⑤ **대상품목:** 분야별 기술지침 정비소요 발굴, 기술지침 제·개정 안건 작성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 운영, 공표 및 보급, 국제 기술위원회 참석, 경영관리 가이드라인 지침화 및 직원교육

#### 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① **사업목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공일터 조성 및 안전경영 정착 유도
- ② **성과목표:**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10% 감소에 기여
- ③ **사업대상:** 정부경영평가 및 관계부처 요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 129개소, 기타공공기관 41개소)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식(170개소) (893백만원)
- ⑤ **대상품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설명회 개최, 평가수행, 평가결과 통보 및 제출

#### 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② **성과목표:** 대상 기업의 전년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
- ③ **사업대상:**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 시공순위 201위 ~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제조, 기타) 2,240개소(각 4회, 총 8,960회), (건설) 수시 326개사 (5,800백만원)

- ⑤ **대상품목:** 민간재해예방기관(수행기관) 선정, 사업장 선정 및 배정, 컨설팅 수행인력 관리, 컨설팅 사항(컨설팅 내용과 방법, 교육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개선관리),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수수료 지급

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① **사업목적:**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활동 활성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② **성과목표:** 컨설팅 대상 사업장 재해율 10% 감소
- ③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컨설팅 및 인정 사업장 사고재해율 10% 감소
- ⑤ **대상품목:** 고위험 요인 발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구축 지원(컨설팅, 인정, 사후심사, 재인정, 산재예방요율제적용)

(5)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① **사업목적:** 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에 대하여 설계·제조·설치단계에서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여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생산·보급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인증대상 위험기계 사고사망자 감소,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기준 개정, 제조과정조사, 미인증·미신고 제품 시장감시 강화
- ③ **사업대상:** 유해·위험기계 제조업체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6,030건(3,863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인증(형식별), 안전인증(개별), 자율안전확인신고, 성능시험(제조과정 조사), 협의회 운영, 규격, 형식별 적용범위 재조정, 안전인증 기준 개정 건의, 인증기준 안내, 제도 개선 및 효율성 향상 연구용역 추진

## 나.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① **사업목적:** 방호장치·보호구 제품의 안전인증 기술기준 적합여부 평가 및 제조업체 신뢰성, 제품 안전성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생산·보급되게 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인증 고시 개선, 대상 확대, 미인증·미신고 제품 시장감시 강화
- ③ **사업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6,795건(수거성능시험 800건 포함) (3,013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인증(형식별), 자율안전확인신고, 수입품 통관요건 확인, 성능 시험(제조과정 조사), 불량제품의 제조·수입·유통방지 시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다.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 ① **사업목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한 제품(S마크)이 생산·보급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안전인증제도 개선 노력도, 성능수준 평가 지침(안) 마련
- ③ **사업대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업체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050건(239백만원)
- ⑤ **대상품목:**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인증기준 고도화 및 안전성 향상, 국외 인증기관 협업, 인증제품 시장 사후관리 강화, 간담회 및 기술지원

## 라.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 ① **사업목적:** 위험기계·설비 사용사업장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및 재해다발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지도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 ② **성과목표:** 안전점검사대상 위험기계 사고사망자 감소 노력도
- ③ **사업대상:** 안전점검사대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3,700건(74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재해다발기계 안전점검 기술 지도, 위험기계 및 설비 불시점검

(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가.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 ①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 및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이하 특검) 등 기초제도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 제도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등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측정 비용지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10% 향상
- ③ **사업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전수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65.45억원(측정:265.20억원/특검:300.25억원)
- ⑤ **대상품목:** (작업환경측정) 신규사업장은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되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기존 측정사업장은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사업장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1차, 2차 검사항목)

나.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① **사업목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도운영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유해공정 개선 및 작업환경측정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② **성과목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 평가로 신뢰성 확보
- ③ **사업대상:** 산안법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대상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650개소(715백만원)
- ⑤ **대상품목:** 평가대상 선정, 작업환경 평가(예비조사, 측정준비, 정밀평가), 평가결과 환류(사업장, 측정기관, 고용노동부)

## 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 ① **사업목적:** 근골격계질환이 다발하는 취약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 지원, 보호대 제공, 작업환경개선 지도를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유증상자 관리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을 예방(위탁사업)
- ② **성과목표:** 다발업종의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 '21년 대비 10% 감소, 건강 이상자 사후관리 연계율 10%
-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의 ①택배(특고), ②환경미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③마트(편의점 제외), ④가전제품 설치·수리(특고), ⑤소프트웨어기술자(특고) 및 ⑥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4,600개소(4,89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조사방법)고용노동부 고시, KOSHA Guide, 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 또는 필요시 정밀조사 실시(수행물량 20% 이상) (수행사항) ①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②근골격계 보호대 Kit 제공, ③작업환경 개선지도, ④근골격계 증상호소자 파악

## ■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 ① **사업목적:** 특고 등 현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나 과도한 업무,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어 직업 관련성 질병 우려가 큰 취약계층에게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 ② **성과목표:** 직업관련성 질환자 감소
- ③ **사업대상:** 환경미화원(20인 미만),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 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6.69억원(약 47,000명)
- ⑤ **대상품목:** 건강진단 비용의 80%(1·2차 검사항목)

### (7)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① **사업목적:** 당뇨, 고혈압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
- ② **성과목표:** 4대 고위험 업종의 뇌심혈관질환 사고사망만인을 하향
- ③ **사업대상:**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 노동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2.76억원 (심층진단 15,000명, 초고위험군관리 3,600명)
- ⑤ **대상품목:** (심층건강진단)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 진료지원 20,000원(전액), (초고위험군 관리) 건강상담, 추가검사, 사후관리

### (8)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

#### 가. 전자산업 e-SAMS 운영

- ① **사업목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직업병 예방 자율관리 지원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확장 및 현장 작동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 ② **성과목표:** 기능 강화형 센서세트 및 전용 플랫폼 개발 세부계획 마련
- ③ **사업대상:** 전자산업 생태계의 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스마트 화학물질 노출관리 시스템 IoT 인프라 강화(1식)
- ⑤ **대상품목:** 스마트 화학물질 노출관리 시스템 IoT 인프라(센서세트, 플랫폼, 분석·시험실) 강화, 복합물질 위험분석실, 센서세트 실증 시험실 설치·운영

#### 나.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①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 및 취약업체 집중관리를 통해 석면작업의 안전성 확보
- ② **성과목표:**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C등급 이하 업체비율 5% 감소

- ③ **사업대상:** 고용부 고시(제202-13호)「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835개소(300백만원)
- ⑤ **대상품목:**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석면 수입차단 협업검사

#### 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위탁)

- ① **사업목적:**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안전성 확보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석면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 ② **성과목표:**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C등급 이하 업체비율 5% 감소
- ③ **사업대상:** 고용부 고시(제202-13호)「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000개소(724백만원)
- ⑤ **대상품목:** 정밀 모니터링, 사전 모니터링, 추가 모니터링, 석면 수입차단 협업검사 등 수행

#### 라.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① **사업목적:**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 최소화(작업 환경 취약분야 발굴) 및 근로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축·운영
- ② **성과목표:** 사업 참여자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도 향상 비율(70.0)
- ③ **사업대상:** 알리미 서비스 제공 가능물질을 취급하는 전 업종·규모 사업장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165종)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2,000건(1,413백만원)
- ⑤ **대상품목:**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노출정보 대상발굴, 시료채취, 권역분석실로 시료채취기 회송, 시료 분석, 결과 통보, 전문 컨설팅 실시)

### (9)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가.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① **사업목적:**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 기관을 통해 종합적 보건관리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및 질식재해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지원사업장 보건관리 수준(실태평가) 10% 향상
- ③ **사업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800억 건설업 포함)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71,590회(6,300백만원)
- ⑤ **대상품목:** 민간재해예방기관(수행기관) 선정, 사업장 선정 및 배정, 기술지도 수행인력 관리, 사업장 지도사항(기술지도의 내용과 방법, 교육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개선관리),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수수료 지급

### (10) 근로자건강보호

- 가.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현행 안전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 보건관리  
(목표) : 건강지표 향상률(50.0), 정신건강 안정화율(82.0)

#### ① 사업목적:

- ①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 50인 미만 사업장 및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을 통한 취약계층 산업재해예방 기여
- ②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목격한 노동자의 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2차 피해 예방

#### ② 성과목표:

- ①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 특검 사후관리 실시율 20% 향상,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자의 건강지표 향상률 50%\* 달성

②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센터 이용자의 정신건강 안정화율 82%\* 달성

**③ 사업대상:**

①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 50인 미만 사업장 및 취약계층(50인 미만 사업장, 필수노동자, 특고,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②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중대사고를 직·간접적 경험 혹은 목격한 노동자

**④ 사업물량 및 조건:**

①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 센터(23개소), 분소(21개소)

②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직업트라우마센터(13개소)

**⑤ 대상품목:**

①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 전문 건강상담, 특수건강진단 위험군 사후 관리, 안전보건교육, 건강장애 예방 상담지원, 산재트라우마 관리,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전문 심리상담

②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직업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전문상담·집체교육 등 심리안정프로그램, 핫라인(1588-6497) 및 홈페이지 운영\

나.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질식재해예방 현장지원

① **사업목적:** 질식사고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질식 사망사고 예방

② **성과목표:**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수 감소율 전년대비 15%, 질식재해예방 안전장비 대여건수 증가율 : 전년대비 30%

③ **사업대상:** 질식사고위험 고위험업종 및 밀폐공간 작업사업장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000회(통합 3,373백만원)

⑤ **대상품목:** 고위험·취약사업장 기술지도, 안전장비대여, 질식재해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찾아가는 One-Call 서비스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고독성 Top10 물질 집중관리

- ① **사업목적:** 고독성 화학물질 집중관리를 통해 유해한 작업환경을 발굴하고 관리수준별로 차등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급성중독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
- ② **성과목표:**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수준별 산업보건서비스 연계 강화
- ③ **사업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급성중독 고독성 물질 10종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000회(통합 3,373백만원)
- ⑤ **대상품목:** 핵심보건조치 점검(화학물질 사용실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시료채취, 예방실태확인), 관리수준별 차등관리(시료 분석결과 공개 후)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

① **사업목적:**

- ①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 및 확인:**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기술사항 확인을 통해 도급승인 작업의 안전성 확보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②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노동부 지원 등):** 산업보건 현안 실태파악 및 적시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증진
- ③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가중(고객응대·직무스트레스) 및 감염우려가 높은 콜센터에 작업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콜센터 상담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보호
- ④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옥내·외 계절별 기후변화(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 기본수칙 이행지도 및 예방용품을 지원하여 건강장해 예방

② **성과목표:**

- ①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 및 확인:** 도급승인작업 화학물질 질식·중독에 의한 사망사고 Zero

- ②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노동부 지원 등): 없음
- ③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콜센터 상담사 건강보호 조치 개선율 30%
- ④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기후변화(온열 및 한랭질환)에 의한 재해자 감소율 : 전년대비 20%

### ③ 사업대상:

- ①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 및 확인: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 사업장
- ②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노동부 지원 등): 산업보건 현안 발생 업종
- ③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콜센터 및 상담사
- ④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건설현장 등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6,000회) 통합 3,373백만원 (마스크지 지원 제외) (285만개) 1,892백만원(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①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 및 확인: 수시
- ②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노동부 지원 등): 5,000회
- ③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1,500회
- ④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온열·한랭질환 예방지원 2,500회,  
(내내역사업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285만개

### ⑤ 대상품목:

- ①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 및 확인: 안전보건평가(요청 시), 도급승인 기준 적정성 여부 확인, 도급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 ②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노동부 지원 등): 고용노동부지원, 산업보건 전문가 협의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 ③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콜센터 현황DB 구축, 개선지원(상담사 정신 건강 보호조치), 확인지도, 기술자료 배포 및 홍보
- ④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온열·한랭질환 예방지원, 옥외노동자 마스크 지원

#### 다.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 ① **사업목적:** 직업병으로 추정되는 질병 발생 시 질병과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 즉 업무관련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례 및 정보 제공
- ② **성과목표:** 직업병 예방 기초자료 활용 증대
- ③ **사업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11건) (1,755백만원)
- ⑤ **대상품목:** 의뢰서 접수, 역학조사 수행, 결과심의 및 통보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안전보건서비스기관 정도관리

- ① **사업목적:** 검진기관 분석 실험실에 대해 정기적인 분석 능력 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검진 결과의 신뢰도 향상
- ② **성과목표:** 분석 신뢰성 확보
- ③ **사업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분석정도, 진폐정도, 청력정도), 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특수건강진단기관 관리 및 교육(정기 1회 / 수시 4회), 작업환경측정기관 연2회, 석면조사기관 연1회 (1,133백만원)
- ⑤ **대상품목:** 시료발송, 기관방문, 분석 및 결과접수, 통계처리 결과공고

#### 라.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 ① **사업목적:** 화학물질평가 실무위 운영, 화학물질 등의 정밀분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추가제공 및 최신성 유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적정성 평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확인, 화학물질 유해 시험평가,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시험평가,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 ② **성과목표:** 유해성 시험자료 건강유해성 정보, 화학사고원인 근거자료 제공
- ③ **사업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취급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228종/건 (932백만원)
- ⑤ **대상품목:** 대상물질 선정, 시험계획서 작성, 시험수행, 시험보고서 작성, 시험결과 활용

####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흡입독성시험 및 평가

- ① **사업목적:** 독성 미확인 산업화학물질의 호흡기 노출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위한 흡입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정보 조사(산업화학물질 유해성 규명, 실험동물 독성병리 검사실 운영, 우수시험기관 운영 및 신뢰성 보증)
- ② **성과목표:** 흡입독성시험 결과확보, 직업성 발암성평가에 기여
- ③ **사업대상:** 노동자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0건(2,008백만원)
- ⑤ **대상품목:** 대상물질 선정, 시험계획서 작성, 시험수행, 시험보고서 작성, 시험결과 활용

#### 마.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

- ① **사업목적:**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안착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고객응대종사자의 정신건강 보호
- ② **성과목표:** 고객응대근로자 예방조치 이행률 30% 향상, 고객응대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화 조성
- ③ **사업대상:** 감정노동 고위험업종(직종)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000개소(위탁)
- ⑤ **대상품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제도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지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캠페인

## 바.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① **사업목적:** (MSDS DB구축 및 관리) 화학물질의 MSDS 정보관리를 통해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품질향상, (MSDS 비공개 승인심사) 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통해 영업비밀 남용 방지, 화학물질정보 투명성 확대 및 근로자 알권리 확보
- ② **성과목표:** MSDS DB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승인 심사 체계 안정화
- ③ **사업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 ① MSDS DB구축 및 관리: DB 구축 및 관리 : 수시, 시스템 고도화 : 1식
  - ② MSDS 비공개 승인심사: 승인 심사 : 수시
- ⑤ **대상품목:** MSDS 공개/비공개 심사(MSDS 제출, 표준화, 전산화, 관리 등)

## 3) 안전문화 기반조성 사업

### (1)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 개발

#### 가. 안전보건교육

##### ■ 안전보건교육 - 패트룰 현장점검교육

- ① **사업목적:** 「패트룰 현장점검」사업과 연계하여 건설현장(추락), 7대 기인물 다수보유 사업장(끼임),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질식)의 사업주,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 책임인식 제고를 통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 ② **성과목표:** 패트룰 현장점검 연계 5만 개소 교육이수
- ③ **사업대상:** 패트룰 현장점검 대상사업장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0,000명(통합 6,197백만원)
- ⑤ **대상품목:**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교육 (점검 전), 맞춤형 현장교육 (점검 시), 사망사고예방 강화 교육 (점검 후)

#### ■ 안전보건교육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교육

- ① **사업목적:** 4대 악성 사망사고(추락, 끼임, 충돌, 질식)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중대재해 유형별 재해사례·예방대책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경영·관리자층 135천명 교육이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 ③ **사업대상:** 4대 악성 사망사고 위험 사업장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35,000명명(통합 6,197백만원)
- ⑤ **대상품목:** 고위험공사, 건설현장,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위험기계·설비 끼임사고예방, 기계식 주차장치, 폐기물처리업, 발전산업, 지게차 충돌사고, 항만하역업, 질식재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승강기 작업, 건설현장 화재·폭발, 건설현장 화재·폭발(관리자, 화재감시자), 사망사고감소 특성화 교육

####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① **사업목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율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 ② **성과목표:** 11.5천명 교육이수,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③ **사업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1,500명(통합 6,197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

#### ■ 안전보건교육 - 법령·정책교육

- ① **사업목적:** 법령, 정부 정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권한자에 대한

안전책임 실천 이행, 실무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역량강화 유도  
하여 사업장 자율재해예방체계 구축

- ② **성과목표:** 경영·관리자층 43.5천명 교육이수, 자율재해예방체계 구축
- ③ **사업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및 지자체, 외국인고용 사업장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43,500명(통합 6,197백만원)
- ⑤ **대상품목:**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최고경영자 및 위험현장 관리자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자격), 지자체(발주공사·수행사업) 담당자 교육, 안전보안관 교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외국인고용 사업주교육, 수강(이수)명령 교육

■ 안전보건교육 - 기본교육

- ① **사업목적:** 산재 취약계층 노동자, 특고·필수노동자, 장년·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체험교육, 사내교육, 이동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산재취약계층 31만명 교육이수, 안전의식 제고 및 사망감소
- ③ **사업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및 공공기관, 산재취약계층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10,000명(통합 6,197백만원)
- ⑤ **대상품목:** 산재취약계층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필수노동자 교육, 장년·여성노동자 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안전교육, 민간위탁 수행요원 교육, 안전체험교육, 사내교육, 이동안전교육,

나.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① **사업목적:**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취업 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
- ② **성과목표:** 교육이수
- ③ **사업대상:** (건설, 서비스) 산재 취약계층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30,000명(6,235백만원)
- ⑤ 대상품목: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 다. 안전보건콘텐츠 개발·보급:

- ① 사업목적: 실효성이 높은 안전보건 콘텐츠의 개발(DB구축, ICT 플랫폼, 평가관리체계) 및 보급(온/오프라인)하여 안전보건인식개선 및 전문성향상
- ② 성과목표: 콘텐츠 플랫폼 이용자 수(조회, 다운로드 포함) 전년대비 10% 향상, 콘텐츠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평가 점수 5% 향상,
- ③ 사업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민간재해예방기관, 범국민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614종(3,52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보건콘텐츠의 빅데이터 DB, ICT 콘텐츠 플랫폼 기능개선,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보급

### (2) 전문교육과정 운영

#### 가. 직무·성능검사 교육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 종사자의 직무수행(직무교육)과 사업장 안전성능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원 성능검사교육\*\*에 필요한 교육 실시
- ② 성과목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사망 만인율 0.3‰ 진입 지원
- ③ 사업대상: 사업장 유해 및 위험기계·기구 검사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직무교육 2,985명(5개 과정, 85회), 580명(11개 과정, 29회) (통합 4,09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내용), 성능검사교육(검사 대상 기계 및 설비별 실습위주의 교육)

#### 나. 특정교육

- ①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감독관, 노조간부 등 안전보건업무 관계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② **성과목표:** 안전보건업무 관계자의 교육과정 만족도 5% 향상
- ③ **사업대상:** 노동부 감독관, 노조간부, 공공기관 경영진 및 안전보건관계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070명(7개 과정, 31회)(통합 4,090백만원)
- ⑤ **대상품목:**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간부, 직업계고교사, 산업안전보건분야 직무연수, 안전보건교육담당자 워크샵,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체제 구축, 안전보건진단 전문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 다. 전문화교육: 안전보건 관계자의 재해예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 관계자 재해예방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 ② **성과목표:** 사고사망 만인율 0.3‰ 진입 지원
- ③ **사업대상:** 안전보건 관계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415명(63개 과정, 253회)(통합 4,09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관리, 안전공학, 건설안전, 산업보건 각 분야 교육

#### 라. 전문역량향상 교육

- ① **사업목적:** 고도의 전문가 육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자 등 내·외부 안전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 역량강화교육
- ② **성과목표:** 교육을 통한 현업적용도 85점 이상 달성
- ③ **사업대상:**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내·외부 안전보건전문가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통합 4,090백만원)
- ⑤ **대상품목:** 현업적용이 가능한 실무위주의 교육과정

### 마. 이러닝 교육

- ①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대국민 등을 대상으로 이러닝을 실시하여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 ② **성과목표:** 사업물량 목표 대비 125%(100,000명) 달성
- ③ **사업대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특고종사자 등 대국민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사업물량 : 80,000명(통합 4,09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인터넷 직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3)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 가. 안전문화사업

##### ■ 안전문화사업 - 안전점검의 날 행사

- ① **사업목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메시지 전달 및 지역별 안전점검 등 범사회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 중심 사회 분위기 선도
- ② **성과목표:** 사망사고 예방 및 범국민 안전보건의식 고취
- ③ **사업대상:** 관내 사업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360회)(수준향상프로그램과 통합 73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중앙 안전점검, 지역 안전점검(분기별), 안전점검 확산 활동

##### ■ 안전문화사업 -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① **사업목적:** 안전문화 수준을 사업장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보급·확산하여, 자율적 안전문화 향상 활동 유도
- ② **성과목표:** 참여 사업장 수 전년 대비 10% 향상
- ③ **사업대상:** 3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00개소(수준향상프로그램과 통합 73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의식 수준향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컨설팅 안내 및 지원,

## 설문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 및 활용도 강화

### ■ 안전문화사업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 ① **사업목적:** 산재예방유공자를 격려하고 안전보건전시회, 세미나·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망사고 감소 공감대 형성 및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② **성과목표:** 행사 종합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국민 참여 유도
- ③ **사업대상:** 사업주·노동자 및 일반국민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1회(기념식, 발표대회, 전시회 등)(386백만원)
- ⑤ **대상품목:** 기념식, 전시회, 세미나 및 발표대회, 지역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국제 안전보건행사 벤치마킹

## 나. 홍보사업

### - 추락·끼임 예방 집중홍보

### ■ 홍보사업 - 추락·끼임 예방 집중홍보

- ① **사업목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직접행동 가능한 사업주 대상 추락·끼임 예방 집중 캠페인 전개로 사망사고 위험인식 저변 확대
- ② **성과목표:** 사망사고 다발 유형(추락·끼임) 재해 감소에 기여
- ③ **사업대상:** 사업주(노동자는 서브타겟)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식(홍보사업 통합 5,584백만원)
- ⑤ **대상품목:** 방송매체, 생활접점 매체, 언론매체 등 홍보

### ■ 홍보사업 - 이슈대응 및 산재취약계층 홍보

- ① **사업목적:** 산업재해통계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타겟 맞춤형 홍보추진으로 사망사고 및 중상해 재해 감소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중상해 재해 감소 및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 ③ **사업대상:** 시기별·사회적 이슈 및 산재취약계층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홍보사업 통합 5,584백만원)
- ⑤ **대상품목:** (이슈 대응) 사업부서와 협업, 시기별·사회적 이슈에 맞는 산업 안전 메시지 전파, (산재취약계층) 타깃별 커뮤니티 및 지자체 등 접점을 보유한 기관·단체와의 협업 추진

■ 홍보사업 - 온라인 매체 및 내부매체 홍보

- ①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와의 양방향 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해 뉴미디어 및 내부매체를 활용한 사망사고 감축 콘텐츠 개발·확산
- ② **성과목표:** 안전보건 공감대 확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전년대비 10% 증가
- ③ **사업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0종(홍보사업 통합 5,584백만원)
- ⑤ **대상품목:** (온라인 매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핵심 키워드 중심 뉴미디어 홍보, 채널별 콘텐츠 제작으로 차별화 운영, (내부 매체) KOSHA 스튜디오, 산업안전전광판 및 안전보건홍보관을 활용

■ 홍보사업 - 지역특성화 홍보

- ① **사업목적:** 일선기관별 사망사고 및 중상해 재해감소 성과에 기여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사망사고 감축 및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② **성과목표:** 홍보 작동성 제고로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
- ③ **사업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0개소(홍보사업 통합 5,584백만원)
- ⑤ **대상품목:** 지역별 홍보 추진, 지역 언론사(TV, 라디오, 신문),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홍보

#### (4)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

##### 가.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① **사업목적:** 노·사 및 각종 단체 등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기여
- ② **성과목표:** 종합평가 연평균 상승률(0.2%) 대비 5% 향상
- ③ **사업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 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및 안전보건 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신문사, 방송사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사업선정 21.5억, 발표대회 1회, 평가용역 1식(2,309백만원)
- ⑤ **대상품목:**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

#### (5) 산재예방시설 건립

##### 가.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신설)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교육 효과가 높은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확충
- ② **성과목표:** 신규건립
- ③ **사업대상:**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총사업비 246.22억원, 지하1층, 지상2층 1개동, 여수 삼동지구 내
- ⑤ **대상품목:**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종 안전체험교육장

##### 나.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개선)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교육 효과가 높은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추진
- ② **성과목표:** 시설개선

- ③ **사업대상:** 호남 안전체험교육장,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호남) 총사업비 71억원, 지상 2층 1개동, 현재 부지, (중부) 총사업비 190.44억원, 지하1층, 지상 3층 1개동, 현 교육장 부지
- ⑤ **대상품목:** 노후 호남 안전체험교육장 전업종, 실내형으로 시설개선, 가건물 형태의 노후 중부(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을 전천후 체험교육장으로 개선

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신설)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교육 효과가 높은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확충
- ② **성과목표:** 신규건립
- ③ **사업대상:**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총사업비 225.30억원, 지하1층 지상2층 1개동. 익산 제4일반산단 내
- ⑤ **대상품목:** 익산 중서부(전북)권에 국내 유일의 IoT 기반의 안전체험교육장

(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가.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고객중심의 산재예방 정보서비스 제공

- ① **사업목적:** 정보화사업 표준절차 수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생성·취득·관리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적 품질관리활동 수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한 시스템 품질 개선
- ② **성과목표:**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최근 3년 실적대비 0.5% 상향
- ③ **사업대상:** 정보시스템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식(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사업과 통합 1,187백만원)
- ⑤ **대상품목:** 정보화사업 표준절차 수립 및 지침 제·개정, 산재예방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안정적인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운영

- ① **사업목적:** 통합정보시스템 및 나누리 ERP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업무수행의 정합성 향상,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스템 효율성 제고, 사용자 기능 개선 및 감리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 ② **성과목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간(Hr) 전년대비 5% 하향
- ③ **사업대상:** 정보시스템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4식(고객중심 정보 제공 사업과 통합 1,187백만원)
- ⑤ **대상품목:** 통합정보시스템, ERP 기능개선, K2B시스템(확장형-ERP) 기능개선, 그룹웨어 시스템 기능개선, 정보화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개선

- ① **사업목적:**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운영, 사무기기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사업 지원을 통한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 ② **성과목표:** SLA(서비스수준협약) 평가(점) 96점 이상 적합 판정
- ③ **사업대상:** 정보시스템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식 2회(3,56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산재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 비상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재기동 훈련,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정보화사업 지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① **사업목적:** 체계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활동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 ② **성과목표:**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전년대비 5% 향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수준 진단평가 결과 전년대비 5% 향상
- ③ **사업대상:** 정보관리시스템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식(1,117백만원)
- ⑤ 대상품목: 클라우드 기반 망분리,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점검

#### 4)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 (1) 산업안전보건연구

###### 가. 산업안전보건연구

- ① 사업목적: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사고사망 감소 및 증가하는 국민의 안전 보건에 대한 관심도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화학물질 분야 연구 수행
- ② 성과목표: 연구수행으로 전략목표 달성 기여, 산업현장 문제해결,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 현안해결 및 공공성 제고
- ③ 사업대상: 정부, 산업계, 학계, 대국민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연구과제 66건(3,969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보건정책연구, 산업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직업환경연구, 화학물질연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구축 연구

###### 나. 안전보건국제학술지(SH@W)

- ① 사업목적: 안전보건국제학술지(SH@W) 발간으로 국내·외 우수 연구결과를 발굴 및 확산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 ② 성과목표: 공단의 위상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산재예방에 기여
- ③ 사업대상: 정부, 산업계, 학계, 대국민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5회(297백만원)
- ⑤ 대상품목: 편집위원회 및 실무회의 구성·운영, 영문 국제학술지 발간(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최신 학술정보 및 정책제도 관련 연구 게재), 국문 초록집 발간, 국제학술지의 국내·외 홍보 및 보급

## (2) 국제협력사업

### 가. 국외 유관기관 기술협력:

- ① **사업목적:** 국제기구 회의 등에 참여하여 코로나 일상(With COVID19) 시대의 안전보건 분야 글로벌 이슈의 주도권 선점 및 공동 대응
- ② **성과목표:** (계량) 국외 협정 체결 기관의 만족도 전년 대비 105% 상승, (비계량) 기술협정 체결 프로세스 개선
- ③ **사업대상:** 공단과 기술협력체결을 체결한 기관 및 국제기구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35회(명)(73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안전보건 기술습득 및 정보교류,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예방문화 확산(예방문화위원회 운영, 재해예방특별위원회 등 ISSA 주관 회의 참가)

### 나.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동반성장 지원

- ①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침체된 아시아 개도국 안전보건시스템 회복력 지원
- ② **성과목표:** (계량) 글로벌 사회가치 기여도 전년대비 105% 상승, (비계량) 국내 개도국 공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 ③ **사업대상:**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유관기관, 국제기구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29회(개국)(730백만원)
- ⑤ **대상품목:** 국내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취업전 위탁교육기관 협력, 국내 공관 협력강화), 국제기구(ILO, WHO, ASEAN 등)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초청연수, 기술자문, 전문가 파견, 회의참가), 개발도상국 협정체결국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초청연수, 기술자문, 방문지원, 회의 참가, 협정체결, 디지털 자료보급)

#### 다. 국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교류 활성화

- ① **사업목적:** 국외 안전보건 지식 정보 보급·공유를 통한 산재예방활동 지원
- ② **성과목표:** (계 량) OSH with COVID-19 솔루션 전년대비 105% 상승, (비계량) 지식·정보 확산 및 정책제도 반영
- ③ **사업대상:**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및 관련 정책 담당자 등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64회(종, 개소)(188백만원)
- ⑤ **대상품목:**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공, 국외 기술규정, 자료 번역·보급, OSH Solution 운영, 영문 뉴스레터(KOSHA News) 발간, 국외 학회 및 유관기관 회원 가입 및 구독, 안전보건 정보교류 네트워크 사이트 운영

### (3) 산업재해통계

#### 가. 산업재해 현황통계 분석·제공

- ① **사업목적:**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② **성과목표:** 통계자료 활용건수(건) 최근 3년 표준편차(7.7) 이상 상향
- ③ **사업대상:** 정부, 산업계, 학계, 대국민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4회(분기별 1회)(산업재해통계 통합 76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월별 산업재해통계 생산, 대내·외 통계 정보 제공 및 자료 지원, 대국민 통계서비스 제공

#### 나. 특성화된 사고 사망자 DB 구축·분석

- ① **사업목적:** 산재사망 원인분석을 위한 특성화된 DB 구축·분석·제공
- ② **성과목표:** 사고사망자 분기별 DB구축 및 제공
- ③ **사업대상:** 정부, 산업계, 학계, 대국민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4회)(산업재해통계 통합 760백만원)

- ⑤ **대상품목:** (보상승인통계) 사고사망자 DB 분석·제공, (사고발생통계) 사고 사망자 DB 자료처리 지원

다. 산업재해통계 이용자 중심의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 ① **사업목적:** 산재통계 이용자가 산재통계자료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다각적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통계의 적시성 및 활용성 제고
- ② **성과목표:** 시의성·활용성 있는 통계정보의 활용
- ③ **사업대상:** 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1식(산업재해통계 통합 76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산업재해통계시스템

라. 산업재해통계 활용 지원

- ① **사업목적:** 산업재해조사표 산재통계 분석제공, 통계생산인력 및 이용자 교육
- ② **성과목표:** 산업재해 보고통계 시범생산 2회
- ③ **사업대상:** 안전보건공단
- ④ **사업물량 및 조건:** 수시(2회)(산업재해통계 통합 760백만원)
- ⑤ **대상품목:** 산업재해 보고(휴업)통계 생산, 산재통계 전문화 교육 및 이용자 교육, 산업재해유효확인서 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 3. 산재예방사업 투입·성과 분석

#### 1) 자료 분석의 전제

산재예방사업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사업평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과 대상, 물량과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성분류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단 예산분류 기준 121개 세부사업 중에서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물량과 예산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수시사업, 예산 미배정 등)와 건설안전보건 APP 개발, 이륜차 배달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2022년 신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0개, 내역사업 30개 내내역사업 54개, 세부사업 104개로 구성된다.

현행 산재예방사업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대분류와 11가지 세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 대분류(4): 재정지원, 기술지원, 문화조성, 연구개발
- 세분류(11): 지도점검, 컨설팅, 환경개선, 건강관리지원, 관리체계, 교육 문화, 교육지원, 보호구지원, 심사·확인, 연구개발, 평가·인증

또한 사업의 지원업종과 사업대상, 사업지원의 기준, 수행 주체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업종구분(11): 건설, 건설/서비스, 제조, 제조/건설, 제조/서비스, 서비스, 전업종, 내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 지원대상(5):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근로자, 내부, 유관기관
- 지원기준(5): 1억미만, 30억미만, 50억미만, 50인미만, 50인이상, 전규모
- 수행주체(3): 공단, 공단/민간, 민간

마지막으로 산재예방사업의 수행 담당부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노동부(8):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기준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재예방지원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직업건강증진팀, 화학사고예방과
- 공단(15): 건설안전실, 공공기관평가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혁신실, 국제협력센터, 디지털전략본부, 디지털전략본부/연구원, 미래전문기술원, 산업보건실, 산업안전본부, 산재예방소통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재정사업실,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2) 산재예방사업 기능별 사업 분포

〈표 IV-9〉 사업특성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분포

| 구분         | 기술지원      | 인프라       | 재정지원      | 총합계        | 비율          |
|------------|-----------|-----------|-----------|------------|-------------|
| 건강관리지원     |           |           | 3         | 3          | 3%          |
| 관리체계       |           | 14        |           | 14         | 13%         |
| 교육문화       |           | 22        |           | 22         | 21%         |
| 교육지원       |           |           | 1         | 1          | 1%          |
| 보호구지원      |           |           | 1         | 1          | 1%          |
| 심사·확인      | 5         |           |           | 5          | 5%          |
| 연구개발       |           | 5         |           | 5          | 5%          |
| 지도점검       | 23        |           |           | 23         | 22%         |
| 컨설팅        | 7         |           |           | 7          | 7%          |
| 평가·인증      |           | 17        |           | 17         | 16%         |
| 환경개선       |           |           | 6         | 6          | 6%          |
| <b>총합계</b> | <b>35</b> | <b>58</b> | <b>11</b> | <b>104</b> | <b>100%</b> |

사업목적을 11개 세분류로 구분하였을 때, 104개 세부사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도점검과 교육문화에 다수의 사업들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업종·대상·지원기준에 따른 사업분포

| 행 레이블                 | 근로자       | 근로자/<br>사업장 | 내부       | 사업장       | 유관<br>기관  | 총합계        |
|-----------------------|-----------|-------------|----------|-----------|-----------|------------|
| <b>A. 건설업</b>         |           |             |          | 8         |           | 8          |
| 1억미만                  |           |             |          | 1         |           | 1          |
| 50억미만                 |           |             |          | 2         |           | 2          |
| 전규모                   |           |             |          | 5         |           | 5          |
| <b>B. 건설/서비스(전규모)</b> | 1         |             |          |           |           | 1          |
| <b>C. 제조업</b>         |           |             |          | 13        |           | 13         |
| 30인미만                 |           |             |          | 1         |           | 1          |
| 50인미만                 |           |             |          | 5         |           | 5          |
| 전규모                   |           |             |          | 7         |           | 7          |
| <b>D. 제조/건설</b>       |           |             |          | 3         |           | 3          |
| 50인미만                 |           |             |          | 3         |           | 3          |
| <b>E. 제조/서비스(전규모)</b> |           |             |          | 3         |           | 3          |
| <b>F. 서비스</b>         |           |             |          | 3         |           | 3          |
| 50인미만                 |           |             |          | 2         |           | 2          |
| 전규모                   |           |             |          | 1         |           | 1          |
| <b>G. 전업종</b>         | 9         | 17          |          | 26        | 3         | 55         |
| 30인미만                 |           |             |          | 2         |           | 2          |
| 50억미만                 |           |             |          | 1         |           | 1          |
| 50인미만                 | 1         |             |          | 7         |           | 8          |
| 50인이상                 |           |             |          | 1         |           | 1          |
| 전규모                   | 8         | 17          |          | 15        | 3         | 43         |
| <b>H. 내부(전규모)</b>     |           |             | 8        |           | 1         | 9          |
| <b>I. 민간기관(전규모)</b>   |           |             |          | 1         |           | 1          |
| <b>J. 공공기관(전규모)</b>   |           |             |          |           | 3         | 3          |
| <b>K. 유관기관(전규모)</b>   |           |             |          |           | 5         | 5          |
| <b>총합계</b>            | <b>10</b> | <b>17</b>   | <b>8</b> | <b>57</b> | <b>12</b> | <b>104</b> |

### 3) 산재예방사업 투입·산출 분석

〈표 IV-11〉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투입 예산

| 사업구분                 | 예산      | 비중     |
|----------------------|---------|--------|
| <b>기술지원</b>          | 187,887 | 18.52% |
| <b>근로자건강보호</b>       | 34,915  | 3.44%  |
|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 2,574   | 0.25%  |
|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위탁)       | 393     | 0.04%  |
| 근로자 건강센터             | 20,450  | 2.02%  |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3,257   | 0.32%  |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2,527   | 0.25%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2,774   | 0.27%  |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2,940   | 0.29%  |
| <b>안전인증 및 안전검사</b>   | 5,560   | 0.55%  |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 5,560   | 0.55%  |
| <b>업종별재해예방</b>       | 68,064  | 6.71%  |
|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 32,181  | 3.17%  |
| 사고성재해집중관리(위탁)        | 25,735  | 2.54%  |
|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 6,174   | 0.61%  |
| 화학사고재해집중관리           | 3,974   | 0.39%  |
| <b>유해작업환경개선</b>      | 79,348  | 7.82%  |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3,276   | 0.32%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6,300   | 0.62%  |
|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 3,351   | 0.33%  |
| 작환 및 특건 비용지원         | 66,421  | 6.55%  |
| <b>안전문화기반조성</b>      | 45,709  | 4.51%  |
| <b>산재예방시설건립</b>      | 11,173  | 1.10%  |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 6,247   | 0.62%  |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 4,352   | 0.43%  |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 574     | 0.06%  |
| <b>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b> | 5,864   | 0.58%  |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 5,864   | 0.58%  |
| <b>안전보건문화정착</b>      | 28,672  | 2.83%  |
|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          | 2,565   | 0.25%  |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 15,904  | 1.57%  |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 6,124   | 0.60%  |
| 전문교육과정 운영            | 4,079   | 0.40%  |

〈표 IV-12〉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투입 예산

| 사업구분            | 예산               | 비중             |
|-----------------|------------------|----------------|
| 안전보건연구개발        | 9,214            | 0.91%          |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 9,214            | 0.91%          |
| 국제협력사업          | 3,008            | 0.30%          |
| 산업안전보건연구        | 5,206            | 0.51%          |
| 산업재해통계          | 1,000            | 0.10%          |
| 재정지원            | 771,751          | 76.07%         |
| 산재예방시설용자        | 322,758          | 31.81%         |
| 산재예방시설용자        | 322,758          | 31.81%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448,993          | 44.25%         |
| 안전투자혁신사업        | 327,100          | 32.24%         |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121,893          | 12.01%         |
| <b>총합계</b>      | <b>1,014,562</b> | <b>100.00%</b> |

2022년도 공단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투입 예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술지원사업에 약 18.52%(1,878억 8,700만원), 안전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약 4.51%(457억 900만원), 안전보건 연구개발 사업에 약 0.91%(92억 1,400만원),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에는 약 76.07% (7,717억 5,1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를 살펴볼 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재정지원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 기술지원사업 중 각종 비용지원 사업(예컨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면 일하는 사람의 건강 및 사업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지원 성격의 사업에 약 8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재예방사업의 지원대상 업종별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약 98.84%의 예산이 사업장 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전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집중 수행하는 사업에도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3〉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출(물량 달성도)

| 사업구분                 | 물량달성도(%) |
|----------------------|----------|
| <b>기술지원</b>          | 104.46   |
| <b>근로자건강보호</b>       | 94.06    |
|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 100.00   |
|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위탁)       | 101.30   |
| 근로자 건강센터             | 111.52   |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76.20    |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122.29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102.53   |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100.83   |
| <b>안전인증 및 안전검사</b>   | 121.53   |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 121.53   |
| <b>업종별재해예방</b>       | 112.92   |
|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 116.63   |
| 사고성재해집중관리(위탁)        | 101.72   |
|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 119.09   |
| 화학사고재해집중관리           | 102.47   |
| <b>유해작업환경개선</b>      | 85.18    |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25.13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100.00   |
|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 86.36    |
| 작환 및 특건 비용지원         | 93.27    |
| <b>안전문화기반조성</b>      | 126.75   |
| <b>산재예방시설건립</b>      | 100.00   |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 100.00   |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 100.00   |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 100.00   |
| <b>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b> | 100.00   |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 100.00   |
| <b>안전보건문화정착</b>      | 136.60   |
|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          | 100.00   |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 152.60   |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 103.67   |
| 전문교육과정 운영            | 170.83   |

〈표 IV-13〉 공단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출(물량 달성도)(계속)

| 사업구분            | 물량달성도(%)      |
|-----------------|---------------|
| 안전보건연구개발        | 108.78        |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 108.78        |
| 국제협력사업          | 116.84        |
| 산업안전보건연구        | 107.07        |
| 산업재해통계          | 100.00        |
| 재정지원            | 104.93        |
| 산재예방시설용자        | 137.98        |
| 산재예방시설용자        | 137.98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96.67         |
| 안전투자혁신사업        | 81.62         |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111.72        |
| <b>총합계</b>      | <b>110.55</b> |

한편, 사업 수행으로 인한 산출(물량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량 목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100% 혹은 그 이상의 물량을 달성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사업 중 안전투자혁신사업과 기술지원사업 중 유해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재정지원사업 일부와 기술지원사업 중 보건부문의 물량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4〉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별 투입(인력과 예산)

| 사업구분        | 예산               | 비중             |
|-------------|------------------|----------------|
| A. 건설업      | 93,003           | 9.17%          |
| B. 건설/서비스   | 6,223            | 0.61%          |
| C. 제조업      | 113,880          | 11.22%         |
| D. 제조/건설    | 9,574            | 0.94%          |
| E. 제조/서비스   | 4,502            | 0.44%          |
| F. 서비스      | 10,313           | 1.02%          |
| G. 전업종      | 765,249          | 75.43%         |
| H. 내부       | 7,284            | 0.72%          |
| I. 민간재해예방기관 | 704              | 0.07%          |
| J. 공공기관     | 821              | 0.08%          |
| K. 유관기관     | 3,008            | 0.30%          |
| <b>총합계</b>  | <b>1,014,562</b> | <b>100.00%</b> |

〈표 IV-15〉 사업목적 세분류별 투입(인력과 예산)

| 사업구분       | 예산               | 비중             |
|------------|------------------|----------------|
| 건강관리지원     | 37,003           | 3.65%          |
| 관리체계       | 11,513           | 1.13%          |
| 교육문화       | 33,829           | 3.33%          |
| 교육지원       | 6,223            | 0.61%          |
| 보호구지원      | 2,527            | 0.25%          |
| 심사·확인      | 4,732            | 0.47%          |
| 연구개발       | 6,540            | 0.64%          |
| 지도점검       | 66,483           | 6.55%          |
| 컨설팅        | 29,657           | 2.92%          |
| 평가·인증      | 17,214           | 1.70%          |
| 환경개선       | 798,840          | 78.74%         |
| <b>총합계</b> | <b>1,014,562</b> | <b>100.00%</b> |

〈표 IV-16〉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별 산출(물량 달성도)

| 사업구분       | 물량달성도(%)      |
|------------|---------------|
| A.건설업      | 110.30        |
| B.건설/서비스   | 95.36         |
| C.제조업      | 101.77        |
| D.제조/건설    | 94.50         |
| E.제조/서비스   | 91.37         |
| F.서비스      | 93.42         |
| G.전업종      | 115.96        |
| H.내부       | 111.11        |
| I.민간재해예방기관 | 102.58        |
| J.공공기관     | 98.15         |
| K.유관기관     | 116.84        |
| <b>총합계</b> | <b>110.55</b> |

〈표 IV-17〉 사업목적 세분류별 산출(물량 달성도)

| 사업구분       | 물량달성도(%)      |
|------------|---------------|
| 건강관리지원     | 70.47         |
| 관리체계       | 106.38        |
| 교육문화       | 134.91        |
| 교육지원       | 95.36         |
| 보호구지원      | 122.29        |
| 심사·확인      | 118.00        |
| 연구개발       | 124.24        |
| 지도점검       | 100.29        |
| 컨설팅        | 87.64         |
| 평가·인증      | 109.22        |
| 환경개선       | 103.86        |
| <b>총합계</b> | <b>110.55</b> |



## V.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구성





## V.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구성

본 장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결정 과정은 기존의 평가체계와 각종 선행연구 고찰, 사업특성별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사업 분류 등 몇 가지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즉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의 결정은 크게 ① 모든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분류 평가지표 설정과, ② 개별 산재예방사업의 특성에 맞는 응용된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으로 구성된다.

공통 평가지표와 응용 평가지표의 결합방식을 활용하는 장점으로는 먼저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의 연도별 성과를 중단 관측할 수 있고 사업평가 결과를 유의미하게 환류 할 수 있다. 또한, 대분류 평가지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세분류 평가항목을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평가대상사업의 운영주체가 미리 평가지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설정한 사업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제Ⅲ장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관련된 기관 및 사업들의 평가체계를 검토하였고, 제Ⅳ장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현황과 구성 및 투입요소에 대한 특성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한 대분류 기준들을 도출하고, 다음 절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유형, 사업이 제시한 성과목표 및 사업의 대상 등 특성 분류를 수행하며, 마지막 절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사업 특성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 1. 산재예방사업 대분류 평가기준 도출

### 1) 선행연구 검토결과 종합

유럽위원회(2005)는 사업평가의 척도기준을 적절성, 일치성,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 유용성과 일관성, 분배효과, 그리고 수용가능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에서는 이 중 국내 고용보험 사업 평가에 사용되었던 평가지표들과의 교집합으로 적절성과 효율성, 일관성, 효용성, 효과성, 지속성의 6개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평가지표를 구성한 바 있다.

〈표 V-1〉 유럽위원회의(2005) 사업평가 기준

| 평가이슈                         | 정의   |
|------------------------------|--|
| 적절성<br>(relevance)           | 중재의 목적이 요구문제나 시사된 이슈에 적절한 정도                     |
| 일치성<br>(coherence)           | 사업로직이 모순되지 않거나 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들과 모순되지 않는 정도 |
| 경제성<br>(economy)             | 자원이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적절한 양과 질로 이용될 수 있는 정도     |
| 효과성<br>(effectiveness)       | 설정된 목적이 성취되는 정도                                  |
| 효율성<br>(efficiency)          |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성취되는 정도                       |
| 지속성<br>(sustainability)      | 긍정적인 효과가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정도                     |
| 유용성<br>(utility)             | 효과가 요구문제와 제기된 이슈에 상응하는 정도                        |
| 일관성<br>(consistency)         | 다른 경제, 사회 또는 정책분야로 긍정적/부정적 일출효과가 최대화/최소화되는 정도    |
| 분배효과<br>(allocative effects) | 정책의 불균형적 부정적/긍정적 분배효과가 최소화/최대화되는 정도              |
| 수용가능성<br>(acceptability)     | 이해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정책 혹은 제안되거나 채택된 특수도구를 수용하는 정도      |

출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 I」

〈표 V-2〉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의 평가지표

| 단계      | 항목      | 평가 내용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적절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br>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성과목표 부합성                   | 사업목표 설정의 합당성 및 구체성<br>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br>대상 사업장 선정의 적합성<br>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br>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br>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br>사업성과 지표 평가방법의 적절성 |
| 집행      | 효율성     | 제도 인지도                     | 실시 및 미실시 사업장의 인지도   |
|         |         | 예산의 효율성                    | 예산 규모의 적정성  |
|         |         | 진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 내용의 효과성<br>사업수행 실태 모니터링   |
| 일관성     | 목표와 일관성 | 사업 수행의 일치성                 |   |
| 성과      | 효과성     | 사업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에 따른 달성도(수행실적)  |
|         |         | 사업의 유용성                    | 사업의 장단기효과(재해감소, 파급효과 등 포함)  |
|         | 효용성     | 사업 만족도                     | 수혜자 만족도, 경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만족도  |
|         | 지속성     | 효과의 지속성                    | 효과의 지속성(장비, 인력, 교육, 제도 정착 등)  |
| 사업의 지속성 |         | 과거 사업평가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   |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5)<sup>1)</sup>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병행 활용하여 사업평가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였는데, 델파이 기법은 협의회의를 통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패널 조사연구방법으로 토론집단이 제시된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협의회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구조화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5)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평가」

〈표 V-3〉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5)의 평가단계

| 분류구분                             | 설명   |
|----------------------------------|--|
| 투입(input)                        | 인적·물적 자원, 인력·계획·정보 등   |
| 과정(process)                      | 예산집행 및 기술지원 활동 등   |
| 산출(output)                       | 사업주들의 행동 변화, 만족도 등   |
| 성과 및 영향<br>(outcomes and impact) | 실질적인 성과인 산재감소 및 이에 따른<br>고용창출등의 성과를 측정하고<br>장기적인 생산유발효과 등을 측정하여 경제 전체에<br>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

한편, 행정연구원(2020)의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업의 평가지표 체계를 구성적 평가(constructive assessment)와 결과 지향적평가(conclusive assessment)의 2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구성적 평가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구성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 평가인 반면 결과 지향적 평가는 사업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인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V-4〉 행정연구원(2020)의 평가단계

| 평가 모형 구성                               |                 | 세부 평가 요소           |
|--|-----------------|--------------------|
| 구성적 평가<br>(constructive<br>assessment) | 사업기획 분석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 연계성 |
|  | 성과에 대한 기초 정보 분석 | 성과정보 관리            |
|  | 사업집행과정 분석       | 사업 디자인 적절성(논리모형)   |
|  | 이해관계자 분석        | 사업관계자 합의형성/의견수렴    |
| 결과지향적 평가<br>(conclusive<br>assessment) | 이론 기반 평가 방법 설계  | 효과 매커니즘 탐색         |
|  | 효과 인과성 분석       | 정량적 효과 분석          |
|  | 효과 발생 요인 탐색     | 정성적 효과 분석          |

출처: 행정연구원(2020)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 2) 대분류 평가기준 도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산재예방사업의 대분류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분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5)의 4단계 대분류 기준을 준용하되, 투입과정은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투입단계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에서 사용한 계획 단계로 수정하여 통합한다. 또한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행(과정)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며, 2012년 연구와 더불어 대부분의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성과 단계까지 고려한 것을, 사업의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분류 기준에 영향단계를 포함하였다.

총 4단계로 구성된 대분류 기준에 포함될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총 10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상술한 3개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구성요소들 중 산재 예방사업에 적합한 것들을 추려 산출한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3개, 집행 단계에서 2개, 성과 3개, 그리고 영향단계에서 2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표 V-5〉 본 연구의 대분류 평가기준과 구성요소

| 대분류 기준 | 구성요소       |
|--------|------------|
| 계획     | 사업필요성      |
|        | 목표-성과의 적절성 |
|        | 기획의 합리성    |
| 집행     | 인지·접근성     |
|        | 집행의 계획성    |
| 성과     | 사업의 효과성    |
|        | 사업만족도      |
|        | 지속가능성      |
| 영향     | 단기적 영향     |
|        | 장기적 영향     |

## 2. 사업 특성 분류

사업평가 결과를 사업 특성별로 세분하고 사업 분야 내 비교 및 사업 분야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를 레벨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류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 분류 과정에서는 성과와 기능, 예산관리, 업무특성, 사업의 영역과 가치창출 프로세스 등 다각적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1차 분류 후에도 조직 내부 핵심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업 분류 과정은 Top Down 접근과 Bottom Up 접근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Top Down 접근은 사업영역과 조직도, 가치창출 프로세스 등을 통한 분석을 의미하며, Bottom Up 접근은 업무특성 분석, 핵심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Top Down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사업 특성을 분류하며, Bottom Up 접근방식을 활용한 사업 분류 및 평가지표의 작동 가능성 및 적합성 검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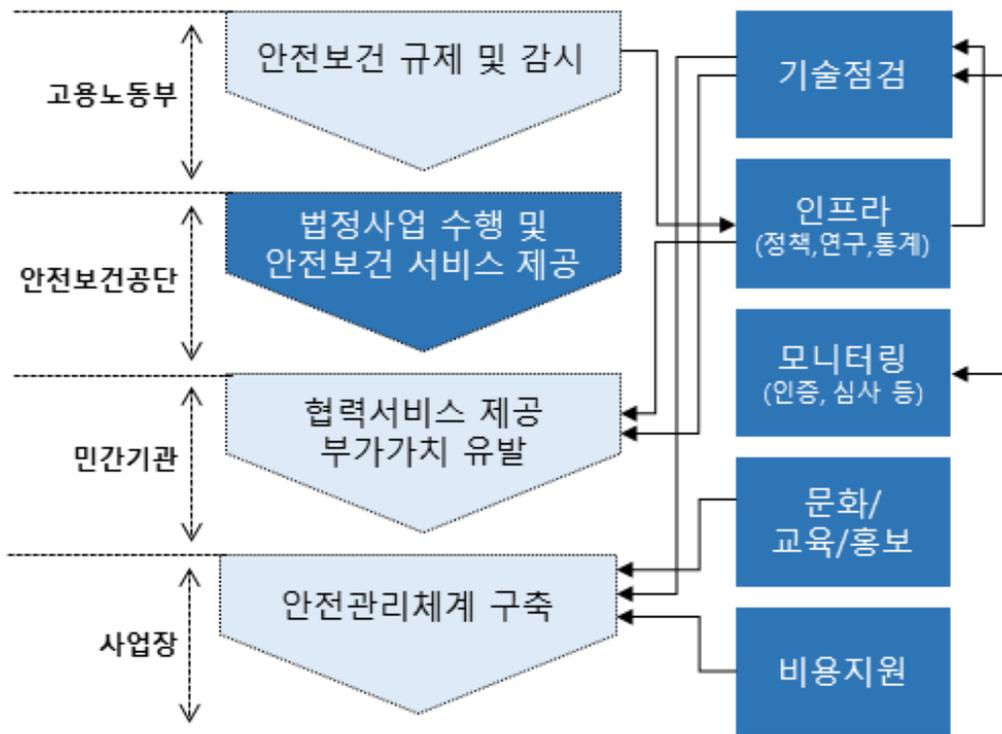
〈표 V-6〉 사업분류 접근방식

| 접근방식         | 분류구분         |              | 설명   | 결과         |
|--------------|--------------|--------------|--|------------|
| Top Down 접근  | 대분류 (Domain) | 사업영역 및 조직도분석 | 사업분야 분석 및 사업영역 검토<br>사업분야 구분의 특징 파악        | 최종 사업분류 체계 |
|              | 중분류 (Field)  | 가치창출 프로세스 분석 | 가치창출 프로세스 기능 연계성 검토<br>핵심 기능 위주로 파악        |            |
| Bottom Up 접근 | 소분류 (Item)   | 업무특성 분석      | 부서단위 업무특성 및 프로세스 분석<br>예산 연계성 고려 세분류 기준 검토 |            |
|              | 수정보완         | 핵심 구성원 의견수렴  | 분류체계(안)에 대한 수정보완 검토<br>적정 사업단위(item) 보완    | 최종검토 및 보완  |

출처: 손원기 외(2016)

### 1) 사업 기능별 분류

앞서 제4장에서는 현행 산재예방사업의 목적특성을 11가지 세분류(지도점검, 컨설팅, 환경개선, 건강관리지원, 관리체계, 교육문화, 교육지원, 보호구지원, 심사·확인, 연구개발, 평가·인증)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도점검과 환경개선 등의 사업은 기능과 목적 상 중복되고, 교육문화와 교육지원사업도 유사한 이유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ter(1985, 2001)의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기능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기능을 크게 기술점검, 인프라, 모니터링, 문화/교육/홍보, 비용지원의 5가지로 도출하였다.



[그림 V-1] 산재예방사업의 가치사슬 구조

## 2) 공급 서비스 유형별 분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기금이라는 재원(예산)을 활용하여 주로 산재 예방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이 서비스는 크게 정책 활동 측면에서 하드웨어(hardware, H/W)와 소프트웨어(software, S/W)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예방을 위해 공급되는 서비스가 유형의 재화인 하드웨어인지 혹은 무형의 재화인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재화의 금전적 가치(시장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사업평가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연구원(2020)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산재예방사업의 기능을 하드웨어(H/W) 사업과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하드웨어 사업은 설비의 기능강화, 신축, 하드웨어 유지관리, 장비구입, 장비구축 및 운영, 용품 및 설비의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유형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모니터링(점검, 인증, 감독 등), 교육훈련, 인력양성, 홍보, 행사, 서비스, 자료조사, 연구/분석, 기타활동 등의 유형들이 포함된다.

## 3) 사업의 성과목표 특성별 분류

공단 산재예방사업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다양한 성과목표들이 제시되어있으며, 이는 사업평가 성과단계에서 성과목표 달성 측정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목표의 기준을 사고재해감소, 질병재해감소, 사업장 위험수준개선, 수혜자의 인식개선도, 기능·시설의 개발·보급, 교육 이수율 및 기타의 총 7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4) 사업 대상별 분류

산재예방사업의 주 수혜자는 사업장과 근로자(노무제공자)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대부분도 사업장의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예방사업은 사업장과 노무제공자 외에도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의 1차적 대상이 공단이 되거나 혹은 위탁사업인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 혹은 민간 전문 측정기관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대상을 사업장(근로자)과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반영하였다.

#### 5) 최종 공급자별 분류

현행 산재예방사업은 대부분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의 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 측정 전문기관, 물품 공급업체, 은행 등)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최종 공급자를 공단과 민간으로 구분하였다.

#### 6) 분류결과에 따른 사업 분포

총 59개 내내역사업에 대한 사업특성별 분류결과는 사업기능과 공급서비스의 유형, 사업의 성과목표,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최종 공급자별 분포 순서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V-7〉 사업기능별 사업목록

| 기술점검                        | 비용지원                    |
|-----------------------------|-------------------------|
| 05.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0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 06.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02. 안전투자 혁신사업(2)        |
| 10.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04. 산재예방시설용자(4)         |
| 1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18.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
| 12. 중소기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27.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 13. 안전보건종합진단                | 28.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30.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 15.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31.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3)    |
| 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47.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 19.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        | 52.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
| 22.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
| 2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12)         |                         |
| 33.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
| 34.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                         |
| 3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
| 37.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17) |                         |
| 38.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18)      |                         |
| 39.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
| 40.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0)       |                         |
|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21)    |                         |

〈표 V-7〉 사업기능별 사업목록(계속)

| 사업명                             | 기능       |
|---------------------------------|----------|
| 46. 안전보건교육                      | 교육/문화/홍보 |
| 48. 안전보건콘텐츠 개발                  | 교육/문화/홍보 |
| 49. 전문교육과정 운영                   | 교육/문화/홍보 |
| 50. 안전문화사업                      | 교육/문화/홍보 |
| 51. 홍보사업                        | 교육/문화/홍보 |
| 0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3)      | 인증모니터링   |
| 07. 건설안전지표 산정                   | 인증모니터링   |
| 0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인증모니터링   |
| 11-1.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인증모니터링   |
| 20.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인증모니터링   |
| 2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9)              | 인증모니터링   |
| 24.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10)            | 인증모니터링   |
| 25.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1)            | 인증모니터링   |
| 29.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인증모니터링   |
| 32. 전자산업 e-SAMS 운영              | 인증모니터링   |
| 35.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인증모니터링   |
| 42.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22)        | 인증모니터링   |
| 44.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24)        | 인증모니터링   |
| 09.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인프라      |
| 53. 여수 안전체험교육장(30)              | 인프라      |
| 54.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31) | 인프라      |
| 55.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32)         | 인프라      |
| 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33)          | 인프라      |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인프라      |
| 58. 국제협력사업                      | 인프라      |
| 59. 산업재해통계                      | 인프라      |

〈표 V-8〉 공급 서비스별 사업목록

| HW                       | SW                          |
|--------------------------|-----------------------------|
| 0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07. 건설안전지표 산정               |
| 02. 안전투자 혁신사업(2)         | 0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 0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 09.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 04. 산재예방시설용자(4)          | 1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 05.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 집중관리     | 11-1.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 06.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13. 안전보건종합진단                |
| 10.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 12. 중소기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 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18.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
| 15.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19.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        |
| 22.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20.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 2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12)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 27.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2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9)          |
| 28.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24.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10)        |
| 30.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25.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1)        |
| 31.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 29.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 32. 전자산업 e-SAMS 운영       | 33.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 34.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 35.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 38.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18)   | 3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3)     | 37.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17) |
| 47.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39.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 52.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40.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0)       |
| 53. 여수 안전체험교육장(30)       |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21)    |
| 54.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 | 42.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22)    |
| 55.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32)  | 44.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24)    |
|                          | 46. 안전보건교육                  |
|                          | 48. 안전보건콘텐츠 개발              |
|                          | 49. 전문교육과정 운영               |
|                          | 50. 안전문화사업                  |
|                          | 51. 홍보사업                    |
|                          | 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33)      |
|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                          | 58. 국제협력사업                  |
|                          | 59. 산업재해통계                  |

성과목표의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 중 ‘기타’로 구분된 사업의 개수는 총 15개 인데, 공단 대상사업 3개, 민간기관 대상사업 3개, 그리고 사업장 대상사업 8개이다. 기타로 분류된 사유에는 단순 사후관리, 산재감소 목표 반영유도,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 기여, 선진분석기법도입 및 인력양성, 전문장비 및 프로그램 활용도, 신뢰성확보, 센서세트 및 전용플랫폼 개발 세부계획 마련, 인지도 향상, 조사결과 활용증대, 시스템 고도화, 승인체계 안정화, 노동부지원, 건강보호조치 개선 등, 안전의식고취, 종합평가결과 점수 상승, SLA 평가점수 96점 이상 등 명확하지 않거나 정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이유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기타로 분류된 사업명과 상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V-9〉 성과목표가 ‘기타’인 사업목록

| 사업명                      | 세부 목표                      |
|--------------------------|----------------------------|
| 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 사후관리                       |
| 7. 건설안전지표 산정             | 산재감소 목표 반영유도               |
| 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 기여             |
| 13. 안전보건종합진단             | 선진분석기법도입 및 인력양성            |
| 15.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전문장비 및 프로그램 활용도            |
| 29.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신뢰성확보                      |
| 32. 전자산업 e-SAMS 운영       | 센서세트 및 전용플랫폼 개발<br>세부계획 마련 |
| 35.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인지도 향상                     |
| 39.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조사결과 활용증대                  |
| 42.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 시스템 고도화, 승인체계 안정화          |
| 44.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노동부지원, 건강보호조치 개선 등         |
| 50. 안전문화사업               | 안전의식고취                     |
| 52.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종합평가결과 점수 상승               |
| 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SLA 평가점수 96점 이상            |

한편, 성과목표가 재해감소(사고재해, 질병재해)인 사업의 수는 총 23개로, 사고재해감소 18개, 질병재해감소 6개이다. 세부 사업명은 아래와 같다.

〈표 V-10〉 성과목표가 ‘재해감소’인 사업목록

| 성과목표 ‘사고재해’ 사업명         | 성과목표 ‘질병재해’ 사업명             |
|-------------------------|-----------------------------|
| 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30.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 2. 안전투자 혁신사업(2)         | 31.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
| 4. 산재예방시설용자(4)          | 37.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17) |
| 5.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38.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18)      |
| 6.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3)        |
| 10.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
| 1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
| 11-1.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
| 12. 중소기업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                             |
|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
| 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
| 18.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                             |
| 20.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
| 22.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
| 2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9)      |                             |
| 2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12)     |                             |

마지막으로, 성과목표가 ‘교육이수율’, ‘기능·시설의 개발·보급’, ‘위험수준 개선’, ‘인식개선 및 만족도’인 사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V-11〉 성과목표 ‘재해감소’와 ‘기타’를 제외한 사업목록

| 사업명                             | 성과목표     |
|---------------------------------|----------|
| 46. 안전보건교육                      | 교육이수율    |
| 47.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교육이수율    |
| 9.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기능시설개발보급 |
| 19.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            | 기능시설개발보급 |
| 48. 안전보건콘텐츠 개발                  | 기능시설개발보급 |
| 53. 여수 안전체험교육장(30)              | 기능시설개발보급 |
| 54.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31) | 기능시설개발보급 |
| 55.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32)         | 기능시설개발보급 |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기능시설개발보급 |
| 59. 산업재해통계                      | 기능시설개발보급 |
| 24.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10)            | 위험수준개선   |
| 25.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1)            | 위험수준개선   |
| 27.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위험수준개선   |
| 28.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위험수준개선   |
| 33.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위험수준개선   |
| 34.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 위험수준개선   |
| 3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위험수준개선   |
| 40.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0)           | 위험수준개선   |
|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21)        | 위험수준개선   |
| 51. 홍보사업                        | 인식개선만족도  |
| 58. 국제협력사업                      | 인식개선만족도  |

〈표 V-12〉 사업대상 ‘사업장(근로자)’ 제외 사업장 목록

| 사업명                             | 사업대상 |
|---------------------------------|------|
| 09.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공단   |
| 32. 전자산업 e-SAMS 운영              | 공단   |
| 42.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22)        | 공단   |
| 53. 여수 안전체험교육장(30)              | 공단   |
| 54.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31) | 공단   |
| 55.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32)         | 공단   |
| 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33)          | 공단   |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공단   |
| 59. 산업재해통계                      | 공단   |
| 0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민간기관 |
| 29.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민간기관 |
| 39.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19)    | 민간기관 |

〈표 V-13〉 사업 최종수행자 ‘민간’ 사업장 목록

| 사업명                             | 사업대상 |
|---------------------------------|------|
| 0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민간   |
| 02. 안전투자 혁신사업(2)                | 민간   |
| 04. 산재예방시설용자(4)                 | 민간   |
| 06.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민간   |
| 10.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민간   |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민간   |
| 34.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 민간   |
| 3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민간   |
| 37.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17)     | 민간   |
|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21)        | 민간   |
|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3)            | 일부민간 |
| 49. 전문교육과정 운영                   | 일부민간 |
| 50. 안전문화사업                      | 일부민간 |
| 53. 여수 안전체험교육장(30)              | 민간   |
| 54.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호남, 중부)(31) | 민간   |
| 55.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32)         | 민간   |
| 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33)          | 일부민간 |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일부민간 |
| 59. 산업재해통계                      | 일부민간 |

### 3. 사업별 세부 평가지표 구성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대분류 기준 구성요소별로 포함될 수 있는 세부 평가내용들의 종류를 살펴보고, 사업의 특성별 선택 기준에 따라 재구분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본 절에서는 고려 가능한 세부 평가내용들과 사업 특성별 최종 평가지표 도출에 사용되는 분류 기준을 소개하고, 기준에 따라 작성된 내내역사업 기준 평가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1) 대분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

먼저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사업의 목적이나 적시성, 타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의 물량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리고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적절한지 등 목표와 성과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또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대상의 선정은 적합한지, 위탁사업인 경우 시행사업자의 선정 방식은 적합한지, 투입되는 예산과 지원규모는 모집단(사업대상) 규모와 수요 기준에서 적절한지,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은 적절한지 등 기획의 합리성도 점검하게 된다.

집행단계에서는 인지·접근성과 예산, 물량 등 집행의 계획성을 점검하는데, 인지접근성은 사업장의 사업 인지도와 사업신청과 선정, 그리고 수혜 과정에서의 수혜자 접근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의 계획성은 사업의 계획 당시의 물량과 예산이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성과단계는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계획한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와 재해감소 등 장단기 효과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의 만족도는 지원금액이나

절차,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 등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도와 향후 재참여 의사, 그리고 사업수행기관(공단 혹은 민간위탁기관)의 만족도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의 경우 사업의 성과가 수혜자에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수혜자들은 지속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사업장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지 장기수요의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향단계에서는 단기적 영향의 관점에서 수혜 사업장의 고용, 매출,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측정하고, 장기적 영향의 관점에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와 더불어 산업이나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표 V-14〉 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사업의 적시성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표 V-15〉 집행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표 V-16〉 성과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재해감소효과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지원절차의 만족도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장비, 인력, 교육, 제도정착 등)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표 V-17〉 영향단계 구성요소의 세부 평가내용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2)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구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함 가능한 모든 세부 평가 내용이 담긴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표 V-18〉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전체 구성(안)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지원절차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장비, 인력, 교육, 제도 정착 등)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3) 개별사업 특성별 평가지표 구성기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갖는 특정한 특성에 따라 특정한 세부 평가내용을 측정하기가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공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요소 3의 '시행 사업자 선정방법의 적합성' 항목은 평가 내용에서 배제되며, 민간기관에 대한 평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산재예방효과 등을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처럼 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세부 평가내용을 달리 선정할 필요가 있는 바, 앞서 수행한 특성분류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1) 성과목표 분류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앞서 성과목표의 기준을 사고재해감소, 질병재해감소, 사업장 위험수준개선, 수혜자의 인식개선도, 기능·시설의 개발·보급, 교육 이수율 및 기타의 총 7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바 있다. 성과목표 중 각 평가내용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성과목표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V-19〉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 대분류 | 구성요소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불가 성과목표      |
|-----|---------|--------------|----------------|
| 성과  |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기타             |
|     |         | 재해감소효과       | 사고재해, 질병재해감소 외 |
| 영향  |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편익       | 기타             |
|     |         | 경제적 파급효과     | 기타             |

기타사업의 경우 성과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달성도나 장기적 영향지표를 측정할 수 없으며, 재해감소효과의 경우에는 성과목표가 재해감소로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사업대상 분류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사업 대상은 사업장(근로자)과 공단, 그리고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대상 분류 중 평가내용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대상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장과 관련된 평가지표들에서는 주로 사업대상이 공단인 사업들이 배제되고, 사업장의 사업 인지도와 산재예방효과,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기관들도 제외된다.

〈표 V-20〉 사업대상 분류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 대분류 | 구성요소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불가 성과목표 |
|-----|--------|------------------|-----------|
| 집행  | 인지·접근성 | 사업장의 사업 인지도      | 공단, 민간    |
|     |        | 신청-선정-수혜 접근성     | 공단        |
| 성과  |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 절차, 품목 만족도 | 공단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공단, 민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공단, 민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공단        |
|     | 지속가능성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공단        |
| 영향  |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매출 증가   | 공단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공단        |

### (3) 사업 최종 공급자 분류에 따른 평가내용 선정

사업 수혜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단계의 공급자를 공단과 민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대분류)‘계획’ - (구성요소)‘기획의 합리성’ - 세부 평가내용 ‘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 공급자가 ‘공단’인 사업의 경우 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

## 4. 산재예방사업 평가 우선순위(필요성) 진단

### 1) 평가 우선순위(필요성)의 판단기준(안)

제Ⅳ장에서 설명했듯이, 2022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계획 기준, 산재예방사업은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1개, 내역사업 36개, 내내역사업 59개로 구분된다.

평가접근 방식에 따라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구성평가(사업목표, 수행과정, 성과관리, 이해관계)와 결과평가(효과매커니즘정의, 정량적효과, 정성적효과)를 포괄하는 종합 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종합평가 필요성이 낮거나 어려울 수 있다.

- (1) 사업의 물량이나 예산, 성과목표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의 물량이나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에 예산이 미배정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불명확 혹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 (2) 사업의 목적이 산재 예방이 아닌, 산재 사후조치인 경우: 재해조사 등 산업재해 사후조치 성격의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물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수시사업) 예방의 효과성 측정이 불가하다.
- (3) 주요 평가사업 중,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공단, 민간 등)에 대한 신뢰성 등 재평가 사업인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재평가 사업은 제외한다.
- (4) 이미 평가 받은 결과를 성과지표로 삼는 경우: 예컨대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 사업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받는 평가점수를 성과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성과목표 달성의 재검토는 중복검토가 된다.

## 2) 개별사업 평가 우선순위(필요성) 검토(안)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우선순위(필요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내내역사업 (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사업의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1〉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평가가능성 검토결과

| 사업명                     | 검토결과 | 사유   |
|-------------------------|------|------|
| 01.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가능   |      |
| 02. 안전투자 혁신사업(2)        | 가능   |      |
| 03.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 불필요  | 사후조시 |
| 04. 산재예방시설용자(4)         | 가능   |      |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에서 내내 역사업 (57)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평가는 가능하나, 국제협력 사업과 산업재해 통계의 경우 사업의 성과지표를 이미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된 수치를 사용하므로 중복 평가가 된다.

〈표 V-22〉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평가가능성 검토결과

| 사업명          | 검토결과 | 사유              |
|--------------|------|-----------------|
| 57. 산업안전보건연구 | 가능   |                 |
| 58. 국제협력사업   | 불필요  | 이미 평가된 성과지표를 사용 |
| 59. 산업재해통계   | 불필요  | 이미 평가된 성과지표를 사용 |

〈표 V-23〉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평가가능성 검토결과

| 사업명                       | 검토결과 | 사유         |
|---------------------------|------|------------|
| 05.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가능   |            |
| 06.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가능   |            |
| 07. 건설안전지표 산정             | 불가   | 성과목표 불명확   |
| 0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불필요  | 평가에 대한 재평가 |
| 09.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가능   |            |
| 10.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가능   |            |
| 1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가능   |            |
| 11-1.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가능   |            |
| 12. 중소기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가능   |            |
| 13. 안전보건종합진단              | 불가   | 성과목표 불명확   |
|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가능   |            |
| 15.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가능   |            |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가능   |            |
| 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가능   |            |
| 18.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 불가   | 지급품목 불명확   |
| 19.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      | 가능   |            |
| 20.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가능   |            |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가능   |            |
| 22.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가능   |            |
| 2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9)        | 가능   |            |

| 사업명                          | 검토결과 | 사유         |
|------------------------------|------|------------|
| 24.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10)         | 가능   |            |
| 25.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1)         | 가능   |            |
| 2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12)          | 가능   |            |
| 27.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가능   |            |
| 28.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가능   |            |
| 29.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불필요  | 평가에 대한 재평가 |
| 30.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가능   |            |
| 31.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 가능   |            |
| 32. 전자산업 e-SAMS 운영           | 불가   | 성과목표 불명확   |
| 33.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가능   |            |
| 34.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 가능   |            |
| 35.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불가   | 성과목표 불명확   |
| 36.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가능   |            |
| 37.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17)  | 가능   |            |
| 38.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18)       | 가능   |            |
| 39.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19) | 불필요  | 사후조치       |
| 40.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0)        | 가능   |            |
|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21)     | 가능   |            |
| 42.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22)     | 불가   | 성과목표 불명확   |
| 4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3)         | 불가   | 수혜대상 추적불가  |
| 44.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24)     | 불가   | 성과목표 불명확   |

## VI. 산재예방사업 평가제도 운영방안





## VI. 산재예방사업 평가제도 운영방안

### 1. 사업평가 설계

#### 1) 평가 설계의 요소

평가 설계란 평가연구에서 탐구할 질문들을 정의하고 제기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방법론적 전략을 발전시키고 자료수집과정에서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들과 장애 요인들을 예견하고 기술하는 자료수집계획을 작성하며 평가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답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분석계획을 작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설계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① 획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② 정보의 출처, ③ 무작위 표본추출, ④ 정보수집의 방법, ④ 정보수집의 시기와 횟수, ⑤ 정보수집의 시기와 횟수, ⑥ 정책 집행 대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인과관계 추론의 문제, ⑦ 분석계획 등이 있다(노화준, 2015).

#### 2) 평가의 전략과 평가 설계 유형

평가 전략은 평가를 위해 제기된 질문들에 답변을 위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의미하며, 각 평가 전략은 여러 유형의 평가 설계를 포함한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 중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일정시점에서 여러 하위 집단들을 동시에 조사하는 횡단면적 연구와 추출된 표본 집단을 여러 시점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연구 등이 있다. 표본 집단에 대해 특정 평가기준에 따라서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규범적 연구도 실시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 복잡해서 표본조사만으로는 그 현상에 대해 기술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표본조사에서 살펴본 규범적 연구도 사례연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변화의 양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탐구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일반화할 때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험의 유형으로는 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과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시계열적 분석 등이 있다.

이용 가능한 기존자료의 조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이미 발표된 기존자료나 정보들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 종합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2차 자료의 분석과 메타분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메타분석은 어떤 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수집해서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 논리적 맥락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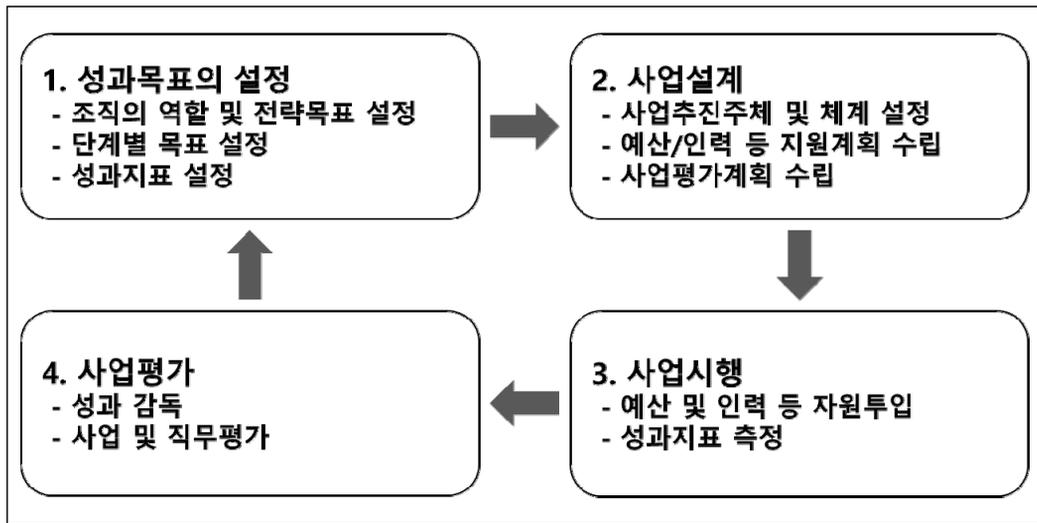
〈표 VI-1〉 평가 전략과 평가 설계 유형

| 평가전략           | 평가 설계 유형   |
|----------------|--|
| 표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면적(corss-sectional) 연구</li> <li>• 패널(panel) 연구</li> <li>• 평가기준에 근거한 규범적 연구</li> </ul>       |
| 사례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사례(single case) 연구</li> <li>• 다중사례(multiple case) 연구</li> <li>• 평가기준에 토대를 둔 사례연구</li> </ul> |
| 현장실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에 의한 연구</li> <li>• 사업의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연구(시계열 분석 등)</li> </ul>                    |
| 이용가능한 기존자료의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자료의 분석</li> <li>• 메타분석</li> </ul>  |

출처: 노화준(2015), 저자 재구성

### 3) 성과관리제도와 사업평가

한편, 고영선 외(2004)은 성과관리체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과목표의 설정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전략목표, 단계별 목표,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설계로 사업의 추진주체 및 체계를 설정하고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투입계획과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업시행 단계이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목표로 설정한 지표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수단과 측정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얻은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환류시스템을 통해 사업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목표를 수정하거나 사업의 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그림 VI-1] 성과평가체계

출처: 고영선 외(2004), 저자 재구성

## 2. 사업평가 과정

### 1) 사업평가 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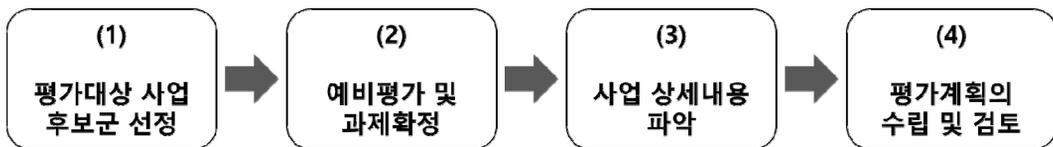
사업평가의 준비는 평가대상 사업후보군의 선정 - 예비평가 및 과제 확정 - 사업 상세내용 파악 - 평가계획의 수립 및 검토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평가는 평가대상 사업후보군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사업후보군을 선정할 때는 투입이 많은 사업이나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사업, 사회적으로 심층분석이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산재예방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의 평가가 가능한지, 혹은 바람직한지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예비평가와 과제 확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예비평가는 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확인, 개선방안의 도출 가능성, 자료 수집의 가능성 및 용이성, 환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과제를 확정한다.

과제가 확정되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문헌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평가기준과 연계하여 평가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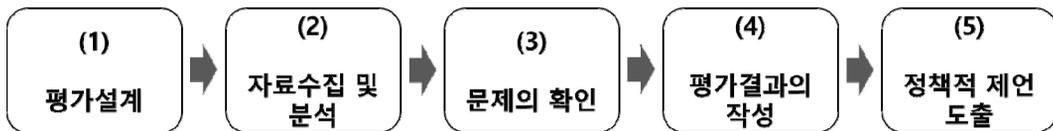
[그림 VI-2] 사업평가의 준비단계

## 2) 사업평가 실행단계

사업평가의 실행은 평가설계 - 자료수집 및 분석 - 문제의 확인 - 평가결과의 작성 - 정책적 제언 도출로 이어지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뒷부분인 평가결과의 작성과 정책적 제언의 도출은 사업평가의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평가설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방법, 환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평가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업의 수단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논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설계에서 평가방법이 결정되면 방법론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정리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설정한 가설과 실제 평가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에도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목표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그림 VI-3] 사업평가의 실행단계

## 3) 사업특성별 평가제도 적용구분

### (1) 자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자체평가의 대상사업은 산재예방사업 중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비용지원, 용자사업 등)이나 정량적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평가는 내부 구성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구성원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내부 구성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평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가결과의 환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구성원을 외부에서 초빙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강점이 있으나 평가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환류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2) 핵심사업평가제도

핵심사업평가제도는 공단의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말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략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주요 핵심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전략목표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핵심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공단의 중장기발전계획과 함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중장기발전계획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핵심사업의 평가주체는 내부 구성원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 구성원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실질적인 평가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외부 구성원의 경우 사업평가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3) 심층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는 전략목표와 긴밀한 관련성이 부족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투입규모가 크거나 정량적인 분석으로는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대부분 자체평가제도와 핵심사업평가제도를 통해 사업평가를 진행하겠지만 투입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목표와의 연계성이 낮아 독립적인 성격을 갖거나 정량적인 평가지표의 측정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독립적인 성격과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주로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가주체는 내부보다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기타사업평가제도

기타평가제도는 앞서 살펴본 자체평가, 핵심사업평가, 심층평가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단기 혹은 일시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사업평가를 말한다. 기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 사업 평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자체평가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평가와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VI-2〉 사업특성별 평가유형의 구분

| 평가제도   | 평가대상 사업  | 평가주체   |
|--------|--|--------|
| 자체평가   | ·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br>· 주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                 | 내부, 외부 |
| 핵심사업평가 | ·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br>·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사업                 | 내부, 외부 |
| 심층평가   | · 핵심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인력 투입규모가 큰 사업<br>· 주로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 | 외부     |
| 기타사업평가 | · 자체평가, 핵심사업평가, 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br>· 단기 일회성 사업                    | 내부, 외부 |

### 3. 평가결과의 활용

#### 1) 평가결과 활용의 정의

사업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업평가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사실들을 사업 및 정책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판단지향적 평가, 개선지향적 평가, 지식지향적 평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평가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단지향적 평가는 공공의 책임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의 측정,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 비용편익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한 활용을 포함한다. 판단지향적 평가에서는 판단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사전적이고 명시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개선지향적 평가는 사업의 기획, 집행과정에서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평가정보를 사업의 운영개선에 활용하는 것은 수단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지향적 평가의 내용은 형성적·대응적 평가, 학습조직 접근, 총체적 품질관리, 학습조직으로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지식지향적 평가는 평가결과의 개념적 활용 관련성이 높다. 평가정보는 지식을 추가하는 데 공헌하기 때문에 사업의 평가를 어떤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지식지향적 평가는 다른 평가결과의 활용유형에 비해서 목적지향성이 떨어지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통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3가지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판단지향적 평가나 개선지향적 평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평가결과의 수단적 활용은 사업

기획과 집행 등 직접적으로 평가결과가 활용되지만 지식지향적 평가와 같은 개념적 활용은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통찰력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활용된다. 사업평가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유형은 개념적 활용보다는 수단적 활용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요인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해당 평가 결과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얼마나 정확하고 작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의 질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계획에 환류 하여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 가능한 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표 VI-3〉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요인

| 요인          | 내 용  |
|-------------|--|
| 적실성         | · 평가결과가 평가결과 활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
| 신뢰성         | ·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
| 타당성         | ·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                                  |
| 적시성         | · 평가결과가 기존의 사업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가?                                 |
| 실현가능성       | · 평가결과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
| 의사소통        | · 평가자와 평가결과 활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발한가?                                |
| 평가방법의 질     | · 평가방법의 품질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 · 평가결과의 활용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평가활용자의 타성에 젖은 개인적 특성   |
| 평가결과의 악용    | · 개인적 이해를 위해 일부만을 발췌하거나 삭제하는 것                                 |
| 개인적 요인      | · 평가결과 활용자의 관심, 열의, 적극성 등                                      |

출처: 정주택 외(2007), 정책평가론(저자 재구성)

사업평가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유형이 수단적 활용이라는 것은 평가결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사업의 기획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실성, 신뢰성, 타당성, 적시성, 실현가능성, 의사소통, 평가방법의 질,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평가결과의 악용, 개인적 요인 등이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실성, 신뢰성, 타당성, 적시성, 실현가능성, 의사소통, 평가방법의 질 등의 요인들을 확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평가결과의 악용 등과 같은 요인은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산재예방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성 강화 방안

#### (1) 평가결과 보고서의 목차와 구성

산재예방사업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특성별로 평가항목과 지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재예방사업 평가결과 보고서의 목차와 구성은 <표 V-4>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표 VI-4> 평가결과보고서의 목차와 구성

| 목 차  | 내 용   |
|------|---|
| 요약   | · 연구요약  |
| 서론   | · 사업평가의 개요, 필요성(중요성), 주요 쟁점사항 등   |
| 사업내용 | ·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의 배경 및 연혁, 법적 근거<br>· 사업체계: 사업주체, 사업 대상(사업장, 근로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br>· 투입자원: 예산 및 인력운용계획<br>· 사업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평가지표)<br>· 관련사업 및 유사사업 |

〈표 VI-4〉 평가결과보고서의 목차와 구성(계속)

| 목 차                | 내 용   |
|--------------------|---|
|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 · 사업목적과 개입 논리<br>· 평가의 목적과 범위                       |
| 해외사례(필요시)          | · 주요 쟁점에 따른 유사사례 조사 및 정리                            |
| 적절성 평가             | · 사업의 필요성<br>· 목표의 부합성<br>· 기획의 합리성                 |
| 효율성 평가             | · 사업의 인지/접근성<br>· 예산효율성<br>· 계획적집행<br>· 사업수행의 일치성   |
| 효과성 평가             | · 자료의 수집과 분석결과<br>· 목표 달성도<br>· 사업효과성 분석            |
|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br>평가  | · 사업만족도 조사, 재참여 의사<br>· 효과지속성<br>· 사업에 대한 장기적 수요 예측 |
|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br>제언 | · 평가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 참고문헌               |   |
| 부록                 | · 통계자료, 만족도조사 설문조사지 등                               |

출처: 고영선, 김정호(2007),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저자 재구성)

## (2)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아무리 잘 작성된 평가결과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평가결과가 특정 부처에만 보관되고 널리 배포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연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평가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자나 관리자,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평가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된 문서들은 정보의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평가결과들을 기초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서 정책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서 등을 작성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결과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4. 제도화를 위한 평가규정 제안(안)

### 1) 안전보건공단 사업평가규정 현황

산재예방사업평가에 앞서 사업평가에 필요한 특성별 세부 지표와 더불어 사업평가의 준비, 실행, 적용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상이 기관 내에서 제도화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작동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업평가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도화 되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도화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규정화’일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수검 대상이고, 기관 내부에서도 내부경영실적평가(이하 “내부경영평가”)와 더불어 각 단위 사업부서들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필요 시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들에 대한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평가가 제도화되어 시스템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상기 평가들 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그 중요성이 높은 기재부 주관 경영평가의 준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단의 규칙 수준에서 규정화가 이루어져있다.

2009년 1월 29일에 제정된 「경영평가규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위 조직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립하여 경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의결절차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 경영평가와 내부경영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기구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내부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 그리고 평가 결과의 보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영평가 규칙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평가규칙

| <b>경영평가규칙</b>   |                      |
|---|----------------------|
| 제정  | 2009. 1. 29 규칙 제509호 |
| 개정  | 2010. 1. 22 규칙 제558호 |
| 개정  | 2014.11. 26 규칙 제721호 |
| 개정  | 2018.11. 28 규칙 제847호 |
| 개정  | 2020. 4. 16 규칙 제925호 |
| <b>제1장 총칙</b>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위 조직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립하여 경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적용범위) 경영평가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정부평가”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2. “내부경영실적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경영목표와 각종 사업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하고,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3. “평가대상기관”이란 내부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   |                      |
| 4. “평가대상그룹”이란 조직구조와 업무기능의 유사성·비교가능성을 기준으로 여러 평가대상기관들을 묶어 하나의 평가대상 집단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                      |
| 5. “위임평가”란 평가주관부서로부터 위임받은 부서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                      |

6. “평가지표”란 평가대상인 사업과 경영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정한 평가척도를 말한다.
7. “계량지표”란 실적을 수학적·통계적 산식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8. “비계량지표”란 계량화가 곤란한 업무실적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9. “절대평가”란 미리 정해진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제도나 실적 그 자체가 얼마나 우수한지 등을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거나 비교대상 평가단위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10. “상대평가”란 실적의 평가기준 충족정도나 제도 자체의 절대적 우수성 보다는 평가대상 간 상호 비교를 통해 등급별 배분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11. “평가주관부서”란 경영평가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4.16.>
12. “내부경영평가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내부평가의 개요·운영·평가지표·세부평가기준 등 내부평가 실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 제2장 경영평가위원회 등

### 제1절 경영평가위원회

제4조(구성) ① 내부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경영평가 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개정 2010.1.22., 2014.11.26., 2018.11.28., 2020.4.16.>

1. 상임이사
2. 노동조합위원장
3. 평가주관부서장
4. 그 밖에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안전보건 또는 경영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8.>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8.11.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내부평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1.28.>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평가주관부서의 소관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1.28., 2020.4.16.>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8.11.2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부서(사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2020.4.16.>
2. 편람 확정과 변경 (단, 경영평가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외)
3. 삭제<2020.4.16.>
4. 삭제<2020.4.16.>
5. 내부평가결과 확정과 조치
6. 그 밖에 내부평가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 평가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절 경영평가실무위원회

제8조(구성) ① 내부평가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26.>

- ② 실무위원회는 평가주관부서의 소관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경영평가 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개정 2010.1.22, 2014.11.26., 2018.11.28., 2020.4.16.>
1. 당연직 위원 : 본부 각 부서장
2. 그 밖의 위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업안전보건교육원·산업안전보건인증원·미래전문기술원 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기관과 관련 있는 사안에 직접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명한다. <개정 2020.4.16.>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내부평가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26.>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 유고시에는 평가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1.26., 2020.4.16.〉

제9조(의결) ① 실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제10조(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11.26.〉

1. 편람확정 후 목표수준이나 평가방법의 변경
2. 삭제〈2014.11.26.〉
3. 기타 내부평가 실무에 관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장 경영평가

#### 제1절 평가기구

제11조(평가주관부서) 평가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1.26.〉

1. 내부평가 관련제도 수립
2. 내부평가 관련 세부계획 수립
3. 편람작성과 배포
4. 내부평가 시스템 총괄 관리
5. 내부평가단 운영 지원
6. 내부평가 결과 분석·보고와 사후관리
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안건 제출 등

제12조(내부평가단) ① 내부평가단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단장은 평가주관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4.16.〉

②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평가전문가를 내부평가단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③ 삭제 〈삭제 2020.4.16.〉

④ 내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1.26.〉

1.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2.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3. 내부평가 제도개선(안) 건의 등
- ⑤ 내부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26.〉
- ⑥ 내부평가단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와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제13조(위임평가부서) ① 위임평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22.〉

1. 위임받은 평가지표 평가계획 수립·통보
2. 위임받은 평가지표 평가와 검증

3.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4. 소관지표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평가부서 운영에 관하여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위탁평가) ① 위원장은 평가지표 중 전문성을 요하는 지표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평가에 관하여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

제15조(평가대상그룹) 평가대상그룹의 구분과 그룹별 평가대상기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평가방법) 평가지표별 배점과 평가그룹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0.4.16.>

제17조(내부평가의 종류) ① 내부평가는 자체평가(상반기평가 및 하반기평가)·최종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시기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2., 2020.4.16.>

- ② 상반기평가는 일부평가지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하여 경영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20.4.16.>
- ③ 하반기평가는 모든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대상기간의 성과를 평가주관부서, 내부평가단, 위임평가부서, 외부전문기관 등의 평가기구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0.1.22., 2020.4.16.>
- ④ 최종평가는 자체평가결과에 정부평가결과를 직접 적용하거나 가감점을 부여하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0. 1.22.>

제18조(내부평가 절차) ① 위임평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임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지표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
- ③ 내부평가단이나 위임평가부서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
- ④ 평가주관부서는 내부평가단이나 위임평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부서에 공개하고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개정 2010.1.22.>
- ⑤ 평가주관부서는 평가편람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적용하고, 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부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개정 2010.1.22., 2020.4.16.>
- ⑥ 제2항의 실적보고서 및 제3항의 평가보고서 작성서식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2., 2020.4.16.>

제19조(이의신청 및 제재) ① 평가대상기관은 자체평가결과 확정 전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 2020.4.16.>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10.1.22.>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평가결과가 허위·과장되거나 부당하여 공정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20.4.16.>

④ 제2항과 제3항의 불이익에 대한 세부내용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정부평가의 반영) 정부평가결과는 내부평가에 직접 적용하거나 가감점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내용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8.11.28.>

제21조(변경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가중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이나 방침 변경
2.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업계획이나 업무분장 변경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수준이나 평가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1.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 변화로 목표수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원활한 평가업무를 위한 위임평가부서 변경
3. 그 밖에 평가실무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등급배분기준) ① 정부평가를 적용한 최종 내부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의 등급별 배분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공단의 대내외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업무관련 경영실적이나 그 밖의 활동사례가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고 다른 기관의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상당부분 기여 또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평가등급을 하향하거나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③ 삭제<삭제 2020.4.16.>

④ 삭제<삭제 2020.4.16.>

#### 제4장 평가결과

제23조(평가결과보정)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평가 점수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이사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22., 2020.4.16.>

1. 인사(승진, 전보 등)와 국내외 교육훈련 및 출장

2. 연봉제 반영 및 성과급 차등지급
  3. 우수기관(직원) 선정과 포상
  4. 우수추진사례 차기 사업계획 반영
  5. 평가결과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4.16.>

부칙<제509호, 2009.1.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8호, 2010.1.22>

이 규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1호, 2014.11.2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7호, 2018.11.28>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5호, 2020.4.16.>

이 규칙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기재부 주관의 경영평가는 총점 중 45%가 조직·인사·재무관리나 보수, 복리후생, 경영전략과 리더십 등 경영관리를 평가하는 데 할당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인력과 예산의 투입비중이 큰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이행률이나 사후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단 내내역사업 수준에서 각 사업별로 계획과 집행 및 성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경영평가 외에 본 연구가 담고 있는 사업평가 프로세스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 중 평가를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표 VI-6〉 기재부 주관 경영평가 지표(안전보건공단)

| 범주           | 평가지표                                  | 가중치  |     | 합계  |
|--------------|---------------------------------------|------|-----|-----|
|              |                                       | 비계량  | 계량  |     |
| 경영관리<br>(45) |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      |     | 9.5 |
|              | - 전략기획 및 혁신                           | 7    |     |     |
|              | - 국민소통                                | 1    | 1.5 |     |
|              | <b>2. 사회적 가치 구현</b>                   |      |     | 23  |
|              | - 일자리 창출                              | 3    | 2   |     |
|              |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1    | 1   |     |
|              | - 안전 및 환경                             | 1    | 4   |     |
|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3    | 3   |     |
|              | - 윤리경영                                | 4    | 1   |     |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      |     | 4   |
|              | - 조직·인사 일반                            | 2    |     |     |
|              | - 재무예산 운영·성과                          | 2    |     |     |
|              | <b>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b>                 |      |     | 8.5 |
|              | - 보수 및 복리후생                           | 1.5  | 2   |     |
| - 총인건비관리     |                                       | 3    |     |     |
| - 노사관계       | 2                                     |      |     |     |
| 경영관리 소계      | 27.5                                  | 17.5 | 45  |     |
| 주요사업<br>(55) | <b>1. 사고·사망재해 예방</b>                  |      |     | 34  |
|              | - 사고·사망재해 감소                          |      | 15  |     |
|              | - 안전보건공생협력 확대                         |      | 3   |     |
|              |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확대                      |      | 3   |     |
|              | - 사고·사망재해 예방 성과관리                     | 13   |     |     |
|              | <b>2.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b>                 |      |     | 11  |
|              | -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사후관리                    |      | 4   |     |
|              | -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      | 3   |     |
|              | -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성과관리                    | 4    |     |     |
|              | <b>3. 안전문화 확산사업</b>                   |      |     | 5   |
|              | -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      | 3   |     |
|              | - 안전문화 확산사업 성과관리                      | 2    |     |     |
|              | <b>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b> | 5    |     | 5   |
|              | 주요사업 소계                               | 24   | 31  | 55  |
| 합계           | 51.5                                  | 48.5 | 100 |     |

## 2) 유관기관 평가규정 사례

### (1)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계획의 심의·의결, 연도별 자체평가지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정책성과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성과관리계획과 평가결과의 심의와 의결을 수행하고 있다.

〈표 VI-7〉 기재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기획재정부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수립·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재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의결
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의결
3. 기획재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책기획관
2. 기획재정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정책 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체평가 연도별 일정과의 조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그를 위촉한 자가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분야별 사전 심의
2. 기획재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소관 분야 정책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참석 등 요구)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회의 참석이나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연도별로 수립된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등의 개선, 조직관리·예산관리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 규정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평가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협력사업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평가를 통한 지식·교훈 학습과 기관 책무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단의 사업평가는 5개의 원칙과 7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업평가는 ①파트너십(Partnership) ②공정성(Impartiality) ③객관성(Objectivity) ④투명성(Transparency) ⑤진실성(Credibility)이라는 5가지 평가원칙에 따라 협력사업을 평가한다. 또한 다음의 7가지 평가기준 - ①적절성(Relevance) ②효과성(Effectiveness) ③효율성(Efficiency) ④영향력(Impact) ⑤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⑥일관성(Coherence) ⑦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 - 에 따라 협력사업을 평가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평가의 목적과 성격, 시기, 평가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른 구분은 정책 및 전략 평가, 국별 평가, 사업분야별 평가, 사업주제별 평가, 사업형태별 평가,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 기타평가로 분류한다.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가 있다. 평가자에 따라서는 외부평가, 내부평가, 공동평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평가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협력단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부서에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표 VI-8〉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 규정

|  |
|--|
| <p><b>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 규정」</b></p>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협력사업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평가를 통한</p> |
|--|

지식·교훈 학습과 기관 책무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제3조에 명시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평가대상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 및 한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평가 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협력단 내 부서를 지칭한다.
3.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각 사업을 기획, 실시, 관리하며 본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부서 평가를 실시하는 협력단 내 부서를 지칭한다.
4. "평가계획"은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된다.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부서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국조실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의 평가 기본방향과 과제 목록 등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개별평가계획"은 평가부서의 연간평가계획에 의거하거나 사업부서의 자체 일정 및 계획에 따라 개별평가건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범위, 논리모형, 평가 매트릭스, 방법, 수행방식 및 체계, 예산, 일정, 산출물 및 결과보고 방식 등을 포함한다.
5. "평가자"라 함은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수행자(단)를 의미한다.
6. "평가실시"라 함은 개별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 필요에 따라 "국내 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한다.
7.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이란 평가부서에서 사업부서의 평가 수행 지원을 위해 마련한 평가 기획, 수행, 종료 및 보고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말한다.
8. "피평가자"라 함은 본조 제3조의 평가대상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의미한다.

제3조(평가대상) 사업시행지침 제3조의 각 항에 명시된 각 분야별, 형태별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개발협력 프로그램, 정책 및 전략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의 구분) ① 사업평가는 '평가부서 평가' 및 '사업부서 평가'로 구분한다.

- ② 평가부서 평가는 국조실 평가지침 등에 따라 실시한다.
- ③ 사업부서 평가는 각 사업 규정에 명시된 평가에 관한 지침과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개발협력 프로그램, 정책 및 전략 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원칙)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협력사업을 평가한다.

1. 파트너십(Partnership) : 협력단은 개발협력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참여를 장려하며,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공동 평가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2. 공정성(Impartiality) : 협력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공평하고 편견이 없는 태도로 평가를 수행한다.
3. 객관성(Objectivity) : 평가의 객관성은 가치판단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에 기초한다. 협력단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찰과 추론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4. 투명성(Transparency) : 협력단은 평가의 목적, 방법론 및 분석기법을 명확하게 보고서에 기술하고, 평가보고서에는 사실 확인과 결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제언을 명확히 구분한다.
5. 진실성(Credibility) : 협력단은 평가의 진실성을 위해 평가 참가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사업을 평가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적절성(Relevance) : 수원국 및 공여국의 정책 또는 개발 우선순위와 사업의 연관성 평가
2. 효과성(Effectiveness) :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3. 효율성(Efficiency) : 여타 대안을 감안하여 투입대비 산출물 달성 정도 평가
4. 영향력(Impact) : 사업의 결과 또는 수행 중 수원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발생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평가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사업종료 후 협력사업의 영향 및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6. 일관성(Coherence) : 수원국 또는 공여국의 구체적인 개발목표 및 전략 달성에 평가대상사업이 협력단 내 다른 사업 또는 타 시행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여부를 평가
7.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 : 젠더, 환경 및 인권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한 평가

② 평가기준별 세부평가방법은 개별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유형 및 정의) 평가는 목적 및 성격, 시기, 평가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가 목적 및 성격에 따른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정책 및 전략 평가 : 개발협력 사업정책 및 전략의 목표 명확성, 목표달성여부, 지속가능성 평가
    - 나. 국별 평가 :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 다. 사업분야별 평가 : 특정분야의 사업 전반을 평가
    - 라. 사업주체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 마. 사업형태별 평가 : 협력단 사업 수행방식 및 제도에 대한 평가
    - 바.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 : 개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평가
    - 사. 기타평가 : 개발협력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
  2.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
    - 나.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중간점검 형식으로 대체 가능
    - 다. 종료평가(end-of-project evaluation) : 사업의 종료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 라.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3. 평가자에 따른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외부평가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 나. 내부평가 : 협력단 직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평가
    - 다. 공동평가 : 평가대상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
- 제8조(평가업무 부서간 협조) ① 평가부서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업부서는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부서는 자문 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조한다.
- ③ 사업부서는 제4조제3항의 사업부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장 연간평가계획수립

제9조(평가대상 선정기준) ① 평가부서는「사업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정책연관성 : 평가대상과 협력단의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2. 의사결정 실용성 : 평가대상이 지식 및 교훈 등 경영진의 사업 기획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생산할 가능성
- 3. 확대적용가능성 : 평가대상이 타 사업 또는 다른 정책 수립 등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 4. 유용성 : 평가대상과 협력단 또는 수원국의 관심분야 및 정책, 계획, 우선순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및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
- 5. 평가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여부
- 6. 비용대비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협력단에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② 평가부서는 평가대상 선정을 위해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연간평가계획) ① 평가부서는 연간평가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평가계획을 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잠정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연간평가계획은 외교부의 검토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부서는 제10조의 연간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평가업무를 관장하는 이사
- 2. 위원 : 내부·외부 위원 총 10명 이내

③ 내부·외부 위원의 선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 1. 내부위원은 연간평가계획 대상 사업 혹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협력단 임직원 중 선정한다.
- 2. 외부위원은 개발협력 사업 혹은 평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선정한다. 단, 외부위원은 최대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3. 각 위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부·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 1.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 전력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 없는 자
- 2. 위원 본인,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이 관련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어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이 되며, 위원회가 종료된 경우 자동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위원회는 제5조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및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 ⑦ 위원회 개최시기, 방법, 회의자료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중략)

#### 제4장 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의 환류 및 확산

제32조(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 등 정보 관리) 평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생산된 사업평가 등급과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출된 평가보고서 품질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33조(평가결과 종합보고) ① 평가부서는 제10조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평가부서 평가를 완료한 후, 주요 결과를 이사장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 보고 시,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독립평가패널 위원회 활동의 주요 결과 및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4조(평가환류과제 선정, 이행 및 보고) ① 평가부서는 국조실 평가지침에 따라 당해 평가부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환류 과제로 수립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평가환류과제는 외교부의 검토와 평가소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평가부서는 관계 부서에 평가환류 과제의 이행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④ 평가부서는 평가환류과제 이행 결과를 관계 부서로부터 취합하고 그 내용을 평가소위에 보고한다.

⑤ 평가부서는 사업부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제35조(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의 확산 등) ① 평가부서는 제32조에 따라 취합 및 관리한 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 등을 협력단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유 및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회, 세미나 개최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부서는 평가결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규정」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부서는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평가 수행 전반에 필요한 지식, 평가결과 시사점 및 교훈 등을 주제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영계획의 수립, 추진, 점검, 변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을 제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획재정부의 규정이 정책성과평가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영계획과 성과평가의 실행규칙을 동일한 규정에서 다룸으로써 둘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중장기경영 계획 및 단기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는 목표관리주체별로 연1회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VI-9〉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계획의 수립, 추진, 점검, 변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장기경영계획”이란 공사의 비전,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목표, 전략과제 등을 포함한 5개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2. “단기사업계획”이란 중장기경영계획 및 목표관리주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목표, 중점 추진과제,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3. “조직목표”란 공사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4. “부서목표”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5. “팀목표”란 조직목표 또는 부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팀(국내외지사 및 주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6. “목표관리주체”란 목표달성의 책임을 갖는 자로서 조직목표의 경우 사장 및 본부장, 부서목표의 경우 각 부서장 그리고 팀목표의 경우에는 각 팀장(국내외지사장 및 주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부서장 및 팀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연도”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한다.
8. “본부장”은 본부를 관장하는 임원 내지 1급 직원을 말한다.

## 제2장 경영계획

### 제1절 중장기경영계획

제3조(수립)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비전, 핵심가치 등을 포함한 중장기경영계획을 5개년 단위로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립한다.

제4조(추진) 각 본부장(사장 직속 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은 중장기경영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경영계획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등이 부서(지사)별 단기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중장기경영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조정하고, 경영계획 담당 부서장은 동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변경) 중장기경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할 수 있다.

1. 경제여건, 국가정책방향 등 사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
2. 정부로부터 중장기경영계획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3. 이전 사업연도 중 중장기경영계획의 추진실적이 미진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동 계획의 정상적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중장기경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 (중장기경영목표) ①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경영목표를 동절의 중장기경영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장기경영목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2절 단기사업계획

제7조(수립) 각 목표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중점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단기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다만,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목표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단기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추진) 각 목표관리주체는 중점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등을 단기사업계획 과제별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제9조(점검) ① 각 본부장은 단기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해당 부서장은 동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각 목표관리주체는 당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본부장 및 경영계획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중장기경영계획 및 단기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 단기사업계획은 해당 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1. 목표관리주체의 신설, 통합, 변경, 소멸 등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단기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담당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장 성과평가

#### 제1절 총칙

제11조(평가대상) 중장기경영계획 및 단기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는 목표관리주체별로 평가한다.

제12조(평가횟수) 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및 단기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기준일) 성과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간의 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의한 평가기준일은 성과평가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절 성과측정

제14조(성과측정) 각 목표관리주체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 담당부서장과 함께 성과측정을 실시한다.

제15조(성과측정 결과조정) 성과평가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측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절 성과평가

제16조(성과평가)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단계로 실시한다.

제17조(평가결과통보 등) ① 성과평가 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근무평정, 차등성과급, 예산배정 등 인센티브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각 목표관리주체의 성과평가 결과를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② 성과평가 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도 관련 담당 부서 앞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성과평가 담당부서장은 각 목표관리주체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목표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제4장 보칙

제18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강으로 정한다.

### 3) 산재예방사업 평가지침(안) 제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으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폭넓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정부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사고사망자수나 사고사망만인율의 감소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목표달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성패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이나 전략의 계획, 집행, 산출의 과정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생성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지침(내부규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VI-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평가지침(안)

| <b>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평가지침(안)</b> |   |
|----------------------------------|---|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평가”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br>2. “사업평가”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사업평가의 원칙)                    | ①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br>② 사업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br>③ 사업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br>④ 사업평가는 공단 사업의 성과 등의 품질 및 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 제4조(사업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사업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에서는 사업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 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사업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사업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업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사업평가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사업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사업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관장하는 이사로 한다.
- ③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본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평가대상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사업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성과 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공단은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위원회는 사업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00. 00일부터 시행한다.

## 5. 소결

전통적으로 평가제도는 심사분석과 사업(정책)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93년 미국은 정부성과관리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하여 정부업무에 성과관리를 제도화시켰다. 성과관리제도는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평가의 패러다임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는 심사분석-정책평가-성과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이광희·윤수재, 2012).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는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여 어떤 개념을 더 폭넓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과관리를 성과측정이나 성과점검(감독)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목표의 설정, 사업의 설계 및 계획, 사업의 시행, 산출과 결과의 평가,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환류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의 개념적 범위를 협소하게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를 계획 - 점검 - 측정 및 보고의 3단계로 정의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체제 내에 평가제도를 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관리와 사업평가를 구분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아직까지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과관리제도 내에서 사업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산출된 정보들을 성과관리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지는 특성별로 적합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업의 투입자원과 산출결과에 대한 인과적 관계에 대해 도식화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자체 평가제도, 핵심사업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 기타사업평가제도로 평가제도의 유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영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평가제도를 운영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사업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 VII. 결론 및 제언





## Ⅶ. 결론 및 제언

### 1. 성공적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평가제도 확립방안

#### 1)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유형 다양화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산재예방사업의 평가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 제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정량적 분석부터 정성적 분석이 있으며, 가장 정확하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은 DID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인 방법만을 적용한다면 평가대상 사업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과관리체제와 연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에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산재예방사업의 평가지표를 계획 - 집행 - 성과 단계에서 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위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산재예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고려한 산재예방사업의 특성은 정량 혹은 정성적 평가지표의 적용 가능성, 전략목표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4가지 평가유형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재정지원 사업이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제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 및 전략목표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평가하는 핵심사업 평가제도, 투입자원의 규모가 크거나 정성 분석을 주로 적용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심층평가제도, 마지막으로 단기적 목표 혹은 일회성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타사업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내부규정(안)도 제시하였다.

## 2) 사업평가도와 성과관리의 상보적 연계성 강화

성과관리는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업무가 다들지라도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투입과 절차를 중시하는 관리방식에서 나아가 산출과 결과를 지향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면 성과관리는 ①기관의 임무 및 성과목표 그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②성과지표의 수집 및 달성도 측정, ③성과측정 결과의 환류 및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제도는 성과관리 중 2번째 단계인 성과지표의 수집 및 달성도 측정에 해당하지만 결국 1단계와 3단계의 중간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 제도와의 상보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사업평가의 제도화 및 운영에 관한 제언

### 1) 평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정비

현재 공단 내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산재예방사업은 단기적인 성과목표도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기 때문에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환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업평가의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평가과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참여주체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평가위원회의 구성: 사업별 전문가 확보

사업의 평가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성격이 강한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 예방사업은 그 성격상 사회과학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세부사업에서는 자연 과학이나 공학적 관점에서 전문가적인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평가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평가자의 평가윤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업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 사업평가 예산 확보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평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분석과 만족도 조사 등이 수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보상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고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단번에 모든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평가위원 및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이 강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평가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사업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관리 및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지식 습득과 함께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행경험이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 및 성과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보나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와 연계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전체의 품질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담당자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위원들 외에도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평가 관련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5)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마련

산재예방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는 결국 예산이 투입된 활동에 대해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즉, 상위기관에 보고를 목적으로 하거나 인사관리 차원에서 성과 출세우기를 목표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

### 1)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연구 수행

기본적으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평가지침을 구축한 이후 평가 프로세스가 시스템화 되어 작동하는 단계에서 개별 사업들의 특성별로 평가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평가지표 구축을 위해 평가 과정이나 결과검토 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체적인 평가 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수행부서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우수사업 외에도 실패사례를 종합한 사례집을 매년 제작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상호학습을 촉진시켜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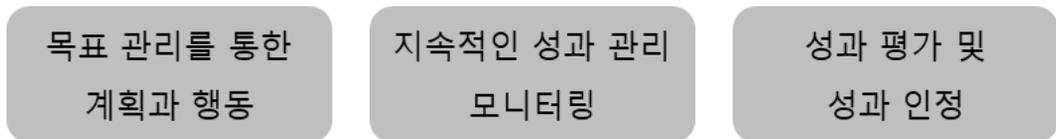
## 2) 사업평가 방법의 고도화 연구 수행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조직(부서 혹은 위원회)이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역량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사업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사업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의 특성별로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평가부서와 사업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평가의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 및 평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사업평가관리시스템(PAMS) 구축·운영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개별사업과 구성원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MS)를 활용한다. PMS는 투입, 과정, 산출, 성과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를 표준화한다.



[그림 VII-1] 성과관리 시스템의 프로세스

PMS는 3가지 주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목표 관리를 통한 계획과 행동은 조직의 목표에 맞게 성과를 조정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고 성취감을 주는 임무를 할당하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목표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다음,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모니터링에서는 구성원과 사업의 목표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피드백과 가이드를 제공하여 성과를 개선하고, 높은 성과를 기록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및 성과인정 단계에서는 성과를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자를 인정하고 보상을 지급하며,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이 발생시킨 가치를 수량화 하는 과정이다.

개인과 단위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PMS에서 사업 혹은 사업군 단위를 다루게 되면 사업평가관리시스템(Proje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PAMS)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데, PAMS는 기본적으로 평가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제공한다.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공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단 사업 평가를 고도화하고 환류체계를 통한 성과 제고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평가자료, 성과정보,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PAMS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PMS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별 평가 및 환류조치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영선, 윤희숙, 이주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고영선 외,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제2판)”, 한국개발연구원, 2007.
- 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2017.08.17.
- 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및 안전 우선문화 확산. 2018.01.23.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2019.03.19.
- 관계부처 합동.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2021.03.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18.01.23.
- 김화일 외,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8.
- 김화일 외, “2021년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21.
- 노근철 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합리적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
- 노근철 외, “건강 디딤돌 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
-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15.
- 문신용, 윤기찬. 성과분석 평가의 이해. 삼영사. 2008.
- 방하남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성재해예방 사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부 산재예방정책이 사망사고 감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0.
- 송재석 외,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II)”,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오윤경 외,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평가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 오윤경 외,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원종욱 외,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I)”,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 원종욱 외,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III)”,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원종학 외, “재정사업 자율평가(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 유경준,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 윤진하 외,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IV)-교육 및 홍보사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이경선 외, “건강디딤돌 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9.
- 이경희 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 이용준. 공공부문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 for Public Sector). 국회예산정책처. 2015.
- 이용희 외,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9.

- 정흥인 외,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20.
- 최훈 외,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재해 감소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pp. 54-62, 2019.
- 한국개발연구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8.
-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2020.
- Fitzpatrick, J., Sanders, J., and Worthen, B.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Pearson. 2010.
- Perrin, B. Effective Use and Misu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0(1), 1999.
- Rubin, R. S. Will the Real SMART Goals Please Stand Up? Psychology, 2002.
- Scriven, M. The Methodology of Evaluation, In RW. Tyler, r. M. Gagne, and M. Scriven(Eds.). 1967.
- Suchman, E. A. Evaluatin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 in Public Service & Social Action Program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7. pp.28-31.
- Weiss, C. H. Have We Learned Anything New About the Use of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1998



## Abstract

# Establishment research for an evaluation proc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Objectives** :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ntinue to demand scientific verification of an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However, since the purpose of policy evaluation by current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ends to focus on short-term outputs rather than the long-term impact of policies, it is time to improve the evaluation process of public projects.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ablish systematic project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with usability and reliability. In particular, we aim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ystemic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valuation process by proposing the evaluation methodology, promotion system, procedur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institutionalization plans for each characteristic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Method** :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to organize the concept, purpose, characteristics, type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of

public project evaluation. And then, we attempted to improve the project evaluation system by benchmarking the evaluation systems of higher-level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similar preceding studies.

In addition, we reviewed the 「2022 KOSHA Plan」 and related studies to classify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and construct project evaluation indicators. Finally, we reviewed project evaluation guidelines of similar institutions to prepare a plan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KOSHA's project evaluation.

**Results** : The concept, purpose, types, procedures, and specific methodologies of project evaluation were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customized evaluation indicators were prepared for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by the KOSHA.

The evaluation process consisted of 4 main categories of input-process-outcome-impact and 10 intermediate categories, and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the projects, type of services provided, goals, target of the projects, and the final supplier types.

In addition, we presented the KOSHA Project Evaluation Regulations, which include the definition of evaluation, purpose, principles, planning, composition of committees, cooper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disclosure of results, and corrective actions. In addition, a checklist was created to improve the usability of evaluation results.

**Conclusion** : If the standardized evaluation criteria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of this study are applied, systematicity and consistency of project evaluation process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sults can be secured. In addition, our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roject evaluation process, including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operation plans, and can be used to improve project performance and discover new projects.

**Key words** :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project evaluation, evaluation process, project evaluation criteria(index), evaluation methodologies



# 부 록





# 부 록

## 1. (평가표) 재정지원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시행 사업자(물품공급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절차,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지원품목의 활용도)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9. 단기적 영향               |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 2. (평가표) 재정지원 - 안전투자혁신사업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시행 사업자(물품공급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절차,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지원품목의 활용도)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10. 장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4. (평가표) 재정지원 - 산재예방시설용자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시행 사업자(용자공급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절차,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효과의 지속성(용자금액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5. (평가표) 기술지원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기술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4. 인지·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 7. 사업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수혜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공단)        |
|     |               | 효과의 지속성(기술지원의 효과)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6. (평가표) 기술지원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시행 사업자(기술지원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기술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기술지원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품목의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9. (평가표) 기술지원 -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시행 사업자(물품공급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
|                         |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지원서비스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0. (평가표) 기술지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민간위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시행 사업자(위탁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절차,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수혜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민간)           |
|                       |                       | 8. 지속가능성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 11. (평가표) 기술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서비스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1-1. (평가표) 기술지원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지원서비스의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2. (평가표) 기술지원 - 중소기업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기술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4. 인지·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기술지원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수해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공단)        |
|     |               | 8. 지속가능성                  |
|     | 9. 단기적 영향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해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해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4. (평가표) 기술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기술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기술지원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수해 의사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공단)        |
|            |                         | 효과의 지속성(기술지원의 효과)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해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해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5. (평가표) 기술지원 - 화학설비 건전성 안전관리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 사업의 적시성                   |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 개별 기술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재해감소효과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기술지원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에 대한 만족도            |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 사업 재수해 의사                 |                         |
|     |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공단)        |                         |
|     |               | 효과의 지속성(기술지원의 효과)         |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해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 수해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16. (평가표) 기술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서비스의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7. (평가표) 기술지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KOSHA-MS)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서비스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19. (평가표) 기술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및 보급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선정-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7. 사업만족도                | 지원금액과 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8. 지속가능성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기술지침 활용도)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10. 장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비용대비 편익    |                         |                           |

## 20. (평가표) 기술지원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사업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 서비스의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21. (평가표) 기술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시행 사업자(서비스공급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컨설팅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위탁)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 서비스의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22. (평가표) 기술지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컨설팅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컨설팅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컨설팅 결과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23. (평가표) 기술지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인증대상 기계기구)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인증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7. 사업만족도                | 재해감소효과                    |
|            |                         | 인증 절차, 인증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8. 지속가능성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인증품목의 활용도)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10. 장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비용대비 편익                   |
|            |                         |                           |

## 24. (평가표) 기술지원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 사업의 적시성                   |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인증대상 방호장치)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 개별 인증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 인지도                    |                         |
|             |                    | 수혜의 접근성                   |                         |
|             |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7. 사업만족도                  | 인증 절차, 인증서비스의 만족도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인증품목의 활용도) |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25. (평가표) 기술지원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인증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수혜의 접근성                   |
|          |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7. 사업만족도           | 인증 절차, 인증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인증품목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

## 26. (평가표) 기술지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 사업의 적시성                   |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
| 집행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검사대상 등)      |                |
|     |               |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4. 인지·접근성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 사업 인지도                    |                |
|     |               | 수혜의 접근성                   |                |
| 성과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영향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     |               | 7. 사업만족도                  | 검사 절차,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효과적 지속성(검사결과의 활용도)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27. (평가표) 기술지원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
|              |               | 예산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지원금액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측정결과의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28. (평가표) 기술지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진단) 대상자 설정의 합당성    |                           |
|            |                       |                           |
|            |                       |                           |
|            |                       | 예산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지원 금액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진단결과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 30. (평가표) 기술지원 -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직종)      |
| 시행 사업자 선정방법 적합성(근골격계 지원) |               |                           |
| 예산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질병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지원금액 및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근골격계 지원)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공단, 위탁)       |
|                          |               | 효과의 지속성(지원서비스 및 진단결과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31. (평가표) 기술지원 - 노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7. 사업만족도             | 질병재해 감소 효과                |
|          |                      | 지원 절차, 지원 금액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8. 지속가능성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건강진단결과의 활용도)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10. 장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비용대비 편익                   |

## 33. (평가표) 기술지원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품목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안전성평가 결과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34. (평가표) 기술지원 -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위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시행 사업자(모니터링 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모니터링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위탁)           |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모니터링 결과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36. (평가표) 기술지원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              | 시행 사업자(기술지도 위탁업체)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지도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보건관리 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위탁)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기술지도 결과 활용도)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37. (평가표) 기술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운영(위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대상자)     |                           |
|            | 시행 사업자(운영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수준의 적절성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질병재해(유소건) 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위탁)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상담결과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38. (평가표) 기술지원 - 산업보건의슈 감시 및 대응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사업 인지도               |
|                           | 5. 집행의 계획성         | 수혜의 접근성              |
|                           |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질병재해감소효과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품목 및 서비스의 만족도 |
|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8.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효과의 지속성(점검결과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수혜사업장의 고용증가 매출증가     |
|                           | 10. 장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비용대비 편익              |

## 40. (평가표) 기술지원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 사업의 적시성                   |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업종, 규모, 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대상 규모의 적정성           |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 사업 인지도                    |                         |
|                | 5. 집행의 계획성          | 수혜의 접근성                   |                         |
|                |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실험실 품질유지 |                         |
|                |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서비스의 만족도         |
| 산재예방효과의 만족도    |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평가 결과의 활용도) |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41. (평가표) 기술지원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위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직종)          |
| 시행 사업자(개선지도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지도서비스 만족도          |
|                         |               | 사업장 안전수준향상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위탁)           |
|                         |               | 8. 지속가능성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10. 장기적 영향                |

## 46. (평가표) 안전문화 기반조성 - 안전보건교육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교육콘텐츠 제공)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대상자)         |
| 외부위탁(기관, 강사) 선정방법의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교육 인지도                    |
|                        |                      | 교육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교육서비스의 절차, 수준 만족도         |
|                        |                      |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공단, 위탁)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교육이수 결과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자 생산성 증가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47. (평가표) 안전문화 기반조성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대상자)         |
|          |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신청-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지원 절차, 금액의 만족도            |
|          |                      | 교육서비스의 수준 만족도             |
|          |                      |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교육이수 결과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자 생산성 증가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48. (평가표) 안전문화 기반조성 - 안전보건콘텐츠 개발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 사업의 적시성                   |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콘텐츠)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예산 및 개발 규모의 적정성           |                   |
|                   |               | 사업 인지도(사업장, 국민 등)         |                   |
|                   |               | 수혜의 접근성                   |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7. 사업만족도          |
|                   |               | 8. 지속가능성                  | 사업 재이용 의사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 효과의 지속성(콘텐츠의 활용도) |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 수혜자(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49. (평가표) 안전문화 기반조성 - 전문교육과정 운영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대상자)         |
| 시행 사업자(위탁교육기관)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개별 교육 요건과 수준의 적절성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수혜의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7. 사업만족도             | 교육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                         |                      | 수혜자 소속 사업장 사업 재참여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사업의 지속가능성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교육이수 결과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혜자 소속 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10. 장기적 영향                |

## 51. (평가표) 안전문화 기반조성 - 홍보사업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 사업의 적시성                   |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사업주, 취약계층)   |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                   |
|     |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홍보사업 인지도                  |                   |
|     |                 | 홍보사업 접근성                  |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 사업 내용의 효과성(QC, 인센티브, 패널티) |                   |
|     | 사업목표에 따른 물량 달성도 |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     | 7. 사업만족도        | 홍보서비스의 만족도                |                   |
|     |                 |                           | 사업장 안전인식 수준향상 만족도 |
|     |                 |                           | 지속 이용 의사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               |                   |
|     | 8. 지속가능성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                           | 사업에 대한 장기수요       |
|     |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수해사업장의 생산성 증가             |                   |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     |                 |                           |                   |

## 51. (평가표) 안전문화 기반조성 - 산재예방시설건립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                     |
| 시행 사업자(건설업체) 선정방법 적합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
|                       |                    |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                                  |
|                       | 7. 사업만족도           |                                  |
|                       |                    |                                  |
|                       |                    |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위탁)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지원품목의 활용도) |                                  |
|                       | 사업지속의 필요성 인식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br>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지역-국가경제) |

## 57. (평가표) 연구개발 - 산업안전보건연구

| 대분류            | 구성요소          | 평가내용 세부                  |
|----------------|---------------|--------------------------|
| 계획             | 1.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설정의 합당성             |
|                |               | 사업의 적시성                  |
|                |               |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                | 2. 목표-성과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               | 사업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3. 기획의 합리성    | 사업대상 설정의 합당성             |
|                |               |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위탁, 자체)  |
|                |               |                          |
| 집행             | 4. 인지·접근성     | 사업 인지도                   |
|                |               | 연구결과 접근성                 |
|                | 5. 집행의 계획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
|                |               |                          |
| 성과             | 6.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 7. 사업만족도      | 접근성, 연구성과 활용 만족도         |
|                |               | 연구평가 적정비율                |
|                |               |                          |
|                | 8. 지속가능성      | 효과의 지속성(정책반영 등 연구결과 활용도) |
|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인용 |               |                          |
| 영향             | 9. 단기적 영향     |                          |
|                |               |                          |
|                | 10. 장기적 영향    | 비용대비 편익                  |

## 연구진

연 구 기 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명중 (연구위원, 정책제도연구부)

연 구 원 : 박선영 (연구위원, 정책제도연구부)

## 부분위탁

연구책임자 : 최돈승 (교수, 안동대학교)

연 구 원 : 정재휘 (교수, 광운대학교)

## 연구기간

2022. 01. 07. ~ 2022. 11. 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 프로세스 확립 방안**  
(2022-산업안전보건연구원-775)

**발행일** :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중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 052-703-0826

**팩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782-27-0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



#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 프로세스 확립 방안

## 표지

인스퍼에코 222g(인쇄용지)

## 내지

네오스타 미색 80g(인쇄용지)  
저탄소제품 708kg CO<sup>2</sup> eq./ton

환경보호를 위해  
저탄소용지(친환경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